

C2000-3 / 2000. 5.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연구

박 문 호	책임연구원
김 경 덕	부연구위원
고 봉 현	위촉연구원

연구담당	주요 담당 분야
박 문 호	연구총괄, 정책추진현황, 쌀전업농 육성목표 검토 및 시사점, 사례지역 실태분석, 외국의 사례분석,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김 경 덕	농가 및 수도작 인력의 전망분석
고 봉 현	자료정리 및 집계·분석

e-mail : mhpark@krei.re.kr

머 리 말

우리나라는 UR협상의 개시와 함께 농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가족농체제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및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농업경영 전반에 있어 규모화·전문화 등 일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다수의 영세농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지공급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 및 영농의 규모화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고,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이용형 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농업여건에 의하여 그 모습이 규정되는 만큼, 정책추진도 이러한 지역마다의 농업특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농지의 외연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영농의 규모화·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지역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체 발전방향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는 농림부 정책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자료제공 등 연구에 협력하여 주신 농림부 농촌인력과 및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2000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
제 2 장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추진현황	
1.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5
2. 관련 주요시책	7
제 3 장 농업인력 수급과 쌀 전업농의 전망	
1. 농가인구 전망	20
2. 수도작 인력 전망	27
3. 쌀 전업농의 육성목표 검토	33
4. 농업인력 및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시사점	41
제 4 장 사례지역의 농업경영구조와 경영체 실태분석	
1. 농업경영구조와 농지유동화의 조건	46
2. 쌀 전업농의 경영실태와 영농의향	52
3.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와 경영의향	65
제 5 장 외국의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정책의 시사점	
1. 일본의 농업 경영체 육성정책과 추진체계	75
2. 프랑스의 농업경영 계승과 신규취농자 대책	86
3. 독일의 농업경영 계승과 경영 조직화	104
4. 외국사례의 시사점	113
제 6 장 농업경영체 시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1. 농업경영체 발전의 기본방향	118
2. 농업경영체 시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126
부 록	140
참 고 문 헌	147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	7
표 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13
표 2-3	1997년 농업법인 정책지원 자격기준의 강화내용	15

제 3 장

표 3-1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21
표 3-2	전국 농가인구 성별·연령별 전망(2000~2010)	24
표 3-3	농업주종사자 연령별 성별 전망(2000~2010)	27
표 3-4	수도작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2000~2010)	29
표 3-5	수도작 농가 농업주종사자 연령별 성별 전망 (2000~2010)	31
표 3-6	전국 논벼 경영주 연령분포(1990~2010)	32
표 3-7	시·도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34
표 3-8	1999~2000년의 시·도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34
표 3-9	2000년도 연령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35
표 3-10	2000년도 경영규모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35
표 3-11	2002년 쌀 전업농 선정 전망	39

제 4 장

표 4-1	사례지구의 농업경영 개황	46
표 4-2	경영규모 증·감 상황별 분포	48
표 4-3	향후 5년간 농지 공급량 추정	50
표 4-4	쌀 전업농의 창업과정	53
표 4-5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54
표 4-6	전업농의 영농규모화에 대한 의향	55
표 4-7	전업농의 농기계이용현황 및 전망	58
표 4-8	전업농의 영농규모별 지원유형의 분포	61
표 4-9	쌀 전업농 육성자금의 지원내역	62

표 4-10	영농규모별 규모 증감효과	65
표 4-11	사례지구 농업회사법인의 연도별 설립현황	66
표 4-12	출자자 및 출자금 내역	67
표 4-13	정부지원자금 내역	68
표 4-14	법인 사업 내역	68
표 4-15	사업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69
표 4-16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적	70
표 4-17	주요 논작업 수탁면적의 추이	71
표 4-18	법인경영의 성과	72
표 4-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제	72
표 4-20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	73
표 4-21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	74
제 5 장		
표 5-1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의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77
표 5-2	농업생산법인의 육성대책 관련 시책	82
표 5-3	청년농업자 등의 육성확보대책의 체계	85
표 5-4	EC에 있어서 가족경영계승의 기본적 패턴	86
표 5-5	농업경영법인의 추이	90
표 5-6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DJA)의 내용	96
표 5-7	청년농업자 중기 특별융자(MTS-JA)의 내용	100
제 6 장		
표 6-1	발전모형별 대응전략	122
표 6-2	복합화의 요인·모형·효과	123
부 록		
부표 1	독정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144
부표 2	금관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145
부표 3	가현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146

그림 목 차

제 2 장

- 그림 2-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체계 6
 그림 2-2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11

제 3 장

- 그림 3-1 연도별 농업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22
 그림 3-2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별 전망 (1995~2010) 23
 그림 3-3 수도작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별 전망 (1995-2010) 28
 그림 3-4 일반농가와 수도작 농가 인구비교 (1990~2010) 30
 그림 3-5 1995~1999년 지역별 쌀 전업농 지원현황 37
 그림 3-6 쌀 전업농 지원농가의 지원 전·후 호당 평균 경영규모 37

제 5 장

- 그림 5-1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 및 경영의 모습 76
 그림 5-2 도도부현의 청년농업자 육성체계 84
 그림 5-3 청년농업자 자립자금 지원경로 99

제 6 장

- 그림 6-1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체의 발전모형 121
 그림 6-2 지역영농시스템의 체계 126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농업의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인력 및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체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이하, 농발대책 이라 함)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전업농과 법인경영체의 실태를 보면, 규모화·전문화의 촉진등 일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을 받은 일부 경영체가 경영부실화 되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보조중심의 정책이 낳은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농업 및 경영체의 경영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정책추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의 규모화·전문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농업의 특성과 지역의 의향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협력하에 지역농업구조 전반의 재편 및 경영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체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농업의 육성에 바탕을 둔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농발대책 이후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전업농 및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체의 발전모형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농업 경영체 그 중에서도 농업구조·경영정책상 최우선 과제인 수도작 중심의 토지이용형 농업 경영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 첫째, 농업후계인력의 확보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질적·양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향후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의 확보가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쌀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은 농업 내부에서도 기간인력이 타 작목에 비하여 빠르게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구조상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공익적 기능 등 다면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후계인력의 확보가 긴급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향후 쌀농업을 중심으로 농업인력수급을 전망하고 쌀전업농의 확보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 둘째,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업농의 육성문제이다.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후계자의 부족에 대응한 인력육성의 방향은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대응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농지 및 인력의 수급조건에 대응한 전업농의 형성조건과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전업농 지원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셋째, 1993년 「신농정」이후 새로운 경영체로서 육성되고 있는 농업법인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측면이다. 농업법인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수의 법인경영이 부실화되고, 협업을 통한 농업경영의 규모화라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개별경영으로 회기하거나, 농업생산보다는 유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업법인의 정책적 위상을 재 검토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농업의 규모화, 효율화의 관점에서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농업법인의 발전모델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 통계분석
 - 농업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수도작 농가를 중심으로 향후 농업인력의 수급조건 및 기간농가의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인력육성정책 목표 및 인력육성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분석방법은 이농함수를 추정하여 농업취업자수, 코호트 모델을 이용하여 농업기간 노동력의 연령별로 추정하고, 수도작 기간농가의 부담면적을 시산하여,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조건을 검토하였다.
- 국내 사례지구 조사분석
 - 첫째, 지역농업에 기초한 쌀전업농 육성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지대별

농업경영구조, 전업농의 경영실태 및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와 효과분석을 위하여 지대별(도시근교, 평야, 중산간)로 1개 지구씩 사례지구를 유의 선정하여 시·군, 농업기반공사 지부등 관련기관조사를 실시하고, 3개 사례지구의 농지소유자, 경작자에 대한 개황조사 및 쌀전업농 전수에 대한 면접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 둘째, 지대별 쌀농업법인의 육성모델 구축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쌀 전업농 사례조사지구를 포함하는 시·군 관내의 쌀농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립동향, 사업추진실적, 경영성과 및 향후 경영의향을 중심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 외국의 제도 및 정책사례 분석

- 첫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신농정 경영체 육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주요 관련 시책으로서 인정농업자 제도, 농지유동화 시책, 신규취농자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온 프랑스, 독일의 경영체 육성정책 특히, 가족경영의 계승을 통한 농업후계인력의 확보·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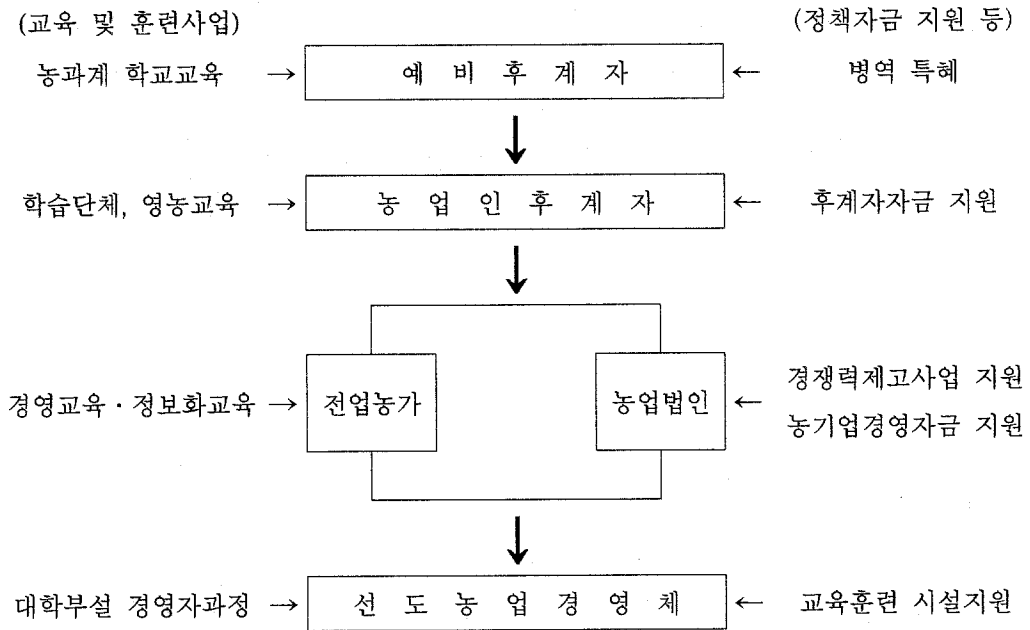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추진현황

1.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UR협상등 농업의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핵심과제로서 농업경영주체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농업인력육성사업은 차별화 된 시책을 통한 선별적 육성을 전제로 하며, 농업을 담당할 전업적 기간농가의 육성에 초점.
 - 이·탈농희망농가는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과도기적 고령농가는 연금, 소득 보조 등 사회복지대책을 통한 탈농을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

- 경쟁력 있는 전문경영체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자금지원을 연계한 단계적인 육성체계를 마련하였다.
 - 가족농의 발전은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 또는 법인경영체→ 선도농업경영체」의 단계별 성장을 유도

그림 2-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체계



- 법인경영체는 농업생산 및 이와 관련된 2·3차 산업의 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산업체로 발전을 유도
- 정부는 이러한 육성체계 하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정예인력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문경영체의 육성목표를 설정하였다.
- 예비 전업농가 확보차원에서 농업인 후계자를 매년 9천명씩 선정하여 2004년까지 16만명 육성
-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업농을 16만호 육성(쌀전업농 10만호, 기타전업농 6만호)
- 전업농의 규모확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공·유통기능을 포괄하는 복합사업체로서 법인경영체를 육성·지원
- 규모,기술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선도해 나갈 선도농업경영체를 970개소 선발하여 지원
-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충

2. 관련 주요시책

표 2-1 농업인력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

정책방향	정책내용	정책수단	사업내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전문인력 및 경영체의 확보 ·육성	가족농 육성	영농후계자육성 전업농 육성 선도경영체 육성	후계자의 취농지원 품목별 경영개선 지원 발전모델로 제시가능한 경영체 지원
	법인경영체 육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시설·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훈련지원	학교교육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 학습단체 육성	자영농수산고 지원 특성화 대학지원 농업전문학교의 설립 농업인 영농교육 학습단체 지원 대학부설 농업경영자 과정

2.1. 농업인 후계자 육성

-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후계자에게 영농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품목과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 지원단가는 수도작의 경우 3-5천만원이며,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5.0%,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원대상사업은 수도작의 경우 농지구입과 대형 농기계 등 고정자산의 구입에 한정하며, 비료, 농약의 구입 등 영농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

-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농업인 으로의 성장에 필요한 영농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농업계 학교에서 실시토록 하고, 후계농업인 가운데 사업추진실적이 뛰어난 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교육내용은 각종지원 및 관련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기술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영농기술교육은 1주일 정도가 보통.

- 농업인 후계자 지원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 대상자의 심의는 읍·면과 시·군의 2단계로 실시하며, 읍·면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추천, 시·군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순위를 결정.

-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일반적인 경우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후,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하고 있다.

- 시장·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자 평가자료와 지역의 농업여건,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 농가호수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 산업기능요원, 특수전문대 졸업자등 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하며 여성후계자에 대하여도 선정상의 혜택을 부여.

2.2. 전업농 육성

- 전업농육성사업은 1992년 후계자육성사업의 보완대책으로 시작하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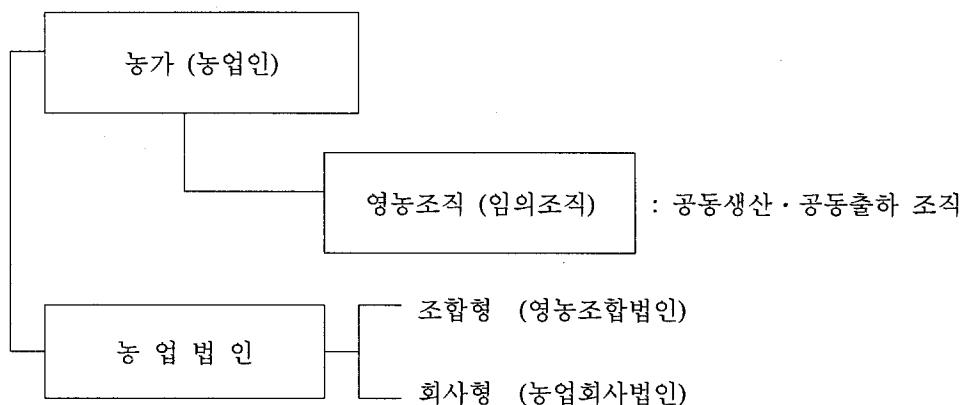
나,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 이후 지원대상 및 자금규모가 확대되고 품목별로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농어가에 대하여 종합지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전업농의 육성목표는 타 산업부문 종사자와 대등한 소득을 올리면서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이 끌어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있다.
 - 전업농이라는 용어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제기되었으며, 그 개념은 개방경제를 전제로 한 소득균형목표와 완전취업조건을 갖춘 자립경영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농업 경영체가 자립을 위해서는 타 산업종사자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이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
- 전업농의 1994년까지는 후계자자금지원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고 용자로 지원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쌀전업농과 그 밖의 전업농으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차별화 시켰다.
 - 쌀 전업농에 대하여는 1997년까지는 농기계구입자금을 보조 50%, 용자 40%, 자부담 10%의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조를 20%로 축소하고 2000년 부터는 보조를 폐지하고 용자지원으로 전환.
 -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영농규모화자금은 농지구입의 경우 연리 4.5%('98년까지 3%),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장기임대차의 경우는 임차료선급금을 무이자 5~7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 기타 전업농은 '99년 까지는 품목과 농가수준에 따라 50-100백만원 규모로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용자하였으며, 2000년도 부터는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흡수·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음.

- 신청자격은 쌀 전업농의 경우 최근 3년 간 쌀을 주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을 하고있는 농업인으로 연령이 55세 이하인 자를 선정하며, 56세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 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농업후계인력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은 쌀 전업농의 경우는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 심사위원회(기타작목은 농업기술센터)의 심사·추천을 거쳐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선정한다.
 - 선정기준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영농경력, 농과계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 수준 등의 배점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선정·추천하며, 시·군에서는 신청서의 사실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 가능성 등의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 선정의 우선 순위는 쌀의 경우 경영규모가 3ha이상인 자는 경영규모가 큰 자와 연령이 낮은 자를 우선하며, 3ha미만의 경우는 “직접지불제”에 의거 경영을 이양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자 및 연령이 적은 자의 순으로 선정함.
- 전업농의 육성계획은 쌀전업농은 1998년까지 6만호를 일괄 지정하고, 99년 부터는 2002년까지 매년 1만호 씩 총 10만호를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99년말 현재 71,529호가 선정되었음.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목표는 5ha 규모 쌀전업농 6만호, 3ha 규모 복합 쌀전업농 4만호 육성.
 - 쌀전업농의 규모확대 목표면적은 420천ha, 1998년 현재 경영면적은 252천ha, 향후 규모확대 면적은 168천ha 로서 그중 정부지원 50%, 자력확대 50% 계획으로 추진 중.

2.3. 법인경영체 육성

그림 2-2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 정부가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으로 소득 향상
 -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을 대행

- 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의 자율에 의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 법인 성격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인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
 - 설립자격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

단체와 비농업인도 참여가 가능.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7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관의 공증 : 설립 등기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정관의 공증이 필요 없으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공증이 필요.

○ 사업의 범위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다소 넓은 영역이 주어지지만,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가능.
- 농지소유 :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농지소유가 허용.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권의 형태이다.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함.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또한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가짐.

표 2-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구 분	영 농 조 합 법 인	농 업 회 사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 법적근거 · 설립자격 · 발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적 농업경영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농업인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적 농업경영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 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출자한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 농지소유 · 타법준용 · 설립운영 · 생산자 단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1표 · 농지소유 가능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 운영 ·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지분에 의함 · 농지소유가능(주식회사는 불가) ·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 좌동 ·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 국세 · 지방세 · 출자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감면, 상속세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감면(5년간 50%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좌동 · 없음
재 정 지 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각종 자율사업 참여	

자료 : 농업·농촌기본법 및 관련법률에 의거 작성.

-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의 권한이 큼.
-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 제도발족 시에 개별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구입자금 보조(50%)
- 1994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로 하여 정책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도 가능하게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 지원
- 1996년 1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시설의 보수와 대체,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시설 설치와 설비 구입,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함. 또한 대출기간은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
 - 운전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 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상환
- 1997.1월부터 경영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

준 강화를 비롯한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책사업대상 자격요건 강화
 - 출자액 1억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후 1~3년간의 운영실적 평가 등
- 사후관리 강화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조합원 자격유무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 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실행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하며 사업실적은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 3일이상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는 우선 선정.

표 2-3 1997년 농업법인 정책지원 자격기준의 강화내용

과 거 (설 립 요 건)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5인 이상 ○ 1인 출자액이 1/3 ※ 법인 설립요건(농발법)에만 맞으면 지원했으나, 정부지원만을 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갖추더라도 정책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요건을 갖추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구 이상, 1인 출자액 25% 이내로 한정 < 이 하 신 설 > ○ 정부지원사업이 농업생산인 경우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 ※ 생산기반 없이 현금만으로 출자한 경우 사업 성공 가능성 희박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설립 후 1~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그리고 금년부터는 농업법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노후 농기계·장비대체 및 신규구입자금지원 강화, 농기업경영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사업규모확대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유망 수출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법인의 회계·경영·정보처리등 교육 지원(50% 보조)
- 농기계·장비의 구입가격의 용자지원액 상향조정(구입가격의 75% 용자, 연리 4%, 1년 거치 4~7년 균분 상환)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금리 5%, 운전자금 1년후 연장가능)
-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법인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사업규모확대 및 사업영역 다각화 지원(시설비의 70% 용자지원, 20억 한도,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유망 수출법인경영체 수출촉진자금 지원(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금리 5%, 1년)

2.4. 농업경영 지원시책

2.4.1 선도 농업경영체 지원

-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한 전업농어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도 농어가」개념이 제시되어 1995년부터 선도 농업 경영체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96년부터 법인 경영체를 추가하였다.
- 선도 농업 경영체란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 내지 농업법인이며,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일반농가 또는 농업법인의 발전

모델이 되고, 나아가 일반농가와 농과계 학생에 대해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하는 실습장으로 활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발전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장비, 그리고 교육·견학제공에 필요한 기타 시설·장비등을 갖추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가족경영체 또는 법인경영 중에서 생산기술·경영기법·시설장비·소득등에서 앞서가는 경영체로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한 자.
 - 지원조건은 개소당 사업비 1억원 한도내에서 국고융자 8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와 자담 20%의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음. 사업실적은 1995년 65개소, 1996년 70개소, 1997년 55개소를 지원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고 그 취지는 관련사업에서 발전적으로 승계하였음.

2.4.2 농기업 경영자금 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제도는 199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정부와 농협이 재원을 조성하고 농협중앙회가 융자를 취급하는 사업이다.
- 사업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체(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년 이상된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규모이상의 일반농업인)이며, 농업경영의 활성화와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시설의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 시설자금은 시설보수 및 대체자금,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설비 구입자금, 시설의 현대화 자금 등으로 연리 5% 2~4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

- 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소요자금의 80% 한도내에 용자
-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자는 연 리 5% 1년 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이며,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소요자금의 전액을 용자.

2.4.3 농업인 해외연수와 교육훈련

- 전업농어가 해외연수사업은 1989년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소요경비의 50%를 정부가 보조(자부담 50%)하고 1~2주간의 일정으로 선진국의 농업현장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까지 총 1,731명이 참여.
-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3조~7조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관련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 의한 교육내용은 신규 농어업인후계자 교육, 신규 전업농어가 교육, 산업기능요원(농어업인후계자)교육, 경영기술 연찬교육, 농업경영체 및 정보화 교육, 농촌지도자 교육등이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및 농촌지도소,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이다.

2.4.4 귀농자 창업지원

- 귀농자에 대하여 영농창업등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구입자금을 지원하므로서 귀농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정부차원에서 귀농인력에 대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귀농인력 영농정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소에 '귀농지도상담실'을 설치하고 있다.

- 먼저, 귀농전 지원은 정보 제공과 교육실시로 구분하여 귀농 희망자에 대한 영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농가주택, 농지, 과수원, 목장 등의 매매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4.5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 기업경영에서 널리 활용되는 벤치마킹(bench-marking)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목표관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면한 경쟁력 제고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자 의식을 함양하고 우수 경영기법 전파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투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우선 1998년까지 40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표준진단표를 보급하여 농업인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에 학계, 컨설팅업계, 관계기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업경영진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적인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농·축협을 통한 각종 경영정보 제공과 함께 농업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 1999년에는 농·축협 각 1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는 원예특작·축산분야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전면적인 종합자금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장

농업인력 수급과 쌀 전업농의 전망

1. 농가인구 전망

1.1. 농가인구 추이(1990년 ~ 1999년)

- 1990~99년의 농가인구는 각각 6,661천명, 4,210천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약 5.1% 감소하였다. 연령별 농가인구분포의 최빈값이 1990년 15~19세에서 1999년 55~59세로 바뀜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농가인구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 농가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취업, 결혼, 진학 등으로 인한 이농이 이들 연령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60대 이상의 농가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14세 이하의 유년층 인구비중은 감소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등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유효생산 연령층인 15~64세 사이의 인구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4세 이하 인구비중은 1990년 20.6%에서 1995년 14.0%, 1999년 12.1%로 연평균

표 3-1 연령별 농가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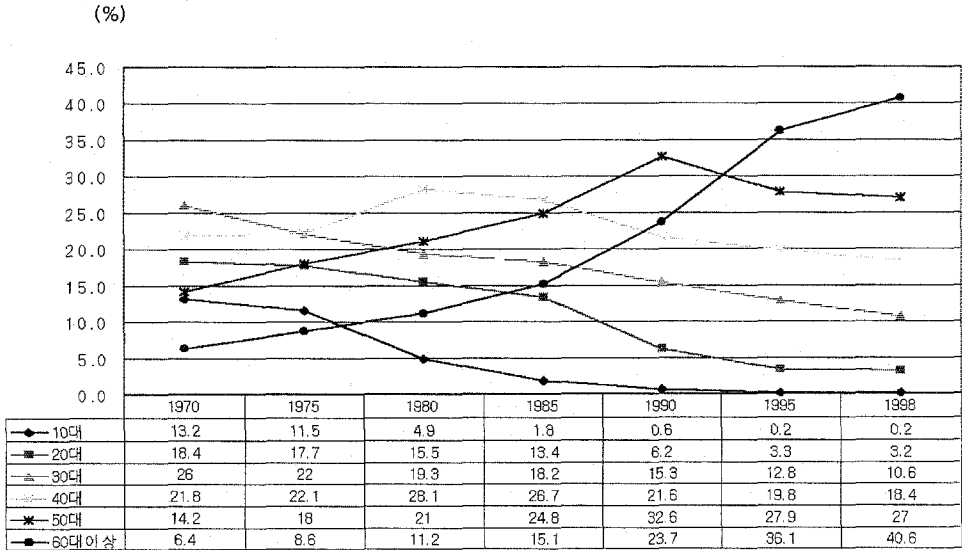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연령 년도	계	15세 미만	15~64	65세 이상
1990	6,661 (100.0)	1,357 (20.6)	4,521 (67.9)	770 (11.5)
1995	4,851 (100.0)	680 (14.0)	3,387 (69.8)	784 (16.2)
1999	4,210 (100.0)	509 (12.1)	2,794 (66.4)	907 (21.5)

약 4.6%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효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비중은 1990년 67.9%, 1995년 69.8%, 1999년 66.4%로 큰 변동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1990년 11.5%, 1995년 16.2%, 1999년 21.5%로 연평균 약 9.9% 증가하였다.

- 14세 이하의 유년층 인구비중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생산자 연령층 중에서 유년층의 부모세대라 할 수 있는 30~40대의 가장 효과적인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농가인구의 노령화는 농업생산부문 취업자의 고령화로 연결된다. 지난 30년 동안(1970~98) 농업생산부문의 취업인력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노동력은 가파르게 감소하였고, 50대 및 60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어 60대 이상의 고령노동력이 농업생산부문에 취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농업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1.2. 농가인구 전망(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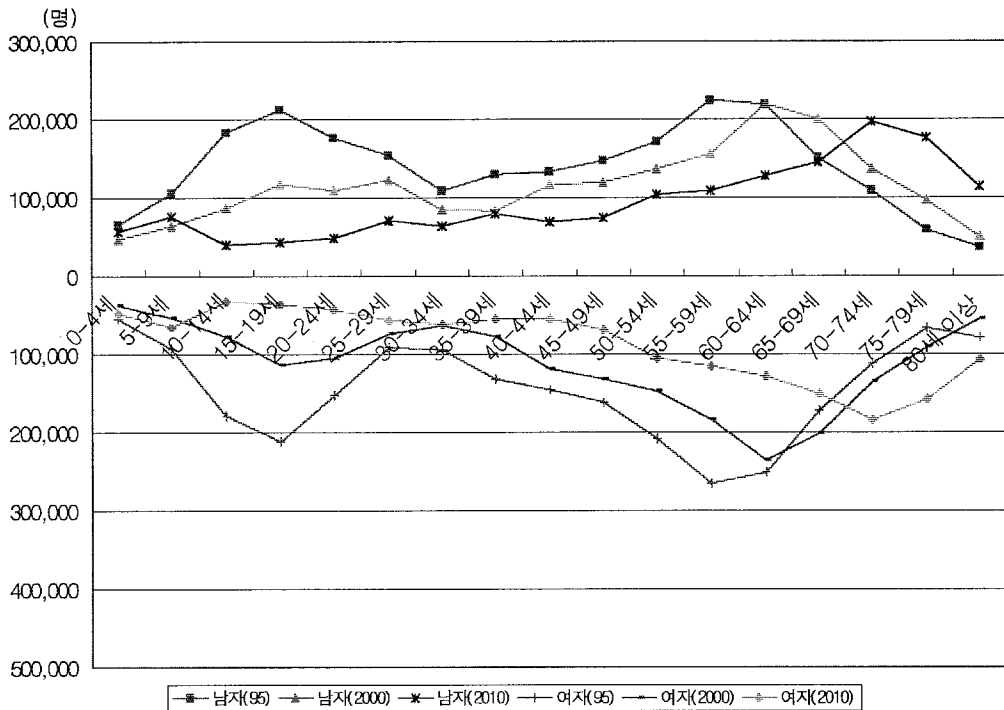
- 코호트(Cohort) 분석방법¹⁾에 의한 농가인구 전망은 2000년 약 4,085천명, 2005년 3,597천명, 2010년 3,231천명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변화율은 1995~2000은 -3.2%, 2000~05은 -2.4%, 2005~10은 -2.1%로 전망된다.
- 1995~2000년의 농가인구 감소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비농업부문의 실업률 증가에 따라 1990~95년 연평균감소율 5.4%보다 둔화된 연평균 3.2%에 머무는 것으로 전망된다.²⁾ 2000년대의 농가인구감소

1) 코호트 방법으로 농가인구 추정하는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둔화된 것은 농림업부문의 취업자 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농림업 취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5% 감소하였으나 1998년에는 비농업부문의 실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4.2% 증가하는 역 이농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의로의 이농률이 종전 추세를 회복하여 농림업취업자는 전년대비 약 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김경덕(2000. 1) 참조).

율은 외환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평균 약 2%의 감소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농가인구가 고령화됨으로써 비농업부문으로 이농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3-2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별 전망 (1995~2010)



- 2000년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가장 많은 21.4%를 점하고, 2005년도는 60대와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0년은 7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전체의 29.5%를 점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향후 10년 동안 농가인구의 1/3 가량이 70대 이상의 고령인구로 구성되고 65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전체의 약 38.9%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전국 농가인구 성별·연령별 전망(2000~2010)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농가인구			2005년 농가인구			2010년 농가인구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0-4세	71,918	62,105	134,023	71,053	61,743	132,796	70,367	61,401	131,768
5-9세	63,313	54,234	117,547	69,654	60,685	130,338	69,264	60,613	129,877
10-14세	88,724	81,481	170,205	55,605	48,344	103,949	62,870	55,413	118,283
15-19세	130,122	127,531	257,653	67,430	62,142	129,572	44,929	39,165	84,094
10대이하	17.3	15.9	16.6	14.4	13.2	13.8	14.9	13.8	14.4
20-24세	129,211	126,868	256,079	87,805	85,100	172,905	49,887	45,602	95,489
25-29세	132,168	90,322	222,491	102,464	83,690	186,154	73,264	61,930	135,194
20대	12.8	10.6	11.7	10.4	9.6	10.0	7.4	6.9	7.1
30-34세	97,255	70,581	167,836	92,113	72,250	164,363	77,622	70,293	147,915
35-39세	87,794	81,837	169,632	81,854	62,512	144,366	80,444	65,642	146,086
30대	9.0	7.5	8.3	9.5	7.6	8.6	9.5	8.7	9.1
40-44세	117,377	121,810	239,187	81,361	76,197	157,558	77,055	59,065	136,121
45-49세	121,863	134,405	256,268	109,642	113,457	223,098	77,071	72,017	149,088
40대	11.7	12.6	12.1	10.4	10.7	10.6	9.3	8.4	8.8
50-54세	137,383	149,693	287,076	115,308	126,383	241,690	104,924	108,039	212,963
55-59세	158,247	188,406	346,653	129,712	137,919	267,631	110,157	118,430	228,587
50대	14.5	16.6	15.5	13.4	15.0	14.2	12.9	14.5	13.7
60-64세	219,309	242,225	461,535	155,406	174,798	330,205	127,849	129,950	257,799
65-69세	203,537	210,906	414,443	206,041	210,173	416,214	147,885	156,294	304,179
60대	20.7	22.2	21.4	19.7	21.8	20.7	16.6	18.3	17.4
70-74세	138,170	142,283	280,453	191,029	181,286	372,315	195,912	186,559	382,471
75-79세	98,191	96,241	194,432	127,601	124,176	251,777	179,339	162,830	342,169
80세이상	50,684	58,943	109,626	87,708	84,725	172,433	116,703	112,289	228,992
70대이상	14.0	14.6	14.3	22.2	22.1	22.1	29.5	29.5	29.5
합계	2,045,266	2,039,871	4,085,137	1,831,787	1,765,578	3,597,365	1,665,542	1,565,531	3,231,073

- 그 결과 60대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60대 이상의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17.8%인 1,187천명, 1995년은 25.9%로 1,255천명이었고, 2000년은 35.7%로 약 1,460천명, 2005년은 42.6%로 약 1,543천명, 2010년은 46.9%로 약 1,516천명으로 전망된다.
- 15~64세의 유효생산연령층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농업부문 기반노동력은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부양지수가 높아져 농가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인구 중에서 15~64세 인구 비중은 2000년 65.2%, 2005년 56.1%, 2010년 49.3%로 전망된다.

1.3. 농업주종사 전망

- 향후 농업생산부문의 기간인력은 농가인구 중에서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원인 농업주종사자³⁾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주종사자를 농업생산부문의 기간 인력으로 가정하여 농업기간인력을 전망·분석하고자 한다.
- 1995년도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분포에서 농업주종사자의 비중을 구한 뒤 이들 연령별·성별 비중이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00년도 이후의 연령별·성별 농업주종사자 수를 전망한다. 농업주종사자 연령별 분포전망은 앞의 연령별 농가인구수에서 연령별·성별 농업주종사자의 비율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3) 농업기간종사자라 할 수 있는 농업주종사자는 농가인구중 만 15세 이상으로 농업종사기간이 있는 가구원인 농업종사자 인구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였거나, 농사는 물론 농사이외의 일에도 종사하였으나 농사종사기간(혹은 농업수입)이 농사이외의 일 종사기간(혹은 농외수입)보다 많은 농가인구를 말한다.

- 2000년 농업주종사자 수는 남자 1,180천명, 여자 1,176천명으로 총 2,356천명, 2005년은 남자 1,125천명, 여자 1,032천명으로 총 2,157천명, 2010년은 남자 1,040천명, 여자 889천명으로 총 1,930천명으로 전망됨. 참고적으로 1990의 농업주종사자 수는 남자 1,589천명, 여자 1,483천명으로 3,072천명이었고, 1995년은 남자 1,210천명, 여자 1,330천명으로 2,540천명이다.
- 농업주종사자의 연평균 변화율은 1990~95년은 -3.4%, 1995~2000은 -1.4%, 2000~05년은 -1.7%, 2005~10년은 -2.1%로 농가인구의 감소율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농가인구 중에서 이농이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기간인력보다는 농업이외의 일에 주로 종사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5~2000년 동안 농업주종사의 연평균 증감율이 -1.4%로 예년보다 낮게 형성된 것은 외환위기로 인한 농가의 이농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연령별 농업주종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농의 대상이 되는 55세 이하의 농업주종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주종사자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 1990년 55세 이하의 농업주종사자수는 약 1,781천명으로 전체 농업주종사자의 약 58.0%에 달하였으나(남 901천명, 여: 880천명) 1995년은 1,123천명으로 약 44.2%로 감소하였고 (남: 517천명, 여: 606천명), 2000년은 883천명으로 전망되어 약 37.5% (남 421천명, 여 463천명), 2005년은 726천명으로 약 33.7%(남 351천명, 여 374천명), 2010년은 603천명으로 전망되어 전체 농업주종사자의 약 31.2%(남 298천명, 여 305천명) 만이 55세 이하의 연령층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주종사자 중 55세 이하의 구성원의 연평균 증감율은 1990~95년

-7.4%, 1995~2000년 -4.3%, 2000~05년 -3.6%, 2005~10년 -3.4%로 전망되어 농업주종사자 감소 또한 55세 이하의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농업주종사자 연령별 성별 전망(2000~2010)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농업주종사자			2005년 농업주종사자			2010년 농업주종사자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대이하	1,725	730	2,455	894	355	1,250	596	224	820
	0.1	0.1	0.1	0.1	0.0	0.1	0.1	0.0	0.0
20대	44,906	35,953	80,859	33,075	31,136	64,211	21,836	21,875	43,711
	3.8	3.1	3.4	2.9	3.0	3.0	2.1	2.5	2.3
30대	97,777	104,873	202,650	91,800	91,936	183,735	84,493	92,943	177,436
	8.3	8.9	8.6	8.2	8.9	8.5	8.1	10.5	9.2
40대	169,253	197,101	366,353	135,624	146,366	281,990	108,981	100,948	209,928
	14.3	16.8	15.5	12.1	14.2	13.1	10.5	11.4	10.9
50대	240,051	286,071	526,121	198,871	223,322	422,193	174,353	191,364	365,716
	20.3	24.3	22.3	17.7	21.6	19.6	16.8	21.5	19.0
60대이상	626,145	551,647	1,177,791	665,133	538,538	1,203,671	650,092	481,873	1,131,965
	53.1	46.9	50.0	59.1	52.2	55.8	62.5	54.2	58.7
55세이하	420,890	462,578	883,468	351,392	374,417	725,809	297,800	305,428	603,228
	35.7	39.3	37.5	31.2	36.3	33.6	28.6	34.3	31.3
합계	1,179,856	1,176,374	2,356,231	1,125,396	1,031,653	2,157,049	1,040,350	889,227	1,929,5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수도권 인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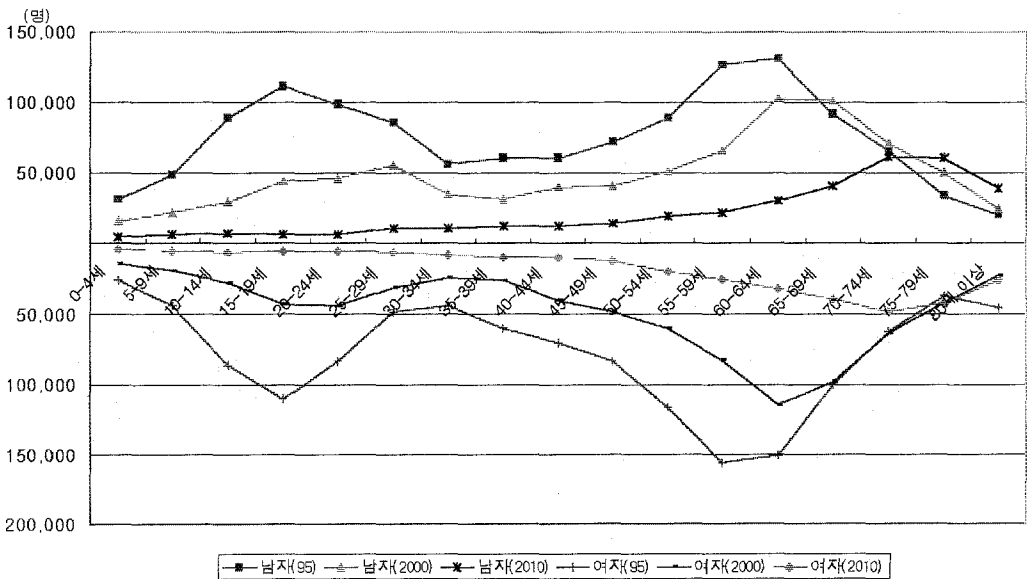
2.1. 수도권 농가인구 전망(2000~2010)

- 전국 수도권농가인구⁴⁾는 1990년 4,637천명에서 1995년 2,602천명으로 1990~95년 동안 연평균 약 8.8% 감소하였다. 이농율⁵⁾을 고려한 코호트

방식으로 수도작 농가인구를 전망하면 2000년 1,850천명, 2005년 1,427천명, 2010년 1,152천명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변화율은 1995~2000년은 약 -5.8%, 2000~2005년은 약 -4.6%, 2005~2010년은 약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작 농가의 소득이 타 작물 재배농가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수도작 농가인구는 타 농가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젊은 유효노동력의 감소 또한 커서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3 수도작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별 전망 (1995-2010)



- 4) 수도작 농가인구는 농가소득에서 수도작 의존도가 50%이상인 농가의 인구를 말한다.
- 5) 이농율 계산은 1990~95년 동안 이농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순수 자연증감율만을 고려하여 코호트 방식으로 1995년의 수도작 농가인구를 추정한 뒤 실제 1995년의 수도작 농가인구와의 차이인 순 이농인구를 구한 뒤 이를 1990년 해당 연령의 인구수로 나누어주면 해당 연령의 수도작 농가인구의 연령별 이농율을 구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경덕 (1998년) 참조.

- 60대 이상의 수도작 농가인구는 1990년에 18.3%(861천명), 1995년에 28.4%(740천명)으로 90년대 중반 수도작 농가인구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령 농가구원이 접하는 비중이 연평균 약 11.0% 증가하였다. 2000년에 40.3%(745천명), 2005년과 2010년도는 각각 48.5%(692천명), 52.5%(604천명)의 비중을 점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도작 농가가 일반농가보다 급격하게 고령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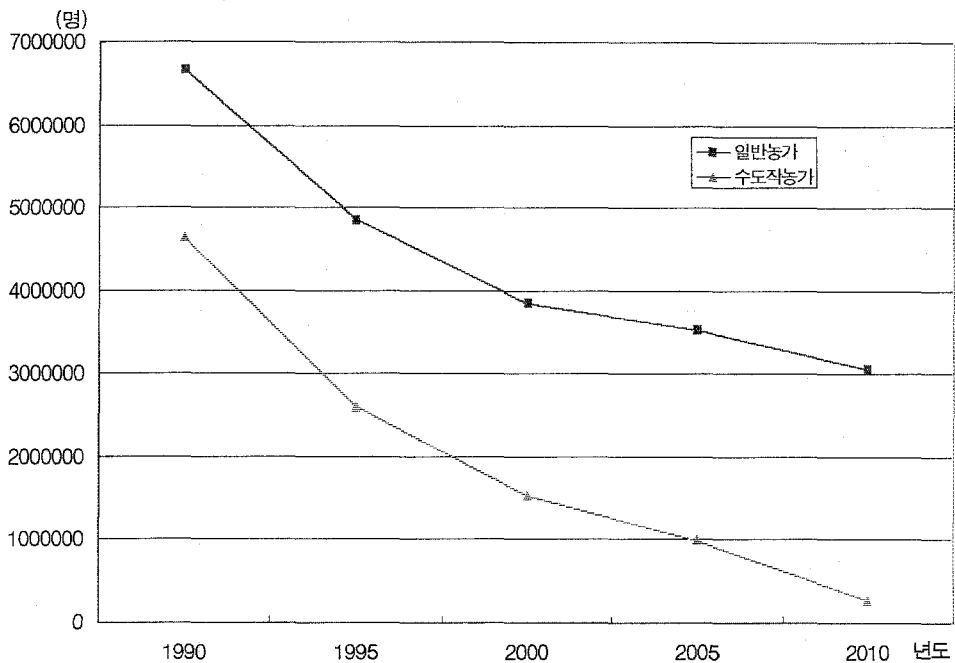
표 3-4 수도작 농가인구의 연령별·성별 전망(2000~2010)

단위: 명, %

구 분	2000년 수도작 농가인구			2005년 수도작 농가인구			2010년 수도작 농가인구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0-4세	30,849	26,897	57,746	27,531	24,085	51,616	24,711	21,662	46,373
5-9세	23,706	20,700	44,406	24,788	21,860	46,647	23,204	20,476	43,680
10-14세	33,562	30,954	64,516	17,614	15,554	33,168	19,692	17,512	37,204
15-19세	53,121	51,729	104,850	22,372	20,639	43,011	12,916	11,407	24,323
10대이하	15.2	14.2	14.7	12.6	11.8	12.2	13.4	12.9	13.2
20-24세	58,957	57,576	116,533	32,323	31,114	63,437	15,365	14,059	29,424
25-29세	64,340	41,807	106,148	41,896	33,536	75,432	24,840	20,721	45,561
20대	13.3	10.8	12.0	10.1	9.3	9.7	6.7	6.3	6.5
30-34세	45,106	29,522	74,628	38,934	28,065	66,998	28,661	24,717	53,378
35-39세	36,397	30,162	66,559	31,816	21,650	53,466	29,757	22,078	51,835
30대	8.8	6.5	7.6	9.7	7.2	8.4	9.8	8.5	9.1
40-44세	44,100	44,817	88,917	28,053	23,609	51,662	25,981	17,887	43,868
45-49세	45,075	53,330	98,404	34,704	35,612	70,315	23,271	19,730	43,000
40대	9.6	10.7	10.1	8.6	8.5	8.5	8.2	6.8	7.5
50-54세	55,387	65,684	121,071	36,673	43,589	80,262	29,529	30,408	59,937
55-59세	70,416	90,039	160,454	45,756	53,197	98,953	31,572	36,960	68,531
50대	13.5	16.9	15.2	11.2	13.9	12.6	10.2	12.2	11.2
60-64세	107,518	123,102	230,620	61,428	74,015	135,442	41,084	45,623	86,707
65-69세	106,805	109,077	215,881	90,995	94,809	185,804	53,876	60,406	114,282
60대	23.0	25.3	24.1	20.8	24.3	22.5	15.9	19.2	17.5
70-74세	75,177	71,498	146,675	91,115	83,038	174,153	80,301	76,703	157,004
75-79세	53,618	46,444	100,061	63,799	55,885	119,684	80,082	68,532	148,614
80세 이상	26,276	25,773	52,048	43,180	34,119	77,299	53,864	44,021	97,884
70대이상	16.7	15.6	16.2	27.0	24.9	26.0	35.8	34.2	35.0
합계	930,408	919,108	1,849,516	732,975	694,375	1,427,350	598,703	552,903	1,151,605

- 1990년대 수도권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1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50대가 최빈값을 형성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 전 연령분포에서 60대가 최빈값, 2005년 이후부터는 70대가 최빈값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서 수도권 농가의 고령화문제는 일반농가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일반농가와 수도권 농가 인구비교 (1990~2010)



2.2. 수도권 농업주종사자 및 경영주 전망

- 수도권 농가의 주종사자 즉, 수도권 기간인력은 2000년 1,053천명, 2005년 836천명, 2010년 666천명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변화율은 2000~05년은 -4.1%, 2005~10년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농가의 기간인력 감소율이 일반농가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적으로 1990~95년, 1995~2000년의 수도권 기간인력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7.4%, -4.5% 이다.

표 3-6 전국 논벼 경영주 연령분포(1990~2010)

단위: 명,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세미만	311	55	10	2	0
10대	0.03	0.01	0.002	0.000	0.000
20-24세	3,757	988	96	9	1
25-29세	19,170	4,726	1,096	239	52
20대	1.9	0.7	0.2	0.1	0.0
30-34세	56,011	17,107	4,588	1,337	524
35-39세	78,612	40,843	15,657	4,320	1,571
30대	10.9	7.0	3.2	1.2	0.7
40-44세	106,321	54,655	37,212	13,002	4,118
45-49세	142,445	73,170	49,445	30,595	11,238
40대	20.2	15.5	13.6	9.5	5.1
50-54세	209,176	99,824	66,972	40,017	26,243
55-59세	213,421	148,667	91,409	55,626	33,913
50대	34.3	30.2	24.8	20.7	20.1
60-64세	169,392	157,942	138,876	75,998	48,088
65-69세	126,466	111,171	144,338	120,583	65,748
70세이상	106,757	114,310	89,130	119,473	107,877
60대이상	32.7	46.6	58.3	68.5	74.1
합계	1,231,839	823,458	638,828	461,203	299,374

- 수도작 농가호수의 변화 및 전망을 살펴보면 1990~95년은 연평균 약 6.6% 감소(1,232천호→823천호) 하였고, 1995~2000년은 연평균 약 4.5% 감소(823천호→639천호), 2000~05년은 연평균 약 5.6% 감소(639호→461천호), 2005~10년은 연평균 약 7.0% 감소(461천호→299천명)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의 경우 전체 농가전망치 1,077천호의 약 42.8%인 461천호가 농업수입 중에서 수도작으로 부터 얻는 수입이 가장 많은 수도작 (중심)농가로 남아있을 전망이다.

- 특히 수도작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농가호수의 비중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는 175천호로 전체 수도작 농가의 약 27.4%의 비중을 점하고, 2005년은 90천호로 약 19.4%, 2010년은 44천호로 14.6%의 비중을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쌀 전업농의 육성목표 검토

3.1 쌀전업농의 선정현황

- 쌀 전업농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3월 현재 78,996명이 선정되어 2002년 선정목표 대비 79%가 선정되어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향후 2년간 21,004호가 추가 선정되어야 한다.
 - 전국목표 10만호를 영농규모화 대상면적(농업진흥지역 면적 및 경지정리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배분하여 산정한 시·도별 목표면적 대비 쌀전업농의 확보율을 보면, 전북(84.8%), 강원(82.7%), 경북(82.4%)의 순으로 확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권역인 기타지역(38.2%)에서는 확보율이 현저히 낮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최근의 동향을 1999~2000년의 선정실적을 통하여 살펴보면, 1999년에 8,156호, 2000년에 7,467호로서 감소추세에 있는데, 년 평균 7,812호가 선정되었다.
 - 지역별 선정농가의 비중을 기준으로 1998년까지의 실적과 최근 2년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남, 전북, 경남, 기타지역은 증가추세, 충남, 경북은 감소추세에 있음.

표 3-7 시·도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단위 : 호수, %

구 분	10만호 선정목표 (A)	기 선정농가 (B)	B/A(%)
경 기	11,720	9,318	79.5
강 원	4,330	3,581	82.7
충 북	5,330	4,363	81.9
충 남	16,270	12,804	78.7
전 북	14,260	12,086	84.8
전 남	19,230	15,309	79.6
경 북	14,100	11,615	82.4
경 남	10,370	8,242	79.5
기 타	4,390	1,678	38.2
계	100,000	78,996	79.0

주: 1) 기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합산한 것임.

2) 10만호 선정목표의 도별 목표치는 각 시·도의 경지정리면적 및 진흥지역면적을 기준으로 배분된 것임.

표 3-8 1999~2000년의 시·도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단위 : 호수, %

구 분	1998년 까지 (A)	1999~2000년			합계
		1999년	2000년	소계	
경 기	7,493(11.8)	765	1,060	1,825(11.7)	9,318(11.8)
강 원	2,874(4.5)	329	378	707(4.5)	3,581(4.5)
충 북	3,494(5.5)	542	327	869(5.6)	4,363(5.5)
충 남	10,615(16.8)	1,266	923	2,189(14.0)	12,804(16.2)
전 북	9,498(15.0)	1,729	859	2,588(16.6)	12,086(15.3)
전 남	11,953(18.9)	1,638	1,720	3,358(21.5)	15,311(19.4)
경 북	9,650(15.2)	998	967	1,965(12.6)	11,615(14.7)
경 남	6,529(10.3)	725	988	1,713(11.0)	8,242 (10.4)
기 타	1,267(2.0)	164	245	409(2.6)	1,676(2.1)
계	63,373(100.0)	8,156	7,467	15,623(100.0)	78,996(100.0)

- 2000년도에 선정된 전업농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면에서는 40대가 43.7% 로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쌀전업농 선

정의 상한연령이라 할 수 있는 50~55세가 25.4%를 점하고 있다. 반면, 신규창설농가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는 7.4%로서 향후 은퇴전업농의 대체지정이 당면과제로 되고 있다.

- 지역별로 50~55세 농가군의 비율을 보면, 경북(31.0%), 전남(29.3%), 경남(26.6%)의 순으로서 고령전업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3-9 2000년도 연령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단위 : 호수, %

구 분	20대	30대	40대	50~55세	계
경 기	78(7.4)	283(26.7)	479(45.2)	220(20.8)	1,060(100.0)
강 원	22(5.8)	97(25.7)	193(51.1)	66(17.5)	378(100.0)
충 북	22(6.7)	80(24.5)	158(48.3)	67(20.5)	327(100.0)
충 남	77(8.3)	244(26.4)	397(43.0)	205(22.2)	923(100.0)
전 북	78(9.1)	211(24.6)	354(41.2)	216(25.1)	859(100.0)
전 남	156(9.1)	381(22.2)	679(39.5)	504(29.3)	1,720(100.0)
경 북	38(3.9)	182(18.8)	447(46.2)	300(31.0)	967(100.0)
경 남	70(7.1)	218(22.1)	437(44.2)	263(26.6)	988(100.0)
기 타	14(5.7)	58(23.7)	117(47.8)	56(22.9)	245(100.0)
계	555(7.4)	1,754(23.5)	3,261(43.7)	1,897(25.4)	7,467(100.0)

표 3-10 2000년도 경영규모별 수도작 전업농 선정 현황

단위 : 호수, %

구 분	1ha미만	1~2ha	2~3ha	3ha이상	계
경 기	522(49.2)	317(29.9)	116(10.9)	105(9.9)	1,060(100.0)
강 원	192(50.8)	129(34.1)	37(9.8)	20(5.3)	378(100.0)
충 북	156(47.7)	121(37.0)	33(10.1)	17(5.2)	327(100.0)
충 남	415(45.0)	322(34.9)	115(12.5)	71(7.7)	923(100.0)
전 북	235(27.4)	290(33.8)	185(21.5)	149(17.3)	859(100.0)
전 남	797(46.3)	658(38.3)	180(10.5)	85(4.9)	1,720(100.0)
경 북	510(52.7)	361(37.3)	74(7.7)	22(2.3)	967(100.0)
경 남	469(47.5)	361(36.5)	74(7.5)	84(8.5)	988(100.0)
기 타	72(29.4)	93(37.9)	34(13.9)	46(18.8)	245(100.0)
계	3,368(45.1)	2,652(35.5)	848(11.4)	599(8.0)	7,467(100.0)

- 규모면에서는 1ha미만이 45.1%로서 전체농가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1~2ha(35.5%)로서 2ha미만이 80.6%로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선정농가의 평균영농규모는 1.28ha로서 이는 '99년도 선정농가 평균영농규모 1.57ha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영세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로 1ha 미만의 영세농가 비율을 보면, 경북(52.7%), 강원(50.8%), 경기(4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ha이상의 규모가 큰 농가의 비율은 기타지역(18.8%), 전북(17.3%)이 타 지역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2 쌀전업농 영농규모화사업의 현황

- 1995~99년 동안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쌀전업농 34,735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을 보면, 전남이 7,027호로 약 20.2%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북 6,844호(19.7%), 충남 4,814호(13.9%), 전북 4,591호(13.2%)의 순이다.
- 그리고 사업 지원 전후의 경영규모는 지원 전의 호당 평균 2.11ha에서 지원 후 3.47ha로 증가하여 전국 호당평균 약 1.36ha가 증가하였다. 전북이 호당 평균 4.28ha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 3.72ha이고 충남 3.67ha, 전남 3.61ha 순이다. 지원 후 증가면적은 경기가 1.65ha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북 1.61ha, 충남 1.51ha, 충북 1.46ha 순으로 나타났다.
- 1995~1999년간 전업농의 총 영농규모 증가면적은 47,240ha으로 년 평균 9,448ha의 농지가 전업농에게 공급되었음.

그림 3-5 1995~1999 지역별 쌀 전업농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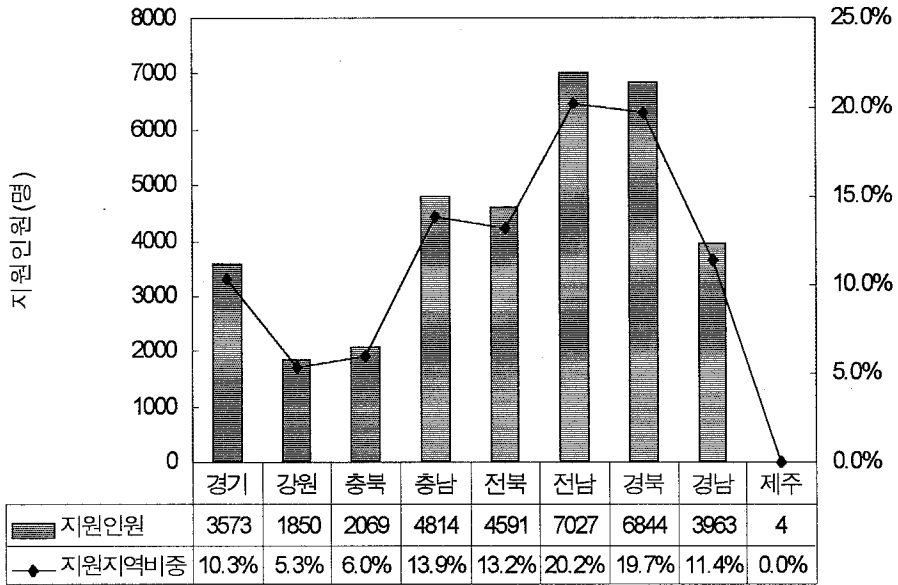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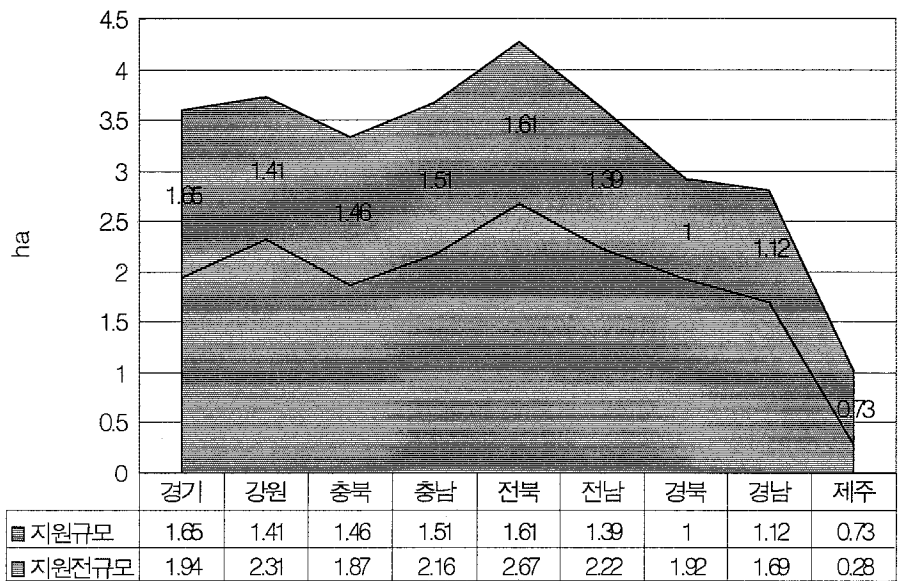


그림 3-6 쌀 전업농 지원농가의 지원 전·후 호당 평균 경영규모(1995~1999평균)



3.3 전업농 육성목표의 전망

- 쌀 전업농 10만호 설정은 수치상으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0만호 선정완료 시점인 2002년 경영주 연령 55세 이하인 수도작 농가 호수는 약 143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쌀 전업농 사업의 목표년도인 2004년의 경우 경영주 연령 55세 이하인 수도작 농가 약 116천호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00.3월 현재 쌀 전업농 78,996호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농가 수는 21,004호이다. 2002년 55세 이하의 수도작 중심 농가호수는 143천호로서 기 지정된 79천호⁶⁾를 뺀 64천호가 선정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약 32.8%가 쌀 전업농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한 다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2년까지 10만호 육성에 필요한 쌀전업농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농가수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1999~2000년 쌀 전업농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2002년 쌀전업농의 선정 전망치를 보면 98,533호로 10만호 목표에 미달되고 있으며, 2000년 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96,505호로 쌀 전업농 10만호 확보가 더욱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 그리고 쌀전업농 대상 농가(55세 이하 수도작 중심농가)의 수가 2002년에는 14만호로 여유가 있는 편이나 쌀전업농 육성프로그램의 목표년도 이듬해인 2005년에는 90천호로 감소되어 고령화된 전업농의 대체수요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10만호의 유지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6) 쌀 전업농으로 지정된 농가가 이농 또는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택함.

표 3-11 2002년 쌀 전업농 선정 전망

단위 : 호수, %

구 분	2002년 전업농 선정목표 ¹⁾ (A)	2002년 선정 전망 ²⁾		B/A(%)	C/A(%)
		'99~'00년기준 (B)	'00년 기준 (C)		
경 기	11,720	11,587	11,864	98.9	101.2
강 원	4,330	4,462	4,476	103.0	103.4
충 북	5,330	5,448	5,099	102.2	95.7
충 남	16,270	15,444	14,870	94.9	91.4
전 북	14,260	15,379	14,006	107.8	98.2
전 남	19,230	19,612	19,431	102.0	101.0
경 북	14,100	13,980	13,820	99.1	98.0
경 남	10,370	10,404	10,640	100.3	102.6
기 타 ³⁾	4,390	2,217	2,299	50.5	52.4
계	100,000	98,533	96,505	98.5	96.5

주 : 1) 육성목표 10만호를 우량농지(경지정리면적 및 진흥지역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한 수치
 2) 전망치는 1999년 및 2000년 년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세치임.
 3) 기타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합산한 것임.

- 이와같이 쌀전업농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쌀 전업농 선정이 부진한 것은 1999년부터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의 보조지원이 없어지는 등 전업농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전업농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든 점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공급부족 및 고지가 현상으로 영농규모화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도작 전업으로는 기대소득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업농 선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업농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소득목표 달성에 있다. 여기에는 영농규모, 쌀의 경우는 농지면적의 확대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추세로는 평균적인 쌀 전업농의 경우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영농규모화 목표년도인 2004년의 농지의 수급전망을 해보면, 수도작 재배면적 1,006천ha⁷⁾, 수도작 재배농가 1,190천호로 호당 평균 쌀 재배면적은 0.93ha로 전망된다. 따라서 10만호가 소득목표규모인 평균 4.2ha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쌀 재배면적의 41.7%에 달하는 42만ha를 쌀전업농이 확보하여야 한다.
- 따라서 2004년까지 소득목표 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농지수요는 1998년까지 선정된 쌀 전업농 63천호(호당 평균영농규모 2.6ha)에게 2004년까지 110천ha의 농지가 필요하고, 여기에 1999년 이후 선정농가 및 미선정농가 37천호의 영농규모가 1999~2000년 선정농가의 평균영농규모 1.4ha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목표규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지수요는 약 104천ha 합계 214천ha의 농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그런데 농지 공급규모는 탈농가의 농지공급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0~04년 동안 탈농가 수는 약 14만 호로 전망되고 탈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규모를 전국 평균치인 0.93ha로 간주하면 농지의 공급량은 약 130천ha로 이 농지가 모두 쌀 전업농에게 모두 배분된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⁸⁾. 또, 최근 5년간의 농지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1995~1999년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공급한 농지 47,240ha에 동일면적의 농가 자력증가를 가정할 경우 농지 공급량은 10만ha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평균적인 전업농의 경우 목표달성이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7) 종전의 전망치 92만ha보다 증가한 이유는 90년대 중반부터 쌀 증산운동의 일환으로 재배면적이 감소율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KREI ASMO '99)

8) 단, 탈농가외에 영농규모 축소농가에서도 농지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공급면적은 감안되지 않았다.

4. 농업인력 및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시사점

4.1. 농업인력 수급조건

- 농가인구 현황 및 전망을 요약하면 농가인구 및 농업 주종사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도작 농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2005년 경영주 연령이 55세 이하인 수도작 농가호수는 90천호로서 현 추세로는 2002년까지 쌀전업농을 10만호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 1990년: 616천호(50.0%)
 - 1995년: 291천호(35.4%)
 - 2000년: 175천호(27.4%)
 - 2005년: 90천호(19.4%)
 - 2010년: 44천호(14.6%)
- 이러한 문제는 노령화된 전업농을 대체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군(20대)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 전체농가에서의 비중: 1990년: 7.9%, 1995년: 3.9%, 2000년 3.5%, 2005년 3.1%, 2010년 2.3%
 - 수도작 중심농가에서의 비중 : 1990년: 4.0%, 1995년: 3.9%, 2000년 3.6%, 2005년 3.1%, 2010년 2.1%
- 따라서 고령농업인 조기탈농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에 대한 조기영농승계대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

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귀농사업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쌀 전업농 육성목표 재검토

- 2004년에 쌀 전업농 10만호가 42만ha를 경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2002년에 쌀 전업농 10만호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쌀 전업농 지원대상자격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쌀을 주작목으로 경영하고 있는 55세 이하 농업인이다.
 - 호당 평균 5ha 규모의 쌀 전업농 6만호
 - 호당 평균 3ha 규모의 복합 쌀 전업농 4만호
 - 호당 (가중)평균규모: 4.2ha
- 육성목표 설정의 기본개념은 쌀농업에 전문화하여 타 산업부문 종사자와 대등한 소득을 올리면서 경쟁력을 갖춘 가족경영체이며 개방경제를 전제로 한 소득균형목표와 완전취업조건을 갖춘 자립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쌀 전업농의 소득확보의 여건을 보면 2004년 WTO 재협상등 수입개방이 가중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쌀의 상대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산업부문의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목표로 하여야 할 영농규모는 현행 목표를 크게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이와 같이 쌀전업농의 규모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 육성대상이 되는 쌀 전업농의 수는 보다 소수·정예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은 쌀전업농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주 연령 55세 이하 수도작 농가군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수치상으로 2004년까지는 10만호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05년에는 9만호, 2010년에는 44천호로서 2005년부터는 쌀 전업농으로 육성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별로도 전업농의 여건은 차이가 크다.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전업(轉業)이 불가능한 노령가구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영농을 지속하는 있고,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도작 복합영농을 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쌀 전업농에 대한 농지공급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인력의 수급 및 영농규모화의 조건에 지역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쌀전업농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 영농활동 및 농지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농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도작 영농에서 육묘·이앙등 노동집약적 농법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전업농만으로는 영농이 어려우며, 직파재배등의 조방적 농법을 도입하더라도 재배적지는 소수의 평야지대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조건불리지를 중심으로 농지의 유희화 문제가 발생하여 기초식량의 자급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며 농촌사회의 기능유지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쌀농업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쌀전업농을 육성하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간농가를 중심으로 여기서 피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도작 농가를 조직화하여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쌀 전업농을 단순히 규모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주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상대적으로 경쟁 열위

에 있는 쌀농업의 수호자라는 관점도 보완되어야 하며, 이때의 쌀 전업 농은 수도작 전업(專業)이라는 단선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의 농업여건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개별영농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쌀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 농가 또는 경영체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4 장

사례지역의 농업경영구조와 경영체 실태분석

- 본 장에서는 제3장의 쌀 전업농의 전망과 전업농 육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농업에 기초한 쌀전업농 육성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지대별 농업경영구조, 전업농의 경영실태 및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와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사례지구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시범지구로서 지대별(도시근교, 평야, 중산간)로 1개 지구씩 사례지구를 유의 선정하였다.
- 아울러 쌀전업농과 함께 수도작 경영주체로 육성되고 있는 쌀농업법인의 육성모델 구축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쌀 전업농 사례조사지구를 포함하는 시·군 관내의 쌀농업법인의 설립동향, 사업추진실적, 경영성과 및 향후 경영의향을 중심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1. 농업경영구조와 농지유동화의 조건

1.1 사례지구의 농업경영구조

표 4-1 사례지구의 농업경영 개황

구 분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독정지구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금판지구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지구
지대특성	도시근교 평야	농촌 평야	농촌 중간
주요 작부체계	벼 단작	벼+보리	벼+보리,마늘,양파
경지면적(ha)	248.9	337.6	153.9
호당 경영규모(ha)	3.32	3.84	0.95
임차지 비율(%)	46.7	48.2	27.4
농지임대자의 유형	비연고지주(74%)	재촌,연고지주(91%)	재촌,연고(100%)
농가호수(호)	75	88	162
3ha이상 농가비율(%)	48.0	55.7	6.2
3ha이상농가 농지집적율(%)	78.0	80.8	32.4
경영주년령 50세 미만(%)	34.6	39.6	17.8

○ 사례조사지구⁹⁾는 화성군 장안면의 독정지구, 부안군 백산면의 금판지구, 합천군 청덕면의 가현지구로서 각각 도시근교 평야, 농촌 평야, 농촌 중간지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 독정지구는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에서 서해안 방향으로 승용차로 10분거리에 있는 서해안에 연접한 평야지로서 1970년대 간척으로 조성된 벼 단작 중심의 답작지대 임. 현재 논외의 평당지가는 평균 5만원, 노임은 남자기준으로 일당 5만원 수준으로 고지가·고임금 지대임.

9) 사례조사지구는 농업기반공사 시범사업지구로서 각 지대별로 비교적 농지유동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각 지대의 평균적인 모습과는 일정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안군 백산면은 부안읍에서 김제방향으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대규모 평야지대로 최근 재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 지구로서 벼+보리의 이모작 중심의 답작지대임. 논외의 평당지가는 평균 3만원, 노임은 남자기준으로 일당 4만원 수준임.
 - 합천군 청덕면은 합천읍에서 북서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중산간지 분지형 답작지구 인데 미 경지정리지대 였으나 최근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구로서 벼+보리, 벼+마늘,양파의 작부체계가 형성되어 있음. 논외의 평당지가는 평균 4만원, 노임은 일당 4만원 수준임.
- 조사지구 가운데 평야지대에 위치한 독정지구와 금판지구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3ha 이상이며, 그중 임차지의 규모가 50%에 이르고 있는 반면, 중산간지에 위치한 가현지구는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ha를 하회하고 있고, 자작지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벼 중심의 평야지대와 다양한 복합작목이 도입되고 있는 가능한 중산간 복합지대의 영농규모화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의 비율은 독정지구 48.0%, 금판지구 55.7%, 가현지구 6.2%이며, 3ha 이상 농가의 농지집적비율은 독정지구 78.0%, 금판지구 80.8%, 가현지구 32.4%로서 독정지구와 금판지구는 대농층이 두텁고 정예화 되어 있는 반면, 가현지구는 중소농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
- 임차지의 공급원은 농촌지역인 금판지구와 가현지구는 재촌 또는 연고지주로서 재촌농가의 이·탈농과정에서 임차지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시근교인 독정지구는 비 연고 부채지주가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적 농지보유 현상을 엿볼 수 있다.
- 경영주 연령 50세 미만의 청장년층 경영주의 비율을 보면, 평야지대에

위치한 독정지구와 금판지구는 각각 34.6%와 39.6%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가현지구는 17.8%로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산간지대 에서 경영주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농지유동화의 조건

- 한편 사례지구의 농지유동화 상황을 최근 5년간 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상황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평야지대는 3ha이상의 대농층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중산간지대에서는 영농규모를 확대한 극소수의 전업농 계층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규모확대 농가수에 비하여 규모축소 농가수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농지의 공급은 재촌농가의 규모축소 보다는 이·탈농가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경영규모 증·감 상황별 분포

단위: 호, (%)

구 분	과거 5년간			향후 5년간			계	
	증가	현상유지	감소	증가	현상유지	감소		
독정지구	3ha 미만	7 (17.9)	30 (76.9)	2 (5.2)	11 (28.2)	14 (35.9)	14 (35.9)	39 (100.0)
	3ha 이상	25 (69.4)	10 (27.8)	1 (2.8)	31 (86.1)	3 (8.3)	2 (5.6)	36 (100.0)
	계	32 (42.7)	40 (53.3)	3 (4.0)	42 (56.0)	17 (22.7)	16 (21.3)	75 (100.0)
금판지구	3ha 미만	7 (17.9)	26 (66.6)	6 (15.5)	11 (28.2)	7 (17.9)	21 (53.9)	39 (100.0)
	3ha 이상	40 (81.6)	7 (14.3)	2 (4.1)	42 (85.7)	5 (10.2)	2 (4.1)	49 (100.0)
	계	47 (53.4)	33 (37.5)	8 (9.1)	53 (60.2)	12 (13.6)	23 (26.2)	88 (100.0)
가현지구	3ha 미만	18 (11.8)	130 (85.6)	4 (2.6)	24 (15.8)	94 (61.8)	34 (22.4)	152 (100.0)
	3ha 이상	10 (100.0)	0 (0.0)	0 (0.0)	9 (90.0)	1 (10.0)	0 (0.0)	10 (100.0)
	계	28 (17.3)	130 (80.2)	4 (2.5)	33 (20.4)	95 (58.6)	34 (21.0)	162 (100.0)

- 최근 5년간 규모확대농가 비율은 금판지구(53.4%), 독정지구(42.7%), 가현지구(16.9%)의 순이며, 규모축소농가비율은 금판지구(9.1%), 독정지구(4.0%), 가현지구(2.5%)의 순임.
 - 3ha이상계층의 규모확대농가 비율은 독정지구가 69.4%, 금판지구가 81.6%, 가현지구가 100%로서 가현지구의 경우 3ha이상층의 규모확대비율이 가장 높음.
 - 반면, 3ha미만 계층의 규모확대농가 비율은 독정지구와 금판지구가 각각 17.9%, 가현지구가 11.8%로서 가현지구의 3ha미만 계층의 규모확대비율이 가장 낮음.
 - 3ha 미만농가의 규모축소농가비율은 독정지구 5.1%, 금판지구는 15.4%, 가현지구는 2.6%로서 금판지구가 가장 높음.
- 농가의 향후 5년간 경영규모 의향에서도 위의 최근 5년간의 추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지의 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소 의향 농가수의 비율이 평야지대의 경우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근교에 위치한 독정지구의 경우 향후 대농층의 규모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전체농가에서 향후 5년이내에 규모확대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농가비율은 금판지구(60.2%), 독정지구(56.0%), 가현지구(20.4%)의 순이며, 규모축소농가비율은 금판지구(26.1%), 독정지구(21.3%), 가현지구(21.0%)의 순임.
 - 3ha이상 계층의 규모확대농가 비율은 독정지구가 86.1%, 금판지구가 85.7%, 가현지구가 90%로서 가현지구의 규모확대 의사가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음.
 - 3ha미만 계층의 규모확대농가 비율은 독정지구와 금판지구가 각각 28.2%, 가현지구가 15.8%로서 3ha 미만층의 규모확대의향은 낮음.
 - 3ha미만 농가의 규모축소농가 비율은 독정지구 35.9%, 금판지구는

53.8%, 가현지구는 22.3%로서 금판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영농규모 축소의향농가 중 2ha 미만 규모계층에서는 탈농, 2-3ha 규모계층에서는 50% 규모축소, 3ha이상 규모계층에서는 30% 규모축소가 일어난다는 가정에서 향후 5년간 농지공급량을 추정해보면, 독정지구 15.9ha, 금판지구 30.0ha, 가현지구 17.8ha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지공급량을 각 지구의 규모확대 의향이 있는 농가에 배분할 경우 호당 평균 규모확대 가능면적은 0.38ha, 금판지구 0.57ha, 가현지구 0.53ha로서 도시근교지대인 독정지구의 농지의 공급조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추정됨.

표 4-3 향후 5년간 농지 공급량 추정

구 분		호당 평균 경지면적(ha)	규모축소의향 농가수(호)	축소비율(%)	농지공급면적 (ha)
독 정 지 구	1ha미만	0.48	5	100	2.40
	1-2ha	1.30	6	100	7.80
	2-3ha	2.40	3	50	3.60
	3ha이상	5.4	2	30	3.24
	평균, 계	3.32	16		17.04
금 판 지 구	1ha미만	0.44	6	100	2.64
	1-2ha	1.47	7	100	10.29
	2-3ha	2.39	8	50	9.56
	3ha이상	5.56	2	30	3.34
	평균, 계	3.84	23		25.83
가 현 지 구	1ha미만	0.50	33	100	16.50
	1-2ha	1.25	1	100	1.25
	2-3ha	2.55	0	50	0
	3ha이상	4.98	0	30	0
	평균, 계	0.95	34		17.75

주: 규모축소비율은 2ha 미만 규모의 규모축소는 이·탈농을 의미하고,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 일수록 현 영농규모에서 규모 축소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각 영농규모별 규모축소의향농가의 규모축소 비율을 2ha 미만 규모에서는 현 영농규모의 100%, 2~3ha 규모에서는 50%, 3ha 이상 규모에서는 30%를 축소비율로 간주하였음.

-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례지구의 향후 농지유동화를 전망해보면, 도시근교지역의 독정지구는 재촌농가의 영농규모 현상유지의향이 강하고, 지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연고지주의 자산증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를 재 임대하면서 대농층을 중심으로 영농규모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향후 농지공급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농가의 영농잔류성향이 높아 규모확대의 가능성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 평야지역인 금관지구는 영농규모화에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임차지의 공급은 주로 재촌 노령가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노령가구의 탈농이 빠르게 진전 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 지역 농지의 80%를 3ha 이상 규모의 대농층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농지 유동량은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중산간지인 가현지구는 영농규모화가 정체상태이며, 경영규모에서 자작지가 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경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기계화 수준이 낮고, 다양한 복합작목이 도입되고 있어 영세노령가구의 영농참여율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소수의 농가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의 복합화로 대농층의 규모확대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된 농지의 수요층은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는 대농보다는 복합영농을 하는 중농층일 가능성이 크며, 조건불리지의 경우 농지의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보다는 농지의 수요측면에서의 문제 즉, 농지 유희화를 야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

2. 쌀 전업농의 경영실태와 영농의향

2.1 전업농의 창업과정

- 쌀 전업농의 창업연령은 평균 26.4세, 현재 평균연령 48.2세로서 평균 영농경력은 21.8년이다. 창업시기별 창업당시의 연령을 보면, 60-70년대는 평균 23.4세, 80-90년대는 33.3세로서 창업연령이 고령화 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근교지역의 특성을 지닌 독정지구 보다는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금판지구 와 가현지구에서 창업연령의 고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쌀 전업농의 창업형태는 선친영농을 도우다가 직계승한 경우가 71.1%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19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에서 취업하다가 귀농한 경우(23.1%), 고향에서 영농을 도우면서 비농업에 종사하다가 영농을 계승한 경우(19.2%)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지구별로 보면, 도시근교에 위치한 독정지구의 경우 귀농 및 비농업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판지구의 경우는 1980-90년대에 창업한 농가 12호중 5호가 귀농 또는 비농업종사후 귀농한 사례임.
 - 반면, 중산간지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한 가현지구는 대부분 선친으로부터 영농을 직계승 형태로 창업되었으며 80-90년대에 창설된 농가는 소수에 불과함.
- 창업당시의 영농규모는 평균1.6ha임. 1980-90년대에 들어와서는 3ha이상 규모 (30.7%)가 가장 큰 비중을 점하는 등 영농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중산간 복합영농지대인 가현지구는 창업규모가 대부분 2ha미만의 영세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표 4-4 쌀 전업농의 창업과정

단위 : 호

구 분	독정지구	금관지구	가현지구
창업년대(인)			
(60 - 70년대)	14	24	10
(80 - 90년대)	10	14	4
창업연령 평균(세)			
(60 - 70년대)	25.3	22.5	22.6
(80 - 90년대)	31.9	35.1	33.0
창업당시 규모(ha)			
(60 - 70년대)	1.0	1.4	1.6
(80 - 90년대)	2.2	2.7	0.9
창업방법			
(영농직계승)	13	28	13
(U - 턴 등)	11	10	1

-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쌀 전업농의 창업 연령은 과거 20대에서 30대로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창업당시의 영농규모면에서도 평야지대의 경우 3ha이상으로서 규모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이상의 농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서 영농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영농계승의 형태는 과거에는 선친의 영농을 도우다가 직계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선친의 영농을 도우다가 이농한 후, 선친의 영농은퇴시점에서 U턴하여 영농을 계승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도시근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영농여건이 좋지 않은 중산간지대에서는 최근 영농을 계승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U-턴등에 의한 창업, 신규창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쌀 전업농의 경영특성과 영농규모화

- 각 지구별 쌀전업농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면, 먼저 영농규모 면에서는

도시근교 평야지대인 독정지구는 5.8ha(소유 3.3, 임차 2.5), 농촌 평야지대인 금판지구는 6.6ha(소유 3.4, 임차 3.2), 중산간 복합영농지대인 가현지구는 3.8ha(소유 2.1, 임차 1.7)로서 전 지역에서 임차지의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농촌 평야지대인 금판지구는 임차지율이 50%에 이르고 있다.

- 경영주 평균연령은 독정지구 48.3세 금판지구 48.4세, 가현지구 48.1세, 농업종사자수는 독정지구 2.5명, 금판지구 3.3명, 가현지구 2.6명이다.
- 호당 평균 농업소득액은 벼 단작지대인 독정지구가 3,587만원, 벼+보리의 이모작 지대인 금판지구는 4,888만원, 복합영농지대인 가현지구는 3,494만원이며, 영농규모 ha당 평균 농업소득액은 독정지구 618만원, 금판지구 741만원, 가현지구 919만원으로 추산된다.

표 4-5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단위 : 호, ha, 세, 명, 만원

구 분		농가 호수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농 종사자 업수	작물소득	농업소득
			계	소유	임차				
독 정 지 구	2ha 미만	-	-	-	-	-	-	-	-
	2 ~ 3ha	2	2.4	1.3	1.1	46.5	3	1,211	2,174
	3 ~ 5ha	9	3.8	2.6	1.2	48.6	2.6	2,372	2,562
	5 ~ 10ha	9	6.6	3.6	3.0	46.8	2.9	3,769	3,888
	10ha 이상	4	10.3	4.9	5.4	52.3	2.8	5,876	5,921
	평균	24	5.8	3.3	2.5	48.3	2.5	3,259	3,587
금 판 지 구	2ha 미만	-	-	-	-	-	-	-	-
	2 ~ 3ha	-	-	-	-	-	-	-	-
	3 ~ 5ha	11	4.3	2.5	1.8	47.5	2.5	2,901	3,424
	5 ~ 10ha	23	7.0	4.0	3.0	48.2	3.7	4,474	5,240
	10ha 이상	4	10.9	2.5	8.4	51.5	3.8	6,626	6,889
	평균	38	6.6	3.4	3.2	48.4	3.3	4,193	4,888
가 현 지 구	2ha 미만	5	1.4	1.3	0.1	49.6	2.4	1,800	1,961
	2 ~ 3ha	2	2.6	1.4	1.2	46.0	3.5	2,114	2,764
	3 ~ 5ha	3	3.5	2.0	1.5	49.7	3.0	3,120	3,653
	5 ~ 10ha	3	6.5	4.1	2.4	46.7	2.3	5,284	5,352
	10ha 이상	1	11.1	2.4	8.7	45	2	5,796	6,566
	평균	14	3.8	2.1	1.7	48.1	2.6	3,159	3,494

- 지구별로 2004년 목표소득에 근접한 농가의 사례를 보면, 벼 단작지대인 독정지구는 7ha(소유 3.3ha, 임차 3.7ha)임. 벼+보리의 이모작지대인 금판지구는 5ha(소유 3.8ha, 임차 1.2ha), 복합영농이 활발한 가현지구는 벼+보리, 양파, 수박의 작부체계인 3.5ha(소유 1.5ha, 임차 2.0ha)수준으로 복합부문의 도입 여하에 따라 차이가 크다.
- 농업소득원은 독정지구는 작물소득이 3,259만원으로 90.9%를 점하고 있다. 작물의 소득으로서는 축산농가 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작업 소득이다. 벼+보리 이모작지대인 금판지구는 호당 평균 농업소득액이 4,888만원, 그중 작물소득이 4,193만원으로 85.8%로서 임작업소득 비율이 가장 높다. 다양한 복합작목이 도입되어 있는 가현지구는 호당 평균 농업소득액이 3,494만원, 그중 작물소득이 3,159만원으로 90.4%를 점하고 있다.
- 한편, 경영능력을 감안한 목표영농규모를 보면, 독정지구는 평균 9ha 규모로서 5-10ha의 규모대가 54.2%를 점하고 있다. 금판지구는 평균 12.9ha 규모로서 15ha이상의 규모확대를 바라는 농가가 42.1%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가현지구의 경우, 목표영농규모 평균은 3.5ha, 3-5ha규모대가 42.9%를 점하고 있다.

표 4-6 전업농의 영농규모화에 대한 의향

구 분	독정지구	금판지구	가현지구
영농규모목표	9.0ha	12.9ha	3.5ha
규모화 방법	구입 17% 임대차 75% 수위탁 8%	구입 42% 임대차 53% 수위탁 5%	구입 43% 임대차 43% 수위탁 14%
규모확대 만족도	29.2%	36.8%	7.1%
규모화의 긍정적 요인	기반정비 50% 이농 30%	기반정비 32% 이농·고령 47%	고령화 100%
규모화의 부정적 요인	겸업화 59%	전업농 과다 57%	영농 복합화 50%

- 향후 규모확대의 방법은 독정지구는 농지임대차 중심이 75.0%, 농지구입 중심이 16.7%로서 농지임대차 중심의 규모화를 희망하고 있다. 금판지구는 농지임대차 중심 52.6%, 농지구입 중심 42.1%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현지구는 농지임대차 중심 64.3%, 농지구입 중심 21.4%로서 농지임대차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규모확대의 제약과 농기계 이용 효율화를 고려한 수위탁의 규모화는 하위규모계층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간 지대인 가현지구에서 선호도가 높음.

- 규모화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는 3개지구 모두 기반정비의 양호를 우선적으로 꼽고있고, 그 다음으로 경영주의 고령화·점업화를 주 요인으로 들고있다. 그리고 다양한 작부체계가 형성된 가현지구는 농가의 작목전환에 따른 요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규모확대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전 지역에서 농지의 공급부족을 절대적인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가현지구는 규모확대의 여력이 없다는 수요자측 요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 사례지구 쌀전업농의 경영실태에서의 시사점은 지역의 농업여건에 따라 쌀 전업농의 작부체계, 영농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쌀전업농의 육성 목표도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라 하더라도 지역의 논 작부체계에 따라 다양한 복합작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작을 전업적으로 재배하여 도시 자영업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전업농 육성의 방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쌀 전업농의 개념도 수도작 전업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지역

의 수도작을 담당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라는 의미가 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또 여기에서의 일정규모는 지역의 농지 조건 등 영농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상정될 수 있음.

- 그리고 영농규모화 정책의 방향도 전업농의 영농규모의 절반이 임대차에 의존하고 있고, 현실지가가 수익지가를 크게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차 중심의 영농규모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농규모는 단기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성장 초기 농가의 경우 농작업의 수위탁이 경영에서 접하는 비중이 큰 만큼 영농규모화의 범주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 전업농의 영농기계화 실태와 전망

- 전업농의 농기계 이용형태를 보면, 영농규모가 가장 큰 금판지구는 본인농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도시근교의 독정지구는 공동이용 형태가 많으며,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가장 작은 가현지구는 공동이용과 함께 수위탁의 의존도도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 독정지구는 전업농과 같이 작업조를 편성하고 있는 농가간, 또는 친인척간 공동이용을 하는 농가가 58.3%로 다른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타인 농사의 수탁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25.0%), 본인농사위주(16.7%)의 순임.
- 영농규모가 가장 큰 금판지구는 본인농사 위주로 농작업을 하는 농가가 42.1%로 가장 많고, 본인농사+품앗이 농가의 공동이용 형태(34.2%), 자기농사+타인농사 수탁형(23.7%)의 순임.
- 영농규모가 가장 협소한 가현지구는 공동이용형태가 42.9%이며, 자기농사+타인농사 수탁형(35.7%), 본인농사위주(21.4%)의 순임.

표 4-7 전업농의 농기계이용현황 및 전망

구 분	독정지구	금관지구	가현지구
농기계이용형태	본인농사 만 17% 공동이용 58% 본인+수탁 25%	본인농사 만 42% 공동이용 32% 본인+수탁 24%	본인농사 만 21% 공동이용 36% 본인+수탁 36%
호당 농기계 보유대수	트랙터 0.8대 이앙기 1.3대 콤바인 0.7대	트랙터 1.4대 이앙기 1.0대 콤바인 0.8대	트랙터 1.0 이앙기 1.1 콤바인 0.6
농기계 대당 작업면적	트랙터 12.4ha 이앙기 7.3ha 콤바인 13.2ha	트랙터 13.4ha 이앙기 9.8ha 콤바인 12.1ha	트랙터 13.3ha 이앙기 7.6ha 콤바인 9.0ha
농기계이용전망	전업농 의존 50% 공동이용 38% 수탁조직 12%	전업농 의존 63% 공동이용 32% 수탁조직 11%	전업농 의존 36% 공동이용 28% 수탁조직 36%
기계이용 효율화 대책	규모확대 49% 공동이용 32% 농지집단화 19%	규모확대 55% 공동이용 9% 농지집단화 29%	규모확대 44% 공동이용 30% 농지집단화 26%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주요농기계의 보유대수 및 작업실적을 보면, 일관작업체계를 갖추고 10ha 내외의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작업규모는 농기계의 작업능률을 감안한 작업가능면적 및 손익분기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¹⁰⁾. 지역별 영농규모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영세·분산된 필지조건과 핵가족하에서의 가족경영의 작업능률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김정호, 박문호외(1998)의 농기계 기종별 작업능률과 작업가능면적, 손익분기규모를 시산한 결과에 의하면, 작업가능면적은 트랙터 30마력급(년간 15일작업, 경운기준) 18.0ha, 이앙기 승용4조(15일작업) 13.1ha 콤바인 3조(25일작업) 22.0ha임. 또, 동 기계의 손익분기규모(무보조시)는 각각 19.1ha, 7.8ha, 17.8ha로 나타났음.

- 독정지구는 농가당 보유대수가 트랙타 0.8대, 이앙기 1.3대, 콤바인 0.7대로서 각각의 대당 작업면적은 12.4ha, 7.3ha, 13.2ha임.
 - 금판지구는 농가당 보유대수가 트랙타 1.4대, 이앙기 1대, 콤바인 0.8대로서 각각의 대당 작업면적은 13.4ha, 9.8ha, 12.1ha임.
 - 가현지구는 농가당 보유대수가 트랙타 1대, 이앙기 1.1대, 콤바인 0.6대로서 각각의 대당 작업면적은 13.3ha, 7.6ha, 콤바인 9ha임.
- 관내 농작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는 독정지구와 금판지구는 소수 전업농에 대한 의존도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중산간지인 가현지구의 경우는 전업농에 대한 의존보다는 공동이용 및 수탁조직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정지구는 전업농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50%, 공동이용 37.5%, 수탁조직 12%로서 전업농에 대한 의존도가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외부조달 방식은 수탁형태 보다는 공동이용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 금판지구는 전업농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63%로서 조사지역중 전업농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외부조달방식은 공동이용 32%, 수탁조직 11%로서 독정지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가현지구는 전업농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35.7%로서 전업농의 의존도가 조사지역중 가장 낮으며, 외부조달방식은 공동이용 28%, 수탁조직 36%로서 공동이용 보다는 수탁조직에 더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 농기계이용의 효율화 대책으로는 영농규모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독정지구 48.4%, 금판지구 55.4%, 가현지구 43.5%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농지집단화, 농기계의 공동이용에 대한 의견도 일정비중을 점하고 있다.
- 규모확대 이외의 경감방향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작은 독정지구와 가현지구는 기계의 공동이용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전업농의 규모화 수준이 높은 금판지구에서는 농지집단화에 대한 대책을 선호하고 있다.

- 이상 전업농의 농기계 보유·이용실태를 종합해 보면, 개별농가는 영농 규모 5ha를 전후로 하여 농기계 일관작업체계를 갖추고 수위탁을 포함하여 10ha 전후의 농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계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어 이용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규모화를 하더라도 농지분산과 1인 오퍼레이타 체제에서는 기계작업효율 향상에 일정 한계가 있음.
 - 영농규모가 가장 큰 금판지구의 경우, 영농규모가 10ha 수준을 상회하면 노동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복수로 보유함으로써 기계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농지집단화 및 전업농가간의 협력의 바탕으로 한 기계 조작업의 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전업농의 농기계효율화의 방향은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가 진전된 평야지대에서는 농지집단화, 상대적으로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기계의 공동이용에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전업농 정책지원 실태와 효과

- 쌀 전업농의 정책지원 유형별 분포를 보면, 기계와 농지를 동시에 지원 받은 농가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대규모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기계 또는 농지만을 지원받은 농가는 중간규모 이하 계층에 분포하고 있다.

표 4-8 전업농의 영농규모별 지원유형의 분포

단위 : 호, (%)

구 분		기계+규모화	기계	규모	미지원	계
독정 지구	2ha 미만	-	-	-	-	-
	2 ~ 3ha	2	0	0	0	2
	3 ~ 5ha	4	3	1	1	9
	5 ~ 10ha	6	3	0	0	9
	10ha 이상	3	1	0	0	4
	계	15 (62.5)	7 (29.1)	1 (4.2)	1 (4.2)	24 (100.0)
금판 지구	2ha 미만	-	-	-	-	-
	2 ~ 3ha	-	-	-	-	-
	3 ~ 5ha	9	1	1	0	11
	5 ~ 10ha	14	5	1	3	23
	10ha 이상	3	1	0	0	4
	계	26 (68.4)	7 (18.4)	2 (5.3)	3 (7.9)	38 (100.0)
가현 지구	2ha 미만	1	3	0	1	5
	2 ~ 3ha	1	0	0	1	2
	3 ~ 5ha	3	0	0	0	3
	5 ~ 10ha	2	1	0	0	3
	10ha 이상	0	0	1	0	1
	계	7 (50.0)	4 (28.6)	1 (7.1)	2 (14.3)	14 (100.0)

- 지역별로 보면, 기계와 농지를 동시에 지원받은 농가는 독정지구 62.5%, 금판지구 68.4%, 가현지구 50.0%, 기계만을 지원받은 농가는 독정지구 29.1%, 금판지구 18.4%, 가현지구 28.6%임.
- 기계만을 지원받은 농가는 독정지구와 금판지구에서는 5-10ha, 가현지구에서는 2ha미만의 농가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음.

표 4-9 쌀 전업농 육성자금의 지원내역

단위 : 만원, (%)

구분	기계	농지			합계	
		구입	임차	계		
독정 지구	2ha 미만	-	-	-	-	
	2 ~ 3ha	1,955 (23.1)	5,490	1,040	6,530 (76.9)	8,485 (100.0)
	3 ~ 5ha	1,967 (26.9)	4,443	908	5,351 (73.1)	7,318 (100.0)
	5 ~ 10ha	2,025 (15.6)	10,518	446	10,964 (84.4)	12,989 (100.0)
	10ha 이상	2,600 (17.4)	11,920	442	12,362 (82.6)	14,962 (100.0)
	평균	2,133 (19.5)	8,090	709	8,799 (80.5)	10,932 (100.0)
금판 지구	2ha 미만	-	-	-	-	
	2 ~ 3ha	-	-	-	-	
	3 ~ 5ha	1,249 (28.0)	3,209	0	3,209 (72.0)	4,458 (100.0)
	5 ~ 10ha	2,105 (32.9)	3,931	356	4,287 (67.1)	6,392 (100.0)
	10ha 이상	2,545 (42.5)	2,792	651	3,443 (57.5)	5,988 (100.0)
	평균	1,966 (35.0)	3,310	335	3,645 (65.0)	5,611 (100.0)
가현 지구	2ha 미만	3,110 (80.7)	744	0	744 (19.3)	3,854 (100.0)
	2 ~ 3ha	1,554 (32.1)	2,635	648	3,283 (67.9)	4,837 (100.0)
	3 ~ 5ha	2,213 (67.3)	1,073	0	1,073 (32.7)	3,286 (100.0)
	5 ~ 10ha	2,080 (29.7)	3,810	1,120	4,930 (70.3)	7,010 (100.0)
	10ha 이상	0 (0.0)	740	7,320	8,060 (100.0)	8,060 (100.0)
	평균	1,791 (29.6)	2,447	1,817	4,264 (70.4)	6,055 (100.0)

○ 전업농에 대한 정책지원액은 독정지구 10,932만원, 금판지구 5,611만원, 가현지구 5,672만원으로 농지가격이 비싼 독정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정도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원액의 차이는 농지자금, 그중에서도 구입자금에서 발생하고 있다.

- 지역별 지원액의 구성내역을 보면, 지원액이 가장 많은 독정지구는 농지자금이 80.5%, 기계자금이 19.5%로서 농지자금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지구입에 따른 지원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음.

- 고지가의 영향으로 구입자금의 지원은 자금부담능력이 있는 대농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임차자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계자금은 규모간 편차가 적음.
 - 전업농의 평균영농규모가 가장 큰 금판지구는 농지자금이 65.0%, 기계자금이 35.0%로서 농기계자금의 비중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며, 농지자금은 주로 구입자금에 지원되었고, 구입자금 지원액의 규모간 편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계자금은 규모가 클수록 지원액이 많은 점이 특징임.
 - 복합영농을 하고있는 가현지구는 농지자금이 70.4%, 기계자금이 29.6%로서 농지자금의 비중이 높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차자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2ha미만의 영세규모 계층의 기계지원액이 많은 점이 두드러지고 있음.
- 자금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농지규모화 지원에 따른 영농규모의 증감효과를 보면, 지대별로는 평야지대에 위치한 금판지구에서 효과가 가장 크며, 도시근교인 독정지구에서 효과가 가장 낮고, 규모계층별로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자력확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지대별로는 독정지구는 정책지원 1.42ha에 자력증가 1.36ha, 금판지구는 정책지원 1.08ha, 자력증가 1.95ha, 가현지구는 정책지원 1.23ha, 자력증가 1.34ha로 각각 나타났음.
 - 규모별로는 농업수입을 수도작에 거의 의존하는 독정지구와 금판지구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지원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집약적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영농지대인 가현지구에서는 중·하위계층에서도 지원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영농규모화효과의 구성내역을 보면, 정책지원은 구입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모화의 효과는 구입효과보다는 임차효과에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가현지구에서는 정책지원과 지원효과 양면에서 임

차지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 쌀 전업농에 대한 정책지원의 실태와 효과를 종합해 보면, 정책지원은 농지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지자금은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층에서 수요가 많으며, 특히 자산가치의 증식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근교 평야지대에서 지원이 많은 편이다.
- 이와 같이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계층에 농지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농의 부담능력이 크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액(지원상한 평당 2만7천원)이 지가수준(평당 4-5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당액의 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농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큰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대규모 계층은 자력에 의한 규모확대도 활발하여 투자유발효과 면에서도 다른 규모계층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그러나 현실지가와 수익지가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농지구입지원은 영농의 규모화 측면보다는 대농의 자산증식수단으로 오도될 우려가 있음. 도시근교지역인 독정지구에서 농지자금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의 목표가 이미 규모 목표를 달성한 농가보다 미달하는 농가를 목표로 유도하는 데 있는 만큼, 자본력이 열악한 성장농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입지원보다는 임대차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은 현실지가와 수익지가간의 격차가 낮은 저 지가지역, 지원대상농가의 소유규모의 상한 설정등을 통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4-10 영농규모별 규모 증감효과

단위 : ha

구 분		현 경영규모 (A)			정책지원 전 경영규모(B)			정책지원규모 (C)			자력증가규모 (A-B-C)		
		소유	임차	계	소유	임차	계	구입	임차	계	구입	임차	계
독정지구	2ha 미만	-	-	-	-	-	-	-	-	-	-	-	-
	2 ~ 3ha	1.30	1.10	2.40	0.65	0.52	1.17	0.65	0.53	1.18	0.00	0.05	0.05
	3 ~ 5ha	2.64	1.13	3.77	1.50	0.37	1.87	0.63	0.50	1.13	0.51	0.26	0.77
	5 ~ 10ha	3.60	3.00	6.60	1.67	2.28	3.95	1.27	0.23	1.50	0.66	0.49	1.15
	10ha 이상	4.90	5.43	10.33	1.69	2.77	4.46	1.83	0.23	2.06	1.38	2.43	3.81
	평균	3.27	2.55	5.82	1.53	1.51	3.04	1.07	0.35	1.42	0.67	0.69	1.36
금관지구	2ha 미만	-	-	-	-	-	-	-	-	-	-	-	-
	2 ~ 3ha	-	-	-	-	-	-	-	-	-	-	-	-
	3 ~ 5ha	2.49	1.83	4.32	1.36	1.28	2.64	0.85	0.00	0.85	0.28	0.55	0.83
	5 ~ 10ha	3.99	2.98	6.97	1.89	1.59	3.48	0.86	0.24	1.10	1.24	1.15	2.39
	10ha 이상	2.50	8.40	10.90	1.04	6.09	7.13	0.61	0.63	1.24	0.85	1.68	2.53
	평균	3.40	3.22	6.62	1.61	1.98	3.59	0.87	0.21	1.08	0.92	1.03	1.95
가현지구	2ha 미만	1.30	0.06	1.36	0.82	0.02	0.84	0.16	0.00	0.16	0.32	0.04	0.36
	2 ~ 3ha	1.40	1.15	2.55	0.05	0.60	0.65	0.70	0.40	1.10	0.65	0.15	0.80
	3 ~ 5ha	2.03	1.50	3.53	1.80	0.27	2.07	0.23	0.00	0.23	0.00	1.23	1.23
	5 ~ 10ha	4.10	2.43	6.53	1.43	1.08	2.51	0.30	0.75	1.05	2.37	0.60	2.97
	10ha 이상	2.40	8.70	11.10	1.60	1.60	3.20	0.16	4.90	5.06	0.64	2.20	2.84
	평균	2.15	2.41	4.56	1.34	0.65	1.99	0.38	0.85	1.23	0.43	0.91	1.34

3.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와 경영의향

3.1. 설립동향

- 농업회사법인은 1990년 제도발족 당시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작업 수·위탁조직으로 육성되었으나 1994년 12월 새로 제정된 농지법에서 농지소유자격이 주어지면서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법인경영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표 4-11 사례지구 농업회사법인의 연도별 설립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화성군	1	1	1	5	1	3	2	0	14 (25.9)
부안군	0	1	3	6	5	4	0	0	19 (35.2)
합천군	0	2	2	6	3	2	3	3	21 (38.9)
계	1 (1.9)	4 (7.4)	6 (11.1)	17 (31.5)	9 (16.7)	9 (16.7)	5 (9.3)	3 (5.4)	54 (100.0)

- 사례지구의 농업회사법인의 연도별 설립현황을 보면, 총 54개 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연도별로는 1993년에 설립된 법인이 17개소(31.5%)로서 가장 많으며, 1996년 이후 부터는 설립이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지대별로 보면, 평야지대인 부안군의 경우 1996년 이후 설립된 법인이 전무한 반면, 중산간 평야지대인 합천군의 경우엔 최근 년도에도 매년 신규법인이 설립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근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업농의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업농층이 다른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고 복합작목에 치중하고 있어 농기계작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출자자수는 설립당시 6.4명, 현재 5.5명으로 설립당시에 비하여 출자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화성이 설립당시 7인에서 현재 5.5인, 부안이 설립당시 7.1인에서 6.2인, 합천이 5.6인에서 4.9인으로 나타났음. 현 출자자수는 부안군이 가장 많으며, 출자자 감소율은 화성군에서 가장 큼.
 - 출자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추가출자과정에서 자본조달이 어렵거나 회사경

영보다는 개별경영을 중시하는 계층이 이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임. 추가출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군에서 이탈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이러한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2 출자자 및 출자금 내역

단위 : 명, 만원

구 분		출자자			출자금		
		농업인	비농업인	계	현금	현물(평가액)	계
화성군	설립시	6.9	0.1	7.0	3,677	2,732	6,409
	현재(98년말)	5.4	0.1	5.5	1,547	12,815	14,362
부안군	설립시	7.1	0	7.1	1,021	8,570	9,591
	현재(98년말)	6.2	0	6.2	1,137	7,739	8,876
합천군	설립시	5.6	0	5.6	3,741	1,191	4,932
	현재(98년말)	4.9	0	4.9	305	5,414	5,719
계(평균)	설립시	6.4	0	6.4	2,768	4,187	6,955
	현재(98년말)	5.5	0	5.5	920	8,151	9,071

- 출자금 현황을 보면, 3개지역의 평균 출자액은 9,071만원, 그중 현물출자액이 8,151만원으로 89.9%를 점하고 있으며, 설립시 대비 출자금의 증가율은 30.4%로 나타났다.
- 설립당시에는 현금출자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로 현물출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현금출자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금출자액으로 고정자산을 구입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1998년 현재 출자액의 규모는 화성이 14,362만원으로 가장 크며, 합천군이 5,719만원으로 가장 적음. 화성군의 경우는 설립이후 추가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부안군은 자본금이 설립당시에 비하여 출자액이 감소하고 있음.

- 정부지원자금액은 평균 12,283만원이며, 보조 5,374만원, 융자 6,909만원, 자부담 2,05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자금총액 및 자부담액은 화성군이 각각 13,111만원, 3,128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조액은 부안군이 6,248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정부지원자금 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정부 지원금(A+B)	보조(A)		융자(B)	자부담
		국비	지방비		
화성군	13,111	2,352	3,246	7,513	3,128
부안군	11,898	3,150	3,098	5,650	1,744
합천군	12,077	2,093	2,339	7,645	1,618
평 균	12,283	2,532	2,842	6,909	2,054

3.2. 사업추진현황

- 전체 법인의 63.3%가 영농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에는 30.9%가 참여하고 있고 가공·유통부문에는 화성군이 3개소, 합천군이 1개소가 각각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성군은 대부분의 법인이 영농대행+농업생산의 사업형태이며, 그 중에서도 3개 법인은 가공·유통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수직통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4 법인 사업 내역

단위 : 개, (%)

구 분	농업생산	가공사업	유통사업	영농대행	기타	계
화성군	11	1	2	11	0	25 (36.8)
부안군	7	0	0	15	0	22 (32.4)
합천군	3	1	0	17	0	21 (30.8)
계	19 (30.9)	2 (2.9)	2 (2.9)	43 (63.3)	0 (0.0)	68 (100.0)

- 부안군은 영농대행+농업생산형과 영농대행형이 혼재되어 있음.
 - 합천군은 영농대행형이 중심이며,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은 소수임.
- 부문별 사업추진 실적의 추이를 보면, 생산부문은 현상유지, 가공·유통 부문은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영농대행부문은 축소경향이 강하다.
- 지역별로 보면, 화성은 가공·유통부문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영농대행부문은 사업축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안은 생산부문은 현상유지적인 경향, 영농대행부문은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합천은 영농대행부문에서 현상유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4-15 사업부문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 호(%)

지 역	구 분	확 대	현상유지	축 소	계
화성군	생산	-	1	-	1
	가공·유통	2	-	-	2
	영농대행	-	-	5	5
	계	2	1	5	8
부안군	생산	-	2	-	2
	가공·유통	-	-	-	0
	영농대행	-	3	5	8
	계	-	5	5	10
합천군	생산	-	1	1	2
	가공·유통	-	1	-	1
	영농대행	1	6	2	9
	계	1	8	3	12
합 계	생산	-	4	1	5
	가공·유통	2	1	-	3
	영농대행	1	9	12	22
	계	3 (10.0)	14 (46.7)	13 (43.3)	30 (100.0)

- 농업회사법인의 99년 운영수익은 화성 3,800만원, 부안 813만원, 합천 1,389만원으로 화성군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부안군은 수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운영수익의 증감율을 보면, 전 지역에서 수익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농작업 수탁면적의 감소등으로 사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러나 농업회사법인 사원의 수탁면적은 96년 8.1ha, 97년 8.9ha, 98년 10.0ha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탁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출자자들이 회사경영의 보다는 개별경영의 보완에 치중하고 있는 점도 사업성과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16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실적

단위 : 만원, %

지 역	구 분	수 입 (A)	비 용 (B)	수 익 (A-B)
화성군	98년	20,763	16,623	4,140
	99년	20,400	16,600	3,800
	증감율	-1.8	-0.1	-8.2
부안군	98년	4,041	3,168	873
	99년	3,734	2,921	813
	증감율	-7.6	-7.8	-6.9
합천군	98년	6,690	5,009	1,681
	99년	6,911	5,522	1,389
	증감율	3.3	10.2	-17.4

표 4-17 주요 논작업 수탁면적의 추이

단위 : ha

구 분	전작업 수탁		경운	정지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사원	농가							
98년	10.0	10.6	25.0	25.5	10.2	19.6	6.7	33.0	15.9
97년	8.9	13.3	31.3	31.3	11.1	23.1	5.8	37.3	15.2
96년	8.1	13.8	31.4	30.5	11.4	24.5	6.0	44.2	16.3
95년	17.5		45.1		12.8	27.4	7.3	42.6	17.9
98년/97년(%)	112.2	80.0	80.0	81.4	91.5	85.0	115.5	88.4	104.3
97년/96년(%)	109.9	96.4	99.7	102.6	97.4	94.3	96.7	84.4	93.3
96년/95년(%)	79.1		67.7		88.9	89.3	82.5	103.8	91.2

주 : 96년/95년에서 전작업 수탁은 사원을 제외한 농가수탁, 경운정지는 정지기준임
 자료 : 농진청, “농촌지도사업보고서” 1998, 농촌진흥청

3.4. 법인경영의 성과와 향후의향

- 조합참여자의 법인경영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비용절감 40.0%, 소득향상 25.7%, 복합부문의 도입 17.1%, 규모확대 11.4%의 순으로서 그동안의 농업회사법인의 성과는 주로 조직적인 농기계작업 수위탁을 통한 농기계비용의 절감과 개별경영의 소득보완에 있었으며, 영농규모화, 복합화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업실적이 가장 저조한 부안군의 경우 참여자의 대부분이 비용절감을 사업성으로 들고있어 농기계의 공동이용의 범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추가출자를 통하여 가공·유통부문의 사업참여가 활발한 화성, 전업농이 상대적으로 위약한 합천에서는 규모확대, 복합부문의 도입등 회사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8 법인경영의 성과

단위 : 개소, (%)

구 분	소득향상	규모확대	복합부문도입	비용절감	후계자 확보	계
화성군	2	-	2	2	1	7
부안군	2	-	1	7	-	10
합천군	5	4	3	5	1	18
계	9 (25.7)	4 (11.4)	6 (17.1)	14 (40.0)	2 (5.7)	35 (100.0)

표 4-1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과제

단위 : 개소, (%)

구 분	수위탁 규모확대	임차경영 확대	가공·판매 사업 확대	타 작목 도입	계
화성군	1	4	1	1	7
부안군	1	6	1	-	8
합천군	1	7	1	5	14
계	3 (10.3)	17 (58.7)	3 (10.3)	6 (20.7)	29 (100.0)

○ 법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과제로서는 임차경영의 확대 58.7%, 타작목의 도입 20.7%, 수위탁의 규모확대와 가공·판매사업의 도입이 각각 10.3%로서 농작업 수탁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차경영의 확대를 우선적인 과제로 들고있다.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전업농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안에서 임차경영의 확대를 통한 대규모 수도작 경영체로서 발전을 꾀하고 있음.
- 전업농층이 넓고, 다양한 복합작목이 도입되고 있는 합천에서는 임차경영의 확대와 함께 타 작목의 도입의사도 많음.
- 가공·판매사업으로의 진출은 농업인의 소규모 자본, 전문인력의 미흡으로 현 상황에서는 소수의 법인에 국한되고 있음.

표 4-20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

단위 : 개소, (%)

구 분	조합원의 추가모집	조합원의 추가출자	비농민의 참여유도	수익금의 적립	정부의 지원	계
화성군	-	5	-	1	-	6
부안군	-	4	-	1	3	8
합천군	1	8	3	-	1	13
계	1 (3.7)	17 (63.0)	3 (11.1)	2 (7.4)	4 (14.8)	27 (100.0)

- 자본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 조합원의 추가출자 가 63.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어 농업회사법인이 자본 결합체보다는 인적결합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그 외에는 정부의 지원 14.8%, 비 농민의 참여유도 11.1%의 순이며, 조합원의 추가모집에는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 경영성과가 양호하고 자본력을 갖춘 화성군의 농업법인은 조합원의 추가출자 내지는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자본확충을 선호하고 있음.
 - 경영성과가 가장 부진한 부안군은 조합원의 추가출자 외에 정부의 자금지원, 복합부문의 도입을 꾀하고 있는 합천군에는 비 농민의 자본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음.
- 법인경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는 규모확대를 위한 과도적인 조직 54.5%, 개별경영의 보완조직 36.4%, 개별경영과 별개의 기업형태 9.1%로서 규모확대를 위한 협업체, 개별경영의 소득보완을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개별경영과 별개의 기업형태라는 인식을 하고있는 사업체는 가공·유통부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의 일부법인에 국한되고 있음.
- 쌀 농업법인으로서 향후전망에 대하여는 위탁영농의 대행조직, 대규모수도작경영체가 각각 36.4%,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복합사업체가 27.2%로 나타났다.

표 4-21 농업법인의 역할과 기능

단위 : 개소, (%)

구 분	개별경영의 보완적인 조직	규모확대를 위한 과도적인 조직	별개의 기업형태	계
화성군	2	1	2	5
부안군	3	5	-	8
합천군	3	6	-	9
계	8 (36.4)	12 (54.5)	2 (9.1)	22 (100.0)

- 지역별로는 화성은 복합사업체, 부안은 대규모 수도작경영체, 합천은 위탁영농 대행조직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 실태를 종합하면, 농업회사법인은 당초 영농서비스조직으로 육성되었으나 농기계 보급이 증가되어 수위탁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농업생산형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농가만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적 성격의 협업체로서 사업규모면에서도 영세한 실정이다.
- 농업생산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판매부문의 진출은 참여자의 전문성, 자본의 제약으로 도시근교지역의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사례임.
- 따라서 현재의 농업회사법인의 다수는 농업회사법인이라 하기보다는 영농조합법인의 특성이 농후하므로 조합법인의 차원에서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조합법인의 특성을 지닌 위탁영농대행조직이나 협업체의 육성은 지역의 전업농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지원도 전업농 육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 수도작 부문에 있어서 가공·판매부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합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전문성, 자본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제 5 장

외국의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정책의 시사점

1. 일본의 농업 경영체 육성정책과 추진체계

1.1. 일본의 신농정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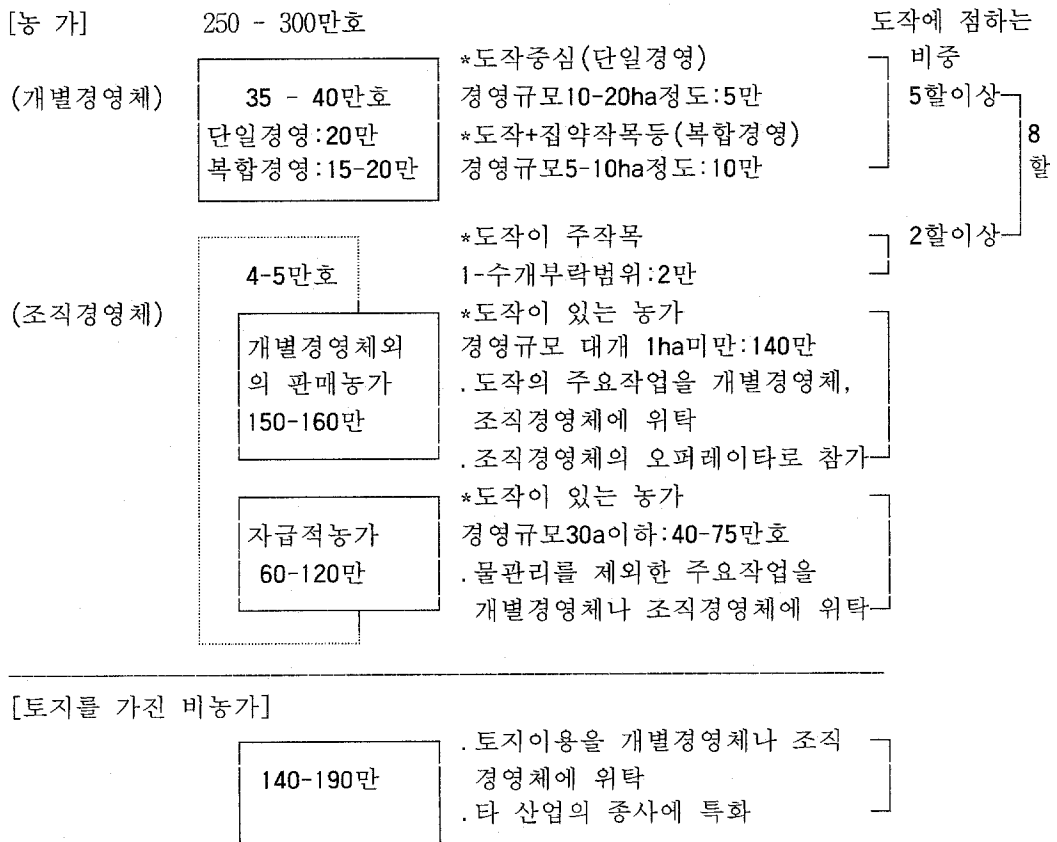
- 1992년 일본정부는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 개별 경영체의 육성과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지역농업의 후계자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추진법으로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소위 “신농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신농정의 경영구조정책은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 할만한 매력과 가치가 있는 향후 10년 후의 경영체 상을 제시하는 한편, 개인의 의욕을 중시하고, 자주성, 창의·노력의 발휘와 자기책임의 확립, 생산·유통에 있어서 규제와 보호의 완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개별 경영체를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역후계자로 육성함으로써 개별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이 지역농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정합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 여기서 지역담당자(擔い手)란 자신, 자기의 가계등 개별의 경제단위를 뛰어넘어 지역농업의 생산기능, 국토·환경보전기능등 지역사회 및 지역자원의 담당자라는 의미로서 농업경영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 및 사회적 기능의 역할까지도 부여하고 있음.

- 신정책은 이러한 육성목표에 기초하여 타산업종사자와 손색이 없는 생애소득을 확보하고 농업생산의 대종을 담당하는 생산주체로서 개별경영체 35-40만, 조직경영체 4-5만의 구체적인 육성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5-1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 및 경영의 모습



1.2. 경영기반강화촉진법과 시책의 추진체계

- 신 정책에서는 경영감각이 우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에게 농지집적과 경영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용지이용증진법의 대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법률을 일괄적으로 크게 개정하고 각종 사업의 창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경영정책의 사업추진법으로서 “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하였다.

표 5-1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의 관련시책의 체계와 내용

목 표	과 계	시 책	내 용
경영감각이 우수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의 육성	지역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체계의 정비	○시정촌기본구상의 조기실현 지원	-기본구상실현활동추진(관계단체기관이 시정촌기본구상의 조기실현을 위한 활동을 각각 역할분담하여 추진)
	계획적인 경영개선	○경영개선계획 인정과 경영개선의 추진	-경영개선을 추진하는 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제도의 추진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 받은 경영체에 대하여 시책의 집중 -경영의 기초적 조건정비
	바람직한 경영체로 유도	○법인화의 추진과 경영체질의 강화	-농업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개별상담활동, 연수회 등의 실시 -법인의 자기자본 충실과 규모확대 -세계면에서의 법인경영 지원
		○경영지도의 강화	-농업경영개선계획등 작성 지원 -경영지도체계의 정비와 지도자의 육성 -지역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지도 -농협체통의 종합사업기능을 활용한 법인경영의 체질강화 -바람직한 경영체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등의 도입·실증
		○지역레벨의 농업경영체확립	-경영체, 겸업농가 등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작업분담에 의한 지역농업경영의 확립 -겸업농가가 집락농노조직에 기간농작업의 위탁 촉진 -집락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 의견조정활동 촉진
	경영체를 담당 인재의 확보	○신규취농 등 인재의 확보	-농업법인등에의 취직의 원활화와 농업경영을 담당할 인재의 확보 육성 -청년농업자의 육성확보대책등의 충실강화
		○농촌여성대책의 추진	-파트너쉽 농업의 추진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유성해야 할 농업경영으로 농지이용집적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생산기반의 정비등 -환지와 이용권 설정의 일체적 추진 -음가에 의한 경영체로의 농지이용집적
	농업경영의 안정	○농업경영의 안정	-자작지의 유지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한 농업자의 경영안정 및 부채경감 -중산간지역의 농업경영의 개선·안정 강화 -농업자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공제제도의 활용
	통계정보의 정비	○농업경영통계조사의 개선합리화	-조사에 대한 협력 촉진 및 조사결과의 경영분석에 활용

1.2.1 경영기반강화를 위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제도의 창설

- 정부의 경영체 육성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의 인정제도”를 창설하여, 계획제도로서의 발본적 체제 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는 농업자가 정부의 육성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현단계에서의 기본방침, 시정촌단계에서의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스스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그 계획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임.

- 기본구상의 경영지표 및 인정농업자의 경영계획에서는 경영 대책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규모 집적목표에 덧붙혀 생산방식·경영관리의 합리화, 농업종사의 형태 등, 의무적 기재사항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설정기준은 기본구상과의 정합성, 계획 달성 가능성의 확실성, 농지의 효율적·종합적이용(농지이용의 집단화·효율화, 생산조정예의 대응을 포함)의 세가지 점임.

- 기본구상이 그대로 인정농업자의 선정기준이 되고, 그러한 권한이 시정촌의 중추에서 구상되고 있는 점에서 “지역화 된 구조정책”으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 농업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은 각현의 실태에 따라 다양함.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 조건을 고려하여 1현당 평균 4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농유형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경영형태는 단일경영만이 아니고 수도작과 다른 작물을 조합시킨 복합경영 및 지역특산농작물을 주체로 한 유형도 볼 수 있음.
 - 그리고 기본구상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영체를 폭넓게 육

성시킴을 위하여 대규모 토지이용형 단일경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3-5ha의 중규모 복합경영 과 집약적인 시설원예, 축산 등, 작목 및 경영형태별로 육성해야 할 경영체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생산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에서는 대규모 토지이용형 경영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의 특산물을 조합시킨 복합경영 및 고부가가치농업에 의하여 농업소득의 향상을 도모하는 영농유형이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음.

1.2.2 인정농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시책

- 인정농업자의 지원으로서 첫째, 금융면에서 부기기장을 조건으로 하는 경영기반강화촉진자금의 창설, 둘째, 일정의 규모확대를 조건으로 하는 세제상(청색신고)의 우대조치로서의 기계시설의 할증상각제도 및 농용지이용집적준비금제도 세제, 농지이용집적의 우선적 지원의 명확화, 네째, 경영개선 지원체계의 확립을 주요 추진시책으로 하고 있다.

① 금융상의 지원

- 인정농업자의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자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경영체육성종합융자제도(슈퍼종합자금제도)를 창설하였다.
- 장기금융인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L자금)의 외에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슈퍼-S자금)이 설치되어있다. 대출대상, 금리, 대출한도액 등 대출조건 면에서 종래의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농업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② 세제상의 지원

- 인정농업자가 농업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경영규모를 50%이상(축사에 대하여는 건평 20%이상)확대한 경우에는 기계, 시설, 생물의 감가상각비를 20%까지 할증상각하여 필요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또 전문경영

체의 확보가 어렵고 지역의 농지의 유효이용 및 적절한 보전이 어려운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농업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여 농용지이용집적준비금제도라는 세제상의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 이 준비금제도는 특정농업법인이 특정농용지이용규정에 따라 농지이용개선탄체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리거나 농작업을 수탁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을 준비금으로서, 농업수입의 10% 이하의 금액을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장부상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함. 또 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압축기장과 압축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토록 하고있음.

③ 농업위원회 등에 의한 농지이용집적의 지원

- 농업위원회등은 인정농업자로 부터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이용권설정의 신청을 받아, 인정농업자에게 농지가 집적되도록 농지이용관계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집락단계에 있어서 농가의 의향 파악, 농지유동화추진원의 활동 강화 등 집락기능을 활용하여 철저한 농지 이용조정 활동을 추진하고,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지의 이용집적이 타 지역에 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촉진비를 교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시정촌 농업공사등이 실시하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 있어서도 규모 축소농가, 이농농가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 인정농업자 등에 매도 또는 대부기능을 확충·강화하고 있음.
 - 매매사업에 대하여는 농업담당자 부담경감조치로서 일시 대부후 매각 방식을 도입하고, 신규사업으로서 이농희망자 소유농지 등의 신탁의 인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농용지 등의 현물출자,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중간보유하는 농지를 활용한 신규취농자에 대한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지집단화시책으로서 농업담당자에 대한 단지적 농지집적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집합적이용권설정사업이 신설되었다.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의 특별사업으로서 실시되며 “집락단위관리형”과 “집합적이용권등 조정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전자는 농용지이용개선단체 지구의 농지를 자작지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전부 공사가 빌려서 그것을 농업담당자에게 단지화하여 재분배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그것을 임대차유동농지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소위 “경영체간의 차지교환”을 사업화 한 것임.
 - 이 사업은 합리화사업의 중간보유·재분배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단지화를 피하는 경우에 비하여 차지기간의 통일, 차지조건의 조정, 농가간의 집적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적기관이 개입함으로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있음.

④ 인정농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체계 확립

- 정부보조사업으로 인정농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 전국,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단계별에 걸쳐 경영개선지원센타를 설치하였다.
 - 실시주체는 전국단위에서는 전국농업회의소 도도부현단계에서는 현 농업회의 및 민법법인, 시정촌단계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협, 공사등으로 되어 있음.
 - 주요사업의 내용은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피하는 자 및 인정농업자에 대하여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인정농업자제도의 설명회개최, 경영개선계획의 작성 및 달성을 위한 연수회, 인정농업자의 능력개발활동으로서 관련이종업간의 교류, 정보수집 제공활동을 하고 있음
 - 특히, 인정농업자의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 세리사 등의 전문가를 도도부현 단계에 등록시켜 인정농업자의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표 5-2 농업생산법인의 육성대책 관련 시책

목 표	조 치 구 분	내 용
경영감각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경영체 육성	농업생산법인의 사업요건 및 구성원 요건의 완화	농업생산법인의 노동력의 주년소화, 재무기반의 강화 및 폭넓은 인재활용을 위하여 사업 및 구성원 요건의 완화(생산법인의 요건 참조)
	농업생산법인 육성·지도 사업의 실시	[실시주체]도도부현 ○농업생산법인 다운 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도도부현,시정촌 및 관계기관의 지도체계 정비(추진체계정비사업) [실시주체]도도부현 농업회의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 농업자 및 생산조직에 대하여 지도활동 및 농업생산법인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법인육성사업)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제도의 창설	인정농업자제도
육성해야할 경영에의 농용지이용의 집적	농업경영기반촉진사업의 실시 및 농지보유합리화법인 활동의 확충	[실시주체]시정촌, 인정농업자제도 참조 *전문경영체가 부족하거나 그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특정농업생산법인'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후계자 확보

⑤ 농업생산법인을 중시

- 인정농업자의 정립방향으로서 농업생산법인을 중시하고, 그 촉진방향으로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규제완화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거래신용력등 법인경영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법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요건으로서 종전의 농업생산 및 소유농기계의 잉여노동력을 이용한 농작업수위탁 중심의 부대업무에 덧붙혀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작업의 수탁등 농업과 관련한 사업 까지로 사업의 영역이 확충되었음.
- 두 번째는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였음.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력에 의존한 농업경영은 농업자의 협동조직이라는 농사조합법인의 성격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제도 발족당시에는 비조합원의 경영 참가를 1/5이하로 엄격히 규제하였으나, 1970년에는 1/2, 이번 개정에서는 외부

로부터의 법인 전문가 확보 및 생산된 농산물의 주요고객, 농작업의 위탁자등 거래 상대방의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4/5로 크게 완화 하였음.

- 또, 법인의 자본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협등이 자본참여를 통하여 경영재건을 추구하거나, 신규 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음.
- 생산법인의 경영 지원을 위하여 개별경영과 함께 인정농업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생산법인의 자기자본 충실과 경영규모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생산법인출자육성사업, 농업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생산법인을 특정농업생산법인으로 지정하고 부가적인 지원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⑥ 청년농업자의 육성

○ 1995년 청년농업자 육성대책에서 드러난 신규취농자 육성대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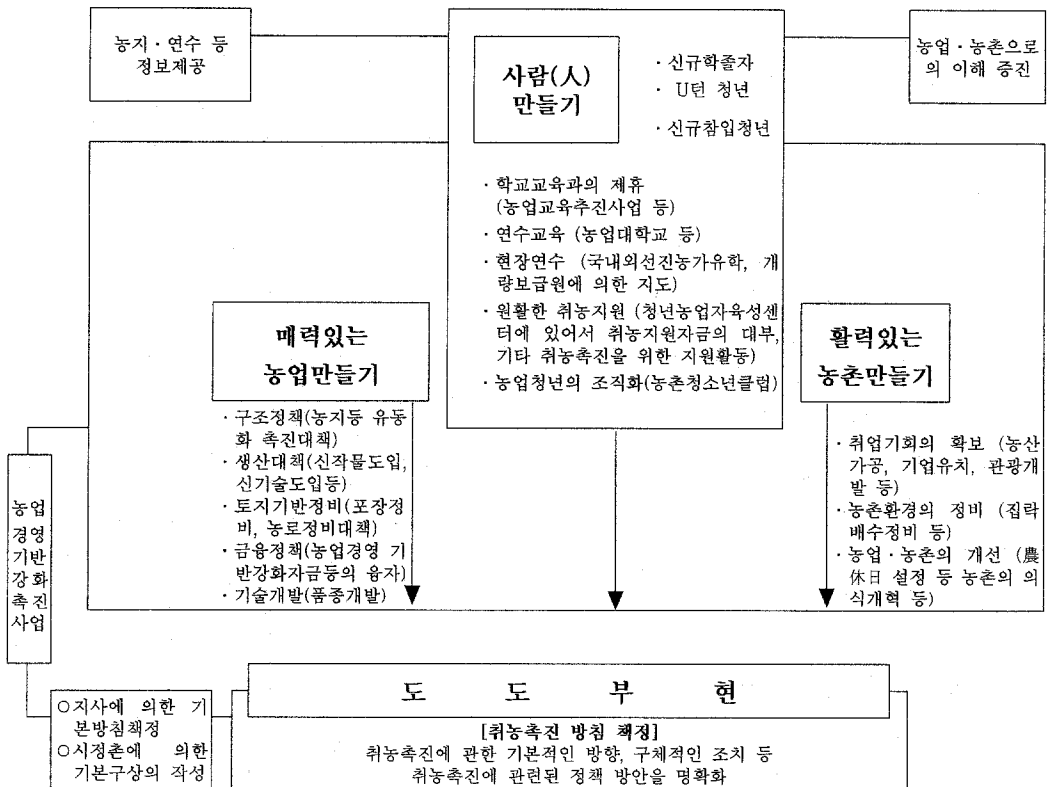
- 첫째, 농가자녀만이 아니고 비 농가자녀가 신규 참여하는 경우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취농경로가 신규학출자, U턴취농자, 신규참여자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유형별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셋째, 과거에는 취농후 대책이 중심이었으나 취농단계를 취농전, 취농시, 취농후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즉, 취농지향기에서 취농의사결정기를 거쳐 취농후 청년농업자활동기 까지를 대책에 포함시킴.
- 넷째, 취농형태의 다양화를 감안, 자가취농, 리-스농장 취농, 조직경영체에 취직취농, 조직경영체에 연수취농등으로 구분 각각의 대책 추진.
- 다섯째, 대책의 주된 수단은 제도자금 및 취농정보시스템임.

○ 도도부현단위 에서는 「청년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초하여, 「청년농업자 육성센터」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취농자의 발굴, 취농 희망자의 지원, 취농 상담활동, 학교교육 제휴, 취농 장려금, 취농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자의 자질향상 대책사업으로서 국내외 선지지 유학 등 각종연수, 청년농업자의 활동촉진, 다른 업종과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배우자 대책사업으로서 도시청년과의 교류, 결혼상담원의 설치, 결혼기념품의 증정 등이 있으며, 기타 사업으로서 국제교류사업, 조사정보활동, 홍보활동이 있음.

그림 5-2 도도부현의 청년농업자 육성체계



출처 : 농수성농산원예국보급교육과 청년농업자대책실 「청년농업자육성 확보대책 관계자료」, 1995. 3.

표 5-3 청년농업자 등의 육성확보대책의 체계

구 분	예산·보조 등	금융조치 등
취농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추진사업 등 (소·중·고생에 대한 농업체험학습의 추진, 농업복지체의 장성 등) ○ 농업대학교의 시설정비 및 운영 청년농업자의 양성을 위한 실천적 연수 교육 및 이를 위한 시설정비, 신규취농자로부터 중핵적 담당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발전단계에 대응한 생애교육 ○ II U턴 취농촉진대책사업 현재의 직업에 취업한 상태로 취농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종합적인 습득을 실시하는「재직자취농준비교」의 설치운영 ○ 신규취농 가이드사업, 청년농업자 육성 확보추진사업 취농啓發운동, 취농상담활동, 취농관련정보의 제공 등 지원체제정비 ○ 지역축산재편대책사업 (기술강습, 실기연수목장의 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농지원자금의 창설 인정취농자에 대한 무이자자금의 대부 · 취농연수자금(농업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 · 취농준비자금(취농지 조사, 주거 이전 등 취농에 따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종형 리스농장, 지역축산재편대책사업 이농농가 등 농장의 리스방식에 의한 담당자, 신규취농자에게의 원활한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개시자금(농업개발자금)의 특례 인정취농자에 대한 대부한도액(1,800→2,300만엔) 및 상환기간(거치기간)의 특례를 조치 ○ 농지 등 취득자금(공고자금) 신규취농자에 대한 3.0% 자금적용요건(경영면적요건)의 완화
취농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보유 합리화 촉진 특별사업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경영체(신규취농자를 포함)에게 일정기간 대부 후, 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농 원활화 자금(근대화 자금) (신규취농자에 대한 初度的 경영자금의 대부)
취농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지도 등 · 보급센터에 의한 취농정보의 제공, 상담 · 보급원, 전문기술원에 의한 기술·경영 방법 등의 개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경영기반강화자금(공고자금) 인정농업자(신규취농자를 포함)에 대해, 경영개선 등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육성을 위한 각종보조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인정농업자(신규취농자를 포함)에 대해, 경영개선 등을 행하는데 필요한 저리운전자금의 융자 ○ 할증상각 인정농업자(신규취농자 또는 일정의 규모확대를 한 자가 소유하는 기계 등에 대해 5년간 할증상각)

출처 : 농수성농산원에국보급교육과 청년농업자대책실「청년농업자육성확보대책 관계자료」, 1995. 3.

2. 프랑스의 농업경영 계승과 신규취농자 대책

2.1. 가족경영계승의 기본적 패턴

- 프랑스의 가족경영의 기본적 패턴은 취농→자립→계승→은퇴→상속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경영의 계승과 상속이 분리되고 있는 점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농업자로서의 취농·연수기간(SC)
 - 이 기간 중, 가족경영의 계승 예정자는 작업관리나 경영영리에 대부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보조 노동자로서 농작업에 종사함
 - EC제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의 20대 전반에서 30대 전반까지가 이 기간에 해당
 - 프랑스 ; 20대에 농업경영주로서 자립(IS)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5-4 EC에 있어서 가족경영계승의 기본적 패턴

연 령	계승의 구분	내 용
20대 전반	취농 SC(Socialization)	재학 중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 줌 가족보조자로서 농업에 종사
	↓	
30대 후반 40대 전반	자립 IS(Installation)	경영주로서 자립
	↓	
50대 후반 60대 전반	계승 SU(Succession)	경영의 계승, 토지나 시설 등 농사자산의 사용권 양도
	↓	
	은퇴 RT(Retirement)	경영으로부터의 은퇴
	↓	
	상속 IH(Inheritance)	농사자산의 소유권 양도

○ 가족경영의 계승(SU)

- 30대 후반이 되면 계승 예정자는 작업관리 및 경영계획에 참가하는 이른바 「메니저」로 성장함
- 한편, 현 경영주(계승자의 부친 또는 모친)는 50대에서 60대에 이르게 되면, 후계자에게 경영계승(SU)과 자신의 은퇴(RT)를 검토하기 시작함
- 단, 경영에서 은퇴하게 되어도 토지나 가옥, 농업시설 등 농사자산의 소유권까지 모두 계승자에게 이양하는 것은 아님
- 이유 ; 노령연금이 지급되더라도 장래생활에 대한 그들의 불안과 농사자산의 소유가 은퇴 후,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거래가치를 산출해 내는 원천이 되기 때문

○ 농사자산의 소유권 양도(IH) = 경영의 상속

- 경영 은퇴 후 상속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농사자산은 前경영주의 은퇴 후 생계를 확실하게 하는 담보로서 이용됨
- 은퇴 후의 생계에 대해서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간 문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경영주가 은퇴 전에 돌연 사망하여 그 자녀가 그대로 경영을 인계 받을 경우에는 경영계승과 상속이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SU=IH)가 많음
- 경영주의 사망 후 그 배우자가 경영을 계승하고 배우자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시점에서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도 있음.

2.2. 가족경영의 계승과 상속의 사례

2.2.1 프랑스 남서부 지방 돌토뉴현의 계승과 상속

○ 농업구조

- 돌토뉴현은 기복이 많은 지형으로 인해, 기계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음

- 평균 경영면적은 약 20ha로 작고, 농업생산의 내역을 보면 전작(田作) 비율이 낮으며, 가축이나 과일, 포도주, 담배 등 고수익성 작목의 비율이 비교적 높음
- 또, 돌토뉴현의 자작지 비율은 전통적으로 높은데 약 80% 정도 수준임

○ 계승·상속의 특징

- 자녀의 자립, 부모의 은퇴 및 상속의 결제가 증여분할에 의해 일괄해서 실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즉, SC→IS=SU=RT≐IH식의 패턴임.
- 자녀의 자립은 소유권 취득에 의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친자 임대차는 많지 않음.
- 또한, 상속의 결제는 현금보상분할이나 현물보상분할에 의한 것이 많고, 토지를 포함한 농사자산의 분할은 극히 적음.

○ 보상분할에 있어서 정산금 산정의 2가지 방법

- 첫째, 증여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농업 후계자로부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불되는 기준가격에 의한 정산금액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을 환산하여 지급하며, 기준가격은 시가(時價)의 1/2~1/3 수준임.
- 둘째, n명의 상속인(후계자를 포함)에게 증여분할 할 때, 자산평가액의 $2/(n+1)$ 를 후계자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후계자 자신의 몫인 $1/(n+1)$ 에다가 부모의 몫 $1/(n+1)$ 을 더하는 방법임.

○ 일괄상속자의 책임

- 농업 후계자가 증여분할 후 부모의 부양을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 자

립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가족노동자로서 무상노동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음.

- 후계자는 부모와 동거 부양하는 것이 원칙임
- 만일, 당사자간에 불화가 발생할 경우, 증여분할증서 중에 결정된 부분에 따라, 후계자 단독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모에 대해 현물 내지는 금전을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만 함

2.2.2. 프랑스 북부 파리 분지 지방 코투돌현의 계승과 상속

○ 농업구조

- 이 지역의 농업은 주로 전작중심이고 그 외에 축산과 포도재배가 왕성한 선진적 농업 현이고, 100ha 이상의 대규모 영농이 활발함.

○ 경영계승·상속의 특징

- 앞의 돌토뉴현과는 대조적으로 자녀의 자립, 부모의 은퇴, 상속이라는 3단계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즉, SC → IS=SU → RT → IH식의 패턴 임.
- 상속의 실시예 앞서 현 경영주의 자립과 은퇴의 수단으로서는 수익권의 이전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자간 임대차와 이에 수반하는 부자자간의 임차권 양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 부자 임대차는 결코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문서에서 기간이나 자료 등이 자세하게 정해지며 실제로 임대료도 지불되고 있음.
- 최근 부모의 영농은퇴시기는 빨라지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연금 지급 개시연령(60세)에 수렴해 가고 있음.
- 따라서 상속결제는 증여분할이라는 형태로 부모의 생존 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증여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과 일부 청산금의 지불을 수반하는 보상현물 분할이 대부분이고, 후계자에게 경영자산을 일괄 귀속시키는 보상분할은 적음
- 그 이유는 코트돌현은 경영규모가 크고 지가도 높기 때문에, 보상분할을 실시하면 후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불해야 할 청산금에 대한 부담이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분할이나 보상현물 분할에 의해 경영의 해체나 세분화가 초래되지 않는 이유는 증여분할 때 부모가 장기 임대차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임대차나 매수를 행하는 등 경영의 일체화를 보존·유지하려는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임.
- 증여분할을 행한 후 부모의 생활비는 연금수입 외에 부모가 용역권을 유보한 경영자산의 임대료 수입이나, 증여분할 증서 중에 약정되어 있는 종신 정기금의 수입 등에 의해 생활하게 됨.
-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돌토뉴의 관행에서 보여진 거주권 유보나 부양 의무의 약정이 행해지는 것은 드물다.

2.3. 법인형태에 의한 가족경영의 계승과 참여

표 5-5 농업경영법인의 추이

단위 : 1,000호, %, ha

법 인 형 태	1970년	1979년	1988년	1995년
실수(구성비)				
GAEC	3.9(49.4)	15.3(39.1)	37.7(59.6)	43.7(47.3)
EARL	-	-	1.5(2.4)	29.7(32.2)
SCEA	4.0(50.6)	5.6(14.3)	9.9(15.6)	12.8(13.9)
임의조직	-	18.2(46.5)	14.2(22.4)	6.1(6.6)
합계	7.9(100.0)	39.1(100.0)	63.3(100.0)	92.3(100.0)
1호당 평균경영면적				
GAEC	76	80	84	106
EARL	-	-	65	84
SCEA	67	77	91	98
임의조직	-	54	56	57

- 1955년에 불과 14ha에 지나지 않았던 프랑스의 1호당 평균 경영면적은 그 후 구조정책·경영정책의 추진으로 1995년에는 38ha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확대의 진전은 70년대 후반 이후, 청년 농업자의 자립이나 가족경영의 실질적인 계승수단으로서 도입된 농업경영법인제도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970년에 불과 7,900호(농업경영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밖에 없었던 법인은 그 후 해마다 증가하여 1995년에는 9만 2,300호(12.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의 농업경영법인은 GAEC(농업공동경영집단)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EARL(유한책임농업기업), SCEA(농업경영민사조합), 등의 법인 형태가 있다.
 - 이러한 것들은 가족경영과 비교해서 경영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농작업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최근의 설립추세를 보면 GAEC는 정체되고, EARL이 급증하는 경향에 있음, 이에 비해 SCEA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2.3.1. GAEC

- GAEC는 1962년에 의해 창설된 법인형태로서 목적은 구성원이 제공하는 토지나 생산자재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공동작업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종 및 유축복합경영부문에 많이 설립되고 있다.
 - 1995년 말 현재 GAEC는 44천 개소, 그 중 부자 2명의 GAEC는 40%, 양친과 자녀 3명 이상의 GAEC는 27%로, GAEC의 2/3 이상이 부자 GAEC임. 여기에 형제 GAEC 24%를 더하면 90% 이상은 가족 GAEC이고, 타인 GAEC는 극히 적음
 - 구성원의 요건 ; 성년자(18세 이상)이고, 농업자로 각종 농작업에 종사

하는 자

- 구성원의 수 ; 2인 이상 10인 미만이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두 명은 불 인정
 - 단, 1982년 민법 개정에 의해 배우자의 공유재산을 상호 출자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가 구성원으로 가담하는 GAEC가 증가하고 있음.
- 경영상의 특징은 경영전반을 대상으로 한 완전 GAEC와 어느 특정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GAEC를 선택할 수 있음. 구성원은 농작업이나 경영사무등 어떠한 형태로든 GAEC의 일에 참여해야 만 하며, 출자자가 각각의 경영주로서 간주되고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제상에서도 독립된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각각이 독립경영주와 같은 자격을 갖지만, 형식상 그 중 1명이 경영주가 된다.
- 예를들면, 부모와 자녀(후계자)가 GAEC를 설립하면 경영주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보조금도 각각 두 명에게 나오며, 세금도 각각의 경영에 부과됨.
- 청년농업자는 이러한 부자 GAEC의 설립을 통해 DJA(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를 받고, 한 사람이 독립된 경영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하므로서 농업경영 후계자의 자립경영에 공헌한 부분이 크다.
- GAEC의 구성원은 독립경영의 경영주와 동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는 지금까지 경영주인 부모 밑에서 가족노동력으로서 일한 급료를 GAEC결성 때에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을 출자금에 더할 수 있음. 현재 부자 GAEC의 1/3은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 수익자임.
 - 부친의 은퇴(법정연령 60세)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농을 계승할 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영 독립에 대비하여 공동

경영에 참여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비축함으로써, 농업경영자산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임.

2.3.2 EARL

- EARL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된 가족경영의 부채정리 문제에 대처하고 경영자산과 가족의 개인자산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GAEC를 계승하는 조직으로서 창설되었다.
 - GAEC에 참여한 영농주의 부친이 영농은퇴시점에 이르게 되자 영농의 후계자인 아들이 부친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상당액의 자본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이들의 부채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 등장하면서, 1985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유한회사 형태의 EARL을 창설하게 되었음.
- EARL의 특징은 구성원이 한 사람, 부부 두 사람, 또는 경영자 1인과 비경영자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고, part-time 취업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친자 GAEC를 체결한 아들은 부친의 은퇴 후에도 EARL의 형태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GAEC 해산 후에 발생하는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음.
 - 더욱이 은퇴한 부친은 비경영자로서 EARL에 남게되고, 출자지분을 조금씩 아들에게 양도해서 추가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음.
 - 때문에 1992년에는 GAEC 해산 총 수의 반 이상이 EARL로 전환했음

2.3.3. SCEA

- SCEA의 설립은 과수, 기업축산, 대규모 경종농업 등에서 자본의 확대, 종업원(구성원)의 확대, 판매활동으로의 참입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기업형 조합이다.

- 예를 들면, 대규모 경종부문의 마케팅 도입, 포도의 생산·가공, 기업 축산과 같이 대규모의 고정자본이 소요되고, 많은 금액의 운전자금이 필요한 사업부문에서 도입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SCEA는 기업적 성격이 강하고, 다수 구성원의 출자에 의해 자본형성이 필요한 부문에서 설립되고 있음.

2.3.4 GFA

- 1962년 창설된 법인형태로서 경영을 상속할 때의 토지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 임대차를 통해서 경영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청년 농업자의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토지집단 이다.
- 공동상속인으로 GFA를 설립하고, 각각 양도된 농사자산을 경영계승자에게 대여하여 경영의 일체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
- 따라서, 대부분은 가족적 GFA이지만, 1970년대 전반의 지가가 오를 때에는 자본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형 GFA가 설립되는 경향도 있었음.
- 그러나 그 후, 80년대에는 농지가격이 하락하여 토지의 수익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가족경영의 존속을 위해 농지를 가족적 성격의 법인소유로서 유지하도록 하는 농업자의 강한 의식으로 지금은 투자형 GFA는 거의 볼 수 없다.

2.3.5. CUMA와 노동력 은행

- CUMA란 Cooperative d' Utilisation de Materiel Agricole(농업자재이용협동조합)의 약칭이고, 1947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음. 가족경영에서는 도입이 어려운 대형농기계나 시설등을 공동으로 소유·이용하는 조합이다.
- CUMA 조합원수는 최저가 4명이고 상한은 없음. 큰 것은 조합원수가

100명 정도이고, 현재 조합수는 약 300개 정도 이다.

- 조합원의 노령화로 조합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담당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임.
- 조합원의 자격은 농업자 이어야 하고, 겸업도 관계없으며, 물론 가입은 자유임.
- 조합가입은 기계 또는 시설단위로 이루어지고, 자신이 필요한 기계만으로 가입함.
- 기계의 완전상각까지는 조합원으로서 남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음
- 출자금은 기계가격의 20%, 나머지 80%는 특별융자로 93년 9월 현재 이율은 5.6%임
- 농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통융자는 10.8%이기 때문에 매우 싸며,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그 기계가 담당하는 면적과 소요시간을 계산하고, 전 조합원이 부족하지 않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계를 선택함.
- 각 기계에는 1인 조합원이 책임자가 되지만, 운전은 각 조합원이 하는 것이 보통임
- 최근 늘어난 기계로는 대형 트랙터가 있으며, 트랙터가 해마다 대형화 되고,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음
- CUMA의 보완조직으로서 노동력 은행이 있으며, 이것은 相互扶助조직이고, 반드시 CUMA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CUMA의 조합원과 은행원은 동일함

2.4. 신규취농자의 자립지원정책과 세대교체 촉진정책

- 청년농업자의 농업 참여 시 핵심적인 과제는 어떻게 토지부담 압력을 경감하면서 경영의 일체성을 보존·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다.
- 청년 농업자의 자립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그 대부분은 토지를 시

작으로 하는 각종 농사자산의 취득에 충당됨. 이와 같은 참입 비용이 청년 농업자에게 있어서 과대한 부담이 됨

- 1939년에 창설된 임금연불계약제도는 보조노동자로서 경영에 기여한 보수를 상속시에 정산할 수 있지만, 그 보수는 실질적으로 부모의 배려로 상속자산으로 이전되고, 실제로 연불 임금이 지불되지는 않음.
- 때문에 자립을 목표로 하는 청년농업자에게 있어서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경영의 계승·상속 및 신규 참입 하는데 최대의 장벽이 됨.

표 5-6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DJA)의 내용

항 목	적 요
지원자격	<p>21세~35세미만 (경우에 따라 40세까지 가능) 연간 노동의 50%이상을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의 50%이상을 농업으로부터 얻는 주농업자인 경우. 만약, 산악지역 및 조건불리지역에서는, 각현의 최저기준소득의 50%이상의 경영가처분소득이 보장된다면, 부차적 농업자도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이전 출생자 : 농업 직업교육 수료자격(BEPA) 또는 농업 생애교육 수료증서(BPA) · 1971년 이후 출생자 : 농업기사자격(BTA) 및 6개월 연수
지원액	<p>산악지역 : 108,000~235,400프랑 (평균 171,700프랑) 조건불리지역 : 67,200~146,400프랑 (평균 106,800프랑) 기타지역 : 52,000~113,400프랑 (평균 82,700프랑)</p>
지급방법	<p>제1차 지급 : 조성금의 70%가 조성금 지급결정일 또는 자립일의 3개월 후에 지급 제2차 지급 : 조성금잔액의 30%가 자립 후 3~6년경과 후 懸 농업을 방향짓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급</p>
기타	<p>부가가치세의 적용과 자립 후 10년 동안 부기시장의 의무 자립준비연수SPI, 자립예측조사EPI의 실행 6개월 연수 실시</p>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DJA)이나 청년 농업자 중기 특별융자(MTS-JA)라는 각종 자립조성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DJA는 1973년에 창설되었고, 당초 산악지대나 그 외 과소화가 진전되는 농산촌에 있어서, 인구유지의 관점에서 농업자 수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그 후, 청년농업자 자립의 중요성은 80년 「신농업기본법」, 88년 「농업경영 적응법」, 90년 「보완법」, 95년 「농업 근대화법」에 있어 더욱 선명하게 주장됨.

- 81년 개정에서는 청년농업자 개별경영계획 조사나 자립예측조사(EPI), 자립준비연수(40시간연수, SPI) 등이 도입되어 장래의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이 강화되었다.

- 84년 제도개정에서는 조성대상자의 최저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인상됨과 동시에, 25세 미만에 대해서는 직능적 능력기준이 강화되어 농업직업교육수료자격(BEPA), 농업생애교육수료증서(BPA) 자격이 의무화되었다.

- 88년 제도개정에서는 종래의 자립 하한면적(각 지역의 존속 가능한 경영의 최저 면적수준)의 적용을 폐지하고, 자립 3년(또는 6년) 후의 예측소득에 대해서 소정의 기준소득을 적용하였으며, 직능적 능력에 관한 자격요건을 농업기사자격(BTA)으로 강화시켰음. 또, 배우자의 자립을 배려하고, 산악지대 및 조건불리지역 등의 다중 취업자를 조성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배우자도 주업적으로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조성금이 증대됨. 배우자가 동일한 가족경영에서 종사하는 경우, 각각의 지역 평균조성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주의 DJA가 증액됨. 또한, 배우자가 동일한 법인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주와 배우자 각각에게 조성금이 지급됨.

- 1992년 이후, 적성자격이 판정될 때 농업이외의 농업활동 경험도 고려하게 되고, 다중 취업자나 비농가 출신자도 자립조성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조건이 완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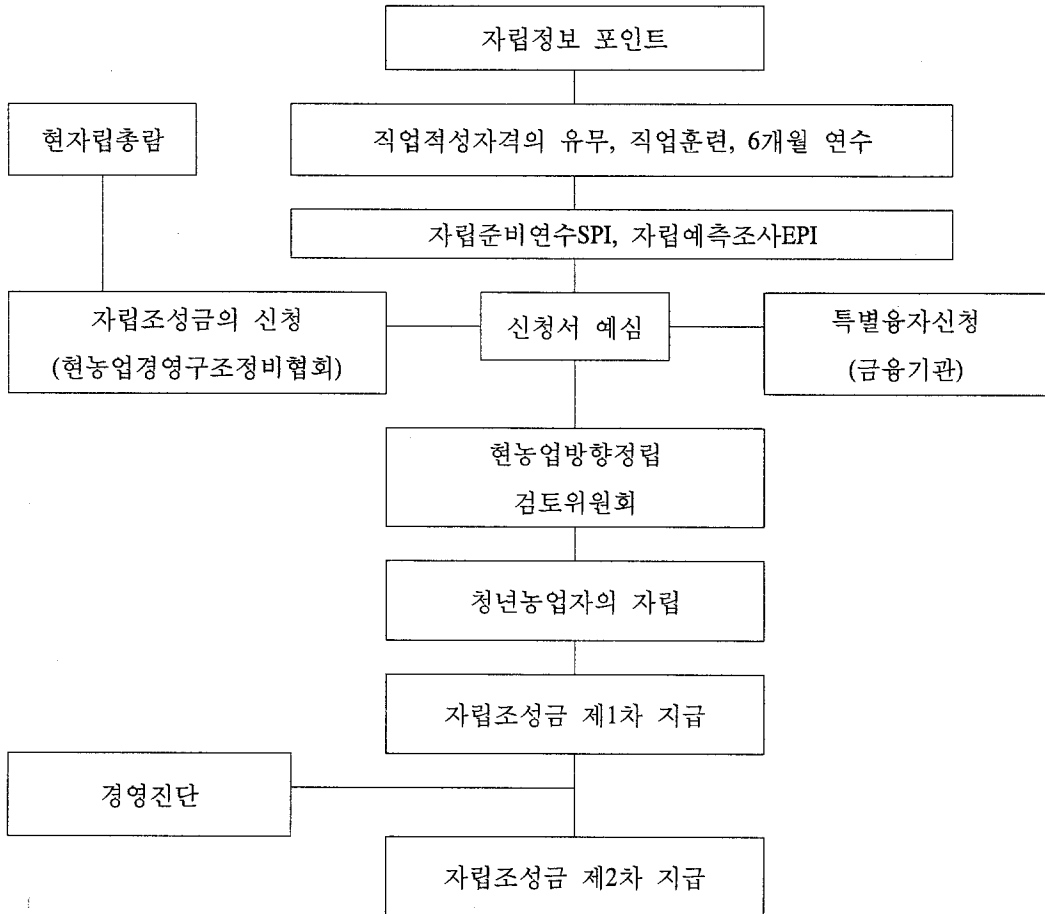
○ 자립조성금을 받기까지의 대략적인 흐름

- 청년농업자는 먼저, 그 지역의 은퇴 및 이농 희망자와 자립 희망자의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자립조성금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 농업경영구조정비 협회에 제출함
- 이것을 받아서 해당기관은, 신청서의 적성자격이나 자립 후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자립예측조사)를 실시
- 한편, 청년농업자는 6개월 연수와 세제나 부기, 농업자 사회공제제도 등에 대한 연수(자립준비연수)를 수강해야만 함
- 그 후, 조성금의 신청은 예심을 거쳐서「현 농업방향 부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채택 여부의 최종결정이 됨
- 조성금은 최초 지원시와 지원 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되는데, 2회분의 지급은 3-6년후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를 거쳐 지급됨.

○ 연수내용

- 가족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생업으로서가 아니라 경영으로서 농업을 실천을 위하여 최소한 자택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공인된 인정 「경영자·지도원」의 자택에서 연수를 할 수 있음.
- 「경영자·지도원」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립 후 4년 이상 경과할 것, 부기기장을 작성하는 것, 노동환경이나 위생면 등 조건을 만족할 것 등이 필수적임.

그림 5-3 청년농업자 자립자금 지원경로



- 연수는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할 수 있지만, 2개월 이상은 농업경영 현장에서 연수해야 함. 농업경영 현장 이외에 농업관련기업 또는 관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
- 청년농업자는 경영자로서 자각을 깊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생산 및 경영관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영자·지도원」은 노동력과 추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 1995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6개월 연수생 등에게 자립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어 연수자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음.

- DJA의 특징은 체계적인 자립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 최근, 농업경영의 파산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35세 미만으로 대학입시자격 이상의 자격을 가진 농업자가 적지 않음.
 - 때문에 자립프로그램에는, 자립 조성금의 제 2차 지급에 앞서서 자립 후 3년 동안에 달성한 소득을 시산하는 자립예측 조사를 실시하여 경영평가를 하므로써 청년 농업자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청년농업자의 경영감각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그들의 자립에 도움을 줌.

표 5-7 청년농업자 중기 특별융자(MTS-JA)의 내용

항 목	적 요
지원자격	DJA와 같음 만약, EARL에서 자립하는 경우는 융자 수급권을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융자 대상	자본 및 토지이외의 부동산 취득 (경영·시설·법인에 출자 등) 경영에 불가결한 地片의 취득 (10만 프랑 한도) 공동상속인에게 청산금 지불 취득한 경영의 이용·조정 에 관련하는 지출 (건물의 증·개축 등) 경영운전자금 (자립초년도 융자액의 10% 한도)
융자 상한	대부총액 72만 프랑 단, 배우자도 주업적으로 경영에 종사할 경우에는, 가족경영 : 108만 프랑 법인경영 : 144만 프랑
융자 조건	이자율 : 산악지역·조건불리지역 2.65%, 기타 지역 3.90% 이자보급 : 산악지역·조건불리지역 12년, 기타 지역 9년 대부기간 : 15년 상한부채비율 : 자립예측조사에 있어서 2년차·3년차 중장기 차입금의 연간 상환액 ÷ 경영조이익 ≤ 60%
기 타	DJA와 동일.

○ 청년농업자 중기 특별융자(MTS-JA)

- MTS-JA의 목적은 청년농업자의 자립에 필요한 경영자금임.
- 경영의 규모확대(농지)나 신규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본 및 토지이외의 부동산(시설)의 취득 및 시설증축, 경영에 긴요한 토지의 확보(시설부지), 공동상속인에 대한 청산금의 지불, 운전자금등 경영개선의 용도에 국한됨.
- 앞의 DJA와 세트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자격이나 적성자격 등은 DJA와 동일함
- 저이자율에 의한 일정기간의 이차지원으로서 산악지역 및 조건불리지역에 우대조치가 있음. 또한, 배우자가 주업적으로 경영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 융자액의 상한은 청년농업자 단독의 경우보다도 높음.

○ 「농업경영구조조정계획」

- 이 제도는 프랑스의 구조정책·경영정책의 기본적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로서 1980년의 신 농업기본법에 의해 창설되었음. 동 제도는 원래 1962년 보완법의 경영병합규제(경영규모의 변동규제)를 재정비한 것이고, 각 지역마다 과대경영이나 과소 경영의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규모의 바람직한 가족경영을 보다 많이 창출·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농사자산과 관련한 경영권의 취득·이전·설정행위시 소정의 요건과 관련한 것은 사전에 현(縣)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 및 기준은 각현의 「농업구조지도계획」에서 정하고 있음.
- 자립하한면적의 2-4배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상한면적을 초과하는 규모확대나 자립하한면적의 2배이상의 경영축소, 소정의 직업(경영)능력이나 직업경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나 은퇴연령에 달한 자가 경영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노령연금제도」

- 1952년에 농업경영자의 노령 보험제도가 창설되었으며. 그리고 62년부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연령(65세)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령농업자에 대해서, 노령연금을 보충하는 형태로 이농 종신보상금(IVD)이 지급됨.
- 이것은 제도 창설시 영농은퇴자가 경영을 양도하여 양수자의 경영면적이 자립하한면적의 1.5배 이상이 될 경우에 한정하였지만, 74년 이후는 DJA의 등장과 함께, 자립하는 청년농업자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것도 포함됨.
- 그 후 조기 이농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 차례의 IVD의 개정이 있었음.
- 먼저 1967년에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60세~65세에 은퇴하는 농업자에 대해서, 연금개시 전 이농 종신보상금(IVD-NCR)이 지급됨
- 이어서 1969년에는 농촌지역에 있어서, 60세에 이른 시점에 IVD-NCR을 받고 은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55세 이상의 소규모(3ha~자립하한면적) 농업자에게 은퇴대기보상금이 추가 지급됨.
- 특히, 1978년에는 60세~65세의 농업자의 이농유인을 높이기 위해, 그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보조보상금이 지급됨.

○ 1980년의 농업기본법과 84년의 선언에 있어서, 청년 농업자의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이농 보상금 제도는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 이농 연차보상금(IAD)의 창설: IAD는 15년 이상 주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던 농업자가 60세~65세(身障者 ; 불구자 또는 배우자의 사망한 경우 55세 이상)에 은퇴·이농할 경우에, 종래의 IVD-NCR에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농할 때에 경영을 이양하는 상대방이 신규취농자로

DJA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최우선 시 됨. 때문에 제3자에게 경영이양이 허용되는 것은, 가족내부에 승계자가 없을 경우만 됨. 또, IVD의 수급자격이 개정되어, 65세 미만에서 이농한 후에 IAD를 받았던 자만이 IVD의 대상이 됨

- 이와 같이 프랑스의 이농 보상금제도는 초기의 규모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청년농업자의 자립촉진, 80년대 전반에는 청년농업자의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한 노령농업자의 조기 이농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그러나, 노령농업자의 은퇴·이농이 예상 이상으로 진전되었기 때문에, 1986년의 법률에서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매년 한 살씩 앞당겨, 90년에는 60세로 하향조정 하였음.
 - 노령 농업자의 이농 장려조치는 그 후 CAP개혁이 국내 적용으로 91년 말에 조기 이농조치가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1995년 농업 근대화법에 기초해서 작성된 「청년 농업자의 자립을 위한 전국헌장」
 - 이 헌장은 농업 직능조합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해 가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정부는 이 헌장을「국가와 농업과의 새로운 계약」으로 위치부여를 하고 있고, 이 후 자립촉진 대책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음.
 - 이 헌장의 목표는 실제로 의욕적이고, 최근 4대1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농자 수의 비율을, 서기 2,005년~2,010년에는 1대1(한 사람의 이농에 한 사람의 취업)로 까지 높이겠다는 것임.
 - 동 헌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서 정보제공과 교육의 강화, 자립을 위한 준비와 조언, 토지와 시장에 용이한 접근, 투자의 효율화와 용자의 적정화, 리스크 관리의 개선, 다중 취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영형태의 용인, 전국적 정책과 지역적 특수성과의 보완성 및 상승효과 등의 7항목을 제시하고, 그 종합적인 추진에 의해 프랑스 농업의 새로운 담당자를 형성해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3. 독일의 농업경영 계승과 경영 조직화

3.1. 독일의 가족경영의 계승과 상속

- 독일의 가족경영의 계승·상속유형
 - ① 농장양도 계약이고, 경영주가 생전에 자기 농장을 후계자에게 이양(委讓)하는 방식
 - ② 법률규정 또는 사망에 의한 농장 소유권 이전으로 각 주의 법률에 기초하는 농장 일자상속과 연방법으로서 농림업용 토지 거래법, 유언, 상속계약 등임

- 일반적인 가족경영의 계승·상속과정
 - 먼저, 농장 후계자에 뜻을 둔 청년은 농업학교에 다녀서 수료자격을 취득.
 -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제3자와 부모의 두 농장에서 농업실무의 실습을 해야만 함.
 - 이 때 부모와의 사이에서 문서에 의한 도제계약(徒弟契約)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임.
 - 청년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 경영에 대한 자각이 싹트고, 이와 함께 부모(경영주) 쪽도 청년의 능력이나 의욕을 보고 정한 뒤에 경영을 맡기겠다고 생각함.

- 구체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경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됨.
- 또한, 부모가 농사자산을 출자하여 청년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합계약도 있음.
- 그 후, 경영의 이행이 서서히 진전되고, 부모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농장양도계약이 교환됨.
- 즉, SC→IS≐SU→RT=IH의 패턴임.

○ 농업양도 계약의 주요내용

- 공동상속인에게의 보상, 농장소유권의 양도, 거주권, 식량 등의 급부, 매월의 용돈, 자동차 등 편의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계자는 농장을 취득하는 대신에 전 경영주 부부의 부양의무와 공동상속인에 대한 보상의무를 인수해야만 함.
- 또, 농장을 양도할 때의 평가로는 원칙으로서 수익가격이 적용됨.
-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장 일자상속법에 있어서도 같은 형태이고, 여기에서는 농장 통일가격(수익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표준을 위해 설정됨.)의 1.5배를 기초로 평가됨.
- 때문에, 만약 후계자가 농장을 비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과 농장 양도가격과의 차액을 공동상속인에게 보상해야만 함.
- 게다가, 농장 양도계약 당사자는 경영주와 그 후계자이지만, 경영주의 처는 경영주와 같은 형태로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많음.

○ 농장 일자상속법

- 구서독에서는 경영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해서 州법으로 특별법이 있으며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됨.
-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재판소에 신청하면, 농장자산을 그 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구서독의 북서독 4州에는 농장 일자상속법이 존재해 있고, 이러한 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장은 모두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 여기에서 일정요건이란,
 - 경영관리에 적합한 가옥에 따르는 농림업용 토지재산
 - 자연인의 단독소유 또는 부부의 공동소유인 것
 - 또한, 그 재산이 2만 마르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임.
- 등록된 농장에 대해서는 반대로 농장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유언 없이 경영주가 사망한 경우에도, 농장 일자상속법에 따라 유일한 사람인 후계상속인이 결정됨.
- 여기에서 상속의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자손이고, 같은 순위에서는 교육이나 직종 등에 의해 사실상 후계자로서 결정된 자가 우선시됨 (단, 원칙으로는 장남임).
- 그리고, 제2순위는 배우자, 제3순위는 양친, 제4순위는 형제자매로 되어있음.

3.2 농업주 노령 부조제도와 청년 농업자의 취농 조성정책

- 구서독에 있어서 가족경영의 계승·상속의 기본은 농장양도계약이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경영규모의 확대와 새로운 담당자의 등장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경영주의 라이프사이클로 규정되는 농장양도계약은, 그 자체 단독으로는 결코 유효한 세대교체의 촉진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즉, 의료기술의 진보에 의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해마다 신장하는 반면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경영주의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청년농업자의 자립 또한 늦어지는 것이 문제로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서독에서는 농업주 노령부조제도를 확

립하고, 청년농업자의 조기취업조치를 강구해 왔음.

- 농업주 노령부조법은 1957년, 은퇴한 고령 농업주에게의 생계비의 보장(사회정책)과 경영주의 세대교체 촉진(구조정책)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 내용은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업적 농업경영주가 경영을 이양해서 65세를 초과할 경우에, 이 경영주 또는 배우자에게 종신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업주 노령부조제도의 세대교체 촉진효과

- 연방 식량농림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제도에 의해 경영주 연령이 다시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고, 제도개시 직후부터 65세 이상 층에서의 경영이양이 증가했음.
- 특히, 이 제도가 없다면 사망하기까지 경영을 이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75세 이상 층에서 그 효과는 현저했음.
- 최근, 구서독에 있어서 경영이양이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인 65세로 수렴해 오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성과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구서독에는 프랑스의 DJA와 같은 청년농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없음. 그러나 청년농업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EC공동과제 조성항목으로서「경영에 대한 장려금」과, 이자보전 특별융자조치 두 가지가 있음.

- 전자의 장려금에 대해서는, 농업주 노령부조제도에서 농장을 양도받은 청년농업자에게만 그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장려금의 자격조건>

- 전업적 농업자로 신청시점에서 40세 이하일 것.
- 농업직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농업학교에 통학하여 일정한 성적으로

수료했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을 만큼 직업훈련
증명서가 있을 것.

- 당해 경영에서 적어도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것.
- 또한 적어도 5만 마르크 이상의 투자가 행해질 것.
- 경영을 시작해서 5년 이상일 것 등.

- 장려금은 보조금의 형태로, 1회에 한해서 지급되고, 그 상한은 1만 마르크이지만, 최근 이 장려금 지급자 수가 500명이 채 안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한편, 농장을 계승해서 5년 이내의 청년 농업자는 후자의 이자보급 특별용자를 이용할 수 있음.
- 이 특별용자의 상한은, 기계투자에 대해서는 15만 마르크까지, 그 외 이용에 대해서는 20만 마르크까지로 되어있어, 청년농업자에게 있어서는 충분한 내용임.

○ 마이스타 제도

- 농업 마이스타의 자격취득은 주(州)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직업학교를 다니고, 거기에 계속해서 3년 동안 실무경험 및 전문학교에서 1년 동안의 학습을 거쳐서 주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함.
- 학습기간 동안에는 농업회의소가 알선하는 마이스타 자격을 가진 농가에서 생활하면서, 주 1일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4일 동안은 멘투멘 방식으로 마이스타로 부터 농업기술을 습득함.
- 직업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노동보수나 노동시간 등이 보장된 직인으로 간주되고, 더우기 마이스타의 자격을 취득하면 농업기술자로서 사회적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견습생을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됨.

3.3. 독일 농업경영의 조직화 : 머쉬넨 링

- 머쉬넨링은 발족당시인 1950년대 말~60년대에는 기계작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수위탁의 중개과정에서 축적된 농가 상호간 파트너 쉽을 바탕으로 70년대에는 helper사업에 참여하며, 80년대에는 지역보전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등, 농가의 노동력과 기계를 더욱 더 유효하게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유지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 시장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범위는 기계라는 자본재 이용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노동력의 이용, 그리고 지역공간이라는 의미에서의 토지의 이용·보전에 이르기까지 점점 확대되어 오고 있음.

3.3.1 농작업수위탁사업

- 사업운영방식
 - 머쉬넨 링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은행”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조직이 직접적으로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의 소유자와 기계작업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기계·노동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위탁작업의 수요자를 기계의 보유자에게 알선하는 형태로 기계작업 수위탁의 교환을 하고있음.
 - 이와 같이, 머쉬넨링은 기계작업의 수위탁 조직이고, 조직 자체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
 - 머쉬넨링은 자체적으로는 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조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물적자산 이라면 사무소와 그곳에 있는 전화 등 통신기기나 컴퓨터 등이고, 거기에서 수집하는 것은 각 구성원이 소유한 기계나 노동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 작업의 위탁과 수탁에 관한 정보 등 임.
 - 따라서 기계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업을 적기에 전화 주문하는「전화농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조직의 구성

- 머쉬넨링은 일종의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고, 대체로 군 단위에서 조직되어 그곳에 있는 농가의 가입여부는 완전히 개인의 자유이고 탈퇴도 자유임.
- 조직의 설립은 설립총회에서 정관을 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매니저를 임명하여 법인등록을 하는 순서임.
- 설립된 조직의 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입회금(5만원~10만원정도)과 년 회비(1ha당 1만원 정도)를 지불함

○ 작업방법

- 작업을 청부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년 사전에 매니저에게 청부 가능한 작업과 시간을 신청하여 청부자 리스트에 등록.
- 작업을 위탁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그때마다 매니저에게 전화로, 언제 어떠한 작업을 원하는지를 통지하고 작업위탁을 요청 받은 매니저는 해당하는 작업 청부자 리스트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작업의 수위탁을 중개함.

○ 매니저의 역할

- 위와 같은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중개 역할과 작업요금에 대한 과거의 통계나 수위탁 동향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작업요금의 수준을 산출함.
- 또한, 이러한 작업의 수위탁 기록이나, 전체 기계의 소유상황 등의 데이터를 정리분석 하고, 조직전체 작부동향을 파악하여 어떠한 기계장비가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임원회에 제출함.
-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니저는 기계의 갱신시기에 도달한 멤버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환의 적부나 대형·고성능화 또는 다른 기계의 구입 등 기계투자에 대한 지도를 실시함.
- 이와 같이 머쉬넨링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계의 이용율을 높이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지도를 실시하여 그 지역에서의 적절한 기계보유·이용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지도하고 있음.

3.3.2. 경영helper 서비스

- 기계작업의 수위탁을 중개하는 것 이외에 노동력 등을 알선하는 서비스도 행하고 있음. 통상「경영helper서비스」라 부르며 회원농가의 생산, 집안 일에 노동력이 필요로 할 경우 노동력을 파견하는 것임.
 - 이 경우 파견되는 노동력은 병이나 부상, 휴가, 연수 등으로 근무를 못할 경우 대체노동력과 농번기에 노동력이 부족할 때, 건축사업이나 삼림작업 할 때의 보조노동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즉 helper는 병이나 부상에 의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의 대체노동력으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 보조노동력으로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음. 이것은 전체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원래부터 있었던 helper 조합의 helper는 어느 쪽이든 helper를 직업으로 하는 전업자가 주체이지만, 머쉬넨링에 있어서는 회원이 파트타임 helper 즉 보조노동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임.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helper는 자가 생산활동 외에 노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있음.
 - 머쉬넨링에서는 기계작업과 같은 요령으로, helper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미리 등록해 두고, 매니저는 helper 파견 요청에 따라 그때마다 적임자를 파악하여 의뢰함.
 - 즉, 농가가 관혼상제나 여행할 때 등에도 단발적으로 helper 서비스를 용이하게 요청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 머쉬넨링의 helper사업은 기존의 helper 조직과 경합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helper 사업의 참여는 매니저라는 인적자본의 가동율을 높이고,

메니저의 고용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

- 기계작업의 수위탁을 통하여 형성된 회원농가간의 파트너 쉽이 이러한 helper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라 할 수 있다.
- 머쉬넨링의 조직 발전과정을 보면, 먼저 기계작업의 수위탁 중개기능이 형성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helper 사업이 도입되어 발전해 왔음.

3.3.3 지역보전사업

- 농업·농촌의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농촌을 보존·유지하여 정주공간 또는 여가보양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생활기반을 유지 관리, 농촌경관을 보존·유지하면서, 레크레이션 시설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체의 한정된 재원으로로서 증대하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힘들다.
- 농촌거주자나 관광객에게 농촌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할 만큼 인적·재정적인 여유가 자치체에는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체는 지역보전에 관한 업무를 부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게 되어 왔다.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역보전사업은 지역의 농가에게 있어서는 적당한 부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체와 농가의 이해가 일치하여 지역보전 사업은 점점 민간에 위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소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 자치체가 특정한 농가를 후원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사무관리는 일반 농가를 담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머쉬넨링이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머쉬넨링에는 작업수위탁의 중개 노하우가 축적되어 필요한 사무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매니저가 있음.
 - 회원농가의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위탁하는 작업을 청부할 책임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음.
 - 이러한 머쉬넨링을 통해 지역의 농가는 공동으로 지역보전사업을 수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머쉬넨링이 지역보전사업과 관계를 맺은 계기가 된 것은 농경경관의 보전이었지만, 점차 관여하는 지역보전사업도 여러 갈래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4. 외국사례의 시사점

4.1. 일본의 경영체 육성정책과 추진체계

4.1.1. 지역농업과 연계된 경영체 육성

- 일본의 경영체육성체계는 정부의 육성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농업계획에 입각하여 농업자가 개별경영개선계획을 수립케 하므로써 정부의 육성목표, 지역의 농업계획, 농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 지역농업 확립을 중시하여 지역전체가 합리적인 역할분담, 작업분담에 의한 지역농업경영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음.
- 개별 농업경영의 발전이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운용과 지역·집락, 농업경영체의 협력체계의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4.1.2. 농업생산법인의 기능 다양화

- 농업법인제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영농규모화의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수단,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후계자의 육성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 농업생산법인의 육성과 지역농업의 발전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등 공적기관이 역할분담과 인적·물적제휴를 통하여 법인경영을 지원하고 있음.

4.1.3. 영농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농지이용조정

- 지역농업여건 및 지역단위의 합의형성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인 농지이용조정을 통하여 그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첫째, 평야지역의 경우 대구획 정비에 농지유동화를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정이상의 유동화를 조건으로 생활환경개선과의 일체적 추진, 유동화자금 지원, 보유기계의 처분지원 등 겸업·고령농가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둘째는 도시근교, 중산간지대 등 전업농가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농업법인을 특정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농지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역의 겸업농가를 조직화하여 지역영농집단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여기서는 농협 등 단체가 관리주체가 됨.

4.1.4. 취농 정보화 체계구축 및 취농 경로별 취농 단계별 대책수립

- 농외에서 신규취농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취농에 필요한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 신규취농가이드 사업, 도도부현 단위의 청년농업자 육성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

- 취농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취농경로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 신규취농자의 농업 참여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추진.
 - 특히, 취농전 대책을 강화하여 실천적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4.2. 프랑스, 독일의 가족경영계승과 경영육성 정책

4.2.1. 경영계승에 초점을 맞춘 가족경영육성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가족경영의 지원정책은 상속제도와 신규취농자 지원정책을 통하여 농가자산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경영계승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 프랑스의 사례
 - 공동상속인 간의 평등원칙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일체적 계승을 실현해야겠다는 부모의 배려가 생전의 경영계승과 상속을 유도하고 있음.
 - 그리고, 토지부담을 경감 내지는 회피하고 경영자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의 계승과 자산의 계승을 분리시키고 있음.
 - 또한, 청년 농업자에게 타 부문과 견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배려가 자립과 은퇴를 분리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영계승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DJA(청년농업자자립보조), BEPA(청년농업자 특별융자)과 같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에 직능연수등 직능적 능력기준이 최 우선시 되고 있음.
 - 독일의 사례
 - 경영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시 농업자산의 일체가 영농후계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프랑스의 DJA와 같은 청년농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 없으나 농업주 노령부조제도를 통하여 경영이양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농업자의 자금지원은 기계구입 및 영농자금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일정기간의 영농교육을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4.2.2. 가족경영을 보완하는 법인정책

-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는 다양한 농업법인형태가 도입되고 있다. 농지 산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경영계승을 원활히 하는 수단, 가공·유통·판매등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부문을 도입하는 수단, 농기계의 공동이용 수단등 다양하다.
 - 경영계승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영이양형 가족법인 : GAEC, EARL
 - 가공·유통·판매형 : SCEA
 - 대농장 공동상속에 대응한 임대차형: GFA
 - 농기계공동이용형: CUMA
- 법인화의 정책목적이 기본적으로 영농의 규모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은 경영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프랑스의 농업법인제도는 이러한 농업경영 여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업법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독일의 머쉬넨 링은 어디까지나 가족경영을 확고히 하고, 각각의 가족경영이 자유로운 기업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농가가 서로 경제원리에 입각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전체의 진흥을 도모해 가는 시스템이다.
 - 구성원 멤버 모두가 균등하게 같은 형태로 작업부담이나 경제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과 의향에 따라 전문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짜여져 있음.

- 이러한 머쉬넨링의 방식은, 자기 완결적인 단위를 상정하여 대규모 자립경영을 창출하는 규모확대 노선도 아니고, 구소련이나 동구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은 집단 농장화의 노선도 아니기 때문에 머쉬넨링을 「제3의길」이라고 칭하고도 있음.
- 프랑스의 농업법인정책의 방향이 대규모 경영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독일의 경우는 대규모 경영과 소규모 경영이 각각 경영요소의 일부를 out-sourcing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므로서 각각의 경영 효율성을 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 장

농업경영체 시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1. 농업경영체 발전의 기본방향

- 농업경영체 발전모형의 수립에 있어, 최근 우리나라 농업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농업은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기능이라는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어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 농업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은 지역의 농업여건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노동시장조건과 지형조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발전도 이러한 고유의 지역농업의 틀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 경영주체의 육성에 있어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농가를 겸업농가, 고령농가등 농가 유형별로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게 하여 지역농업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다양한 유형의 농가를 지역농업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농의 규모화와 집약화를 병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작목편성과 경영모형이 확립되어야 하며, 세제, 농지유동화 및 지역농업의 생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로 노동력, 농지, 기계·시설등 생산요소를 조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농시스템이 필요하다.

1.1.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의 연계성 강화

-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이 능률적인 구조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양한 농가의 계층분화에 의한 농지유동화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현행 기계기술체계에서 기계체계를 적절히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생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영농규모는 최소한 집단화된 10ha¹¹⁾ 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업농의 평균 영농규모는 2.6ha 수준으로서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소농의 범주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농가들을 일률적으로 수도작 대규모 경영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경영단위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경영을 보완하는 영농조직의 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업농 육성과 함께, 겸업농, 고령농가등 전업농 육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농가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영농조직¹²⁾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11) 정홍우의 연구(1994)에서는 1ha에서 10ha이상까지 15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쌀 생산비 최소규모는 12.96ha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기계의 대형화·고성능화등 기술수준의 발전을 감안할 때 최소한 10ha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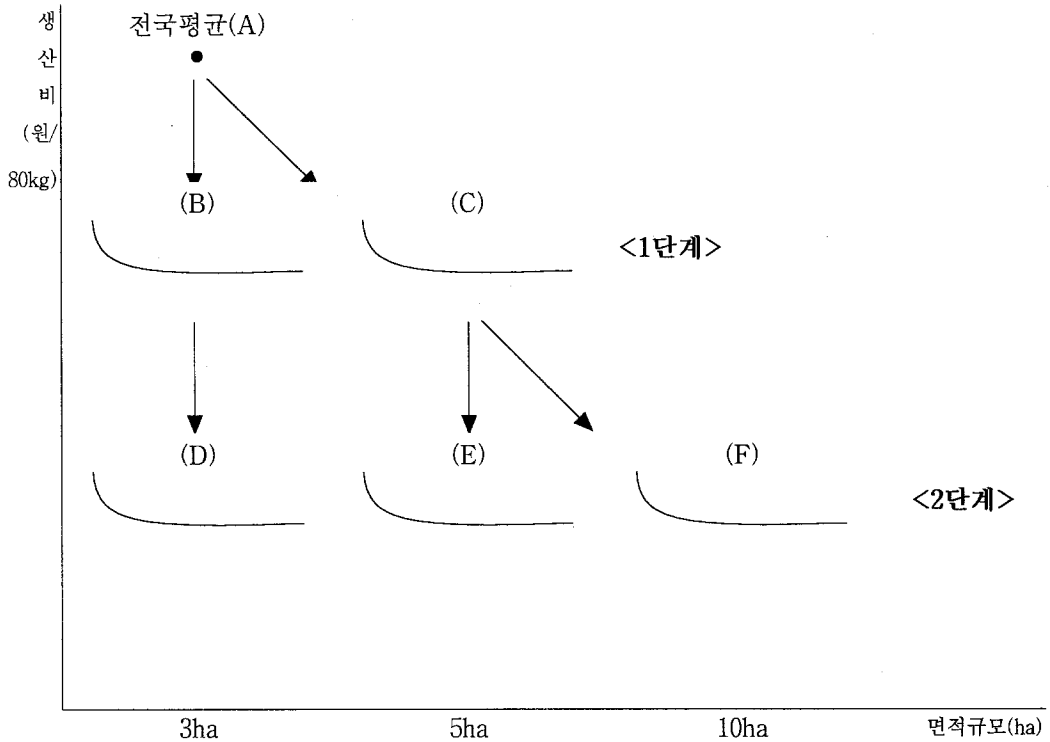
1.2. 지역농업에 대응한 경영모형의 수립

-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는 생산비 측면의 효율화, 둘째는 수익성 내지는 소득 측면의 효율화이다. 첫 번째의 관점은 정책적으로 중요시되는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개별 경영단위에서 중요시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의 관점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경영모형을 수립할 경우에는 양 측면이 동시에 고려 되지 않으면 안된다.
- 경영모형 수립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유동화의 속도가 느리고 유동화에 의한 규모확대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작업적기의 기간노동력 1인당 작업가능면적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농업 또는 농촌의 유지측면에서 볼 때, 소수농가보다는 다수농가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상의 판단에 의하면, 쌀 전업농의 기간노동자 1인당 수익성의 확보를 위한 경영모형은 외연적인 규모확대와 더불어 복합화에 의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여건을 전제로 할 경우 향후 경영모형의 정립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선적으로 두가지 방향이 상정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의 전업농 규모를 농지유동화를 통한 외연적 규모확대를 통하여 5ha 내외의 규모로 육성하는 방향(A→C)이다. 여기서는 농지면적의 확대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기계 수탁작업도 적

12) 여기서 영농조직이란 겸업농, 고령농가등 영세규모의 농가 계층을 들 단위로 조직화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그 실시방안은 지역영농시스템 구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6-1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체의 발전모형



- 둘째는 농지의 분포 및 지형조건을 고려한 방향으로서 영세한 영농규모, 농지유통화의 한계를 감안하여 현재의 영농규모 수준에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A→B)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의 공동이용 및 수위탁 활성화, 집단관리에 의한 단수증가, 품질·안전성 확보 및 판매관리에 의하여 판매단가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 그리고 이러한 바탕하에서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모색하기 위한 방향은 대규모 확대(C→F), 중규모 유지(C→E), 소규모 유지(B→D)의 세가지 방향이 상정될 수 있다.

- 추가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중·소규모형은 집약적 관리를 통한 단수의 증가 및 미질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포장의 단지화와 복합작목의 도입이 추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대규모경영에서는 규모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장의 대구획화·단지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 발전모형별 대응전략

		1 단 계		2 단 계		
		(A)→(B)	(A)→(C)	(B)→(D)	(C)→(E)	(C)→(F)
규모	농지면적확대 기계수탁확대		○ ○			○ ○
기술	직파도입 단수증가 미질개선	○ ○		○ ○	○ ○	
경영	복합작목도입 기계공동이용 기계부분위탁	○ ○		○	○	
생산기반	포장의 대구획화 포장의 단지화			○	○	○ ○

- 한편, 영농규모확대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합화의 방향을 검토해 보면, 첫째, 보리, 콩 등의 도입에 의한 복합화의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은 농지의 지력증진과 연계한 토지이용방식이라는 점, 트랙터, 콤파인등 주력 농기계를 병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동질성이라는 관점, 복합화에 의한 비용절감측면에서는 유리점이 있으나 보리, 콩 등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이러한 복합화의 방향은 규모확대의 조건 및 소득조건을 감안할 때, 기간노동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농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전업농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둘째, 노지·시설원에 또는 축산의 도입에 의한 복합화의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은 수익성의 확보 가능성이 크고, 토지절약적이라는 측면에서 유리성은 있으나, 수도작과 기술적으로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고, 투자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농지의 외연적 확대가 어렵고 농지의 조건이 복합화에 유리한 중산간지대나 도시근교지대에 적합한 전업농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셋째, 가공·유통부문의 도입에 의한 수직복합화의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은 토지절약적이고, 자가생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많은 투자액이 소요되고 고도의 가공기술과 판매 전략이 불가결한 유형으로서, 개별농가단위 보다는 외부의 전문가와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회사형태의 법인경영에 적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6-2 복합화의 요인·모형·효과

지대·규모	복합화의 요인	복합화의 모형	복합화의 효과
중산간·도시근교 5ha 미만	가족노동력의 완전취업, 소득확보	채소, 한우	가족노동력 이용 효율화
평야 5ha ~ 15ha	대형기계의 비용부담 경감	경종작물	기계이용 효율화
농업법인 15ha 이상	고용노동력의 확보,	가공·판매	고용노동력 이용효율화 수익성 제고

1.3. 지역영농시스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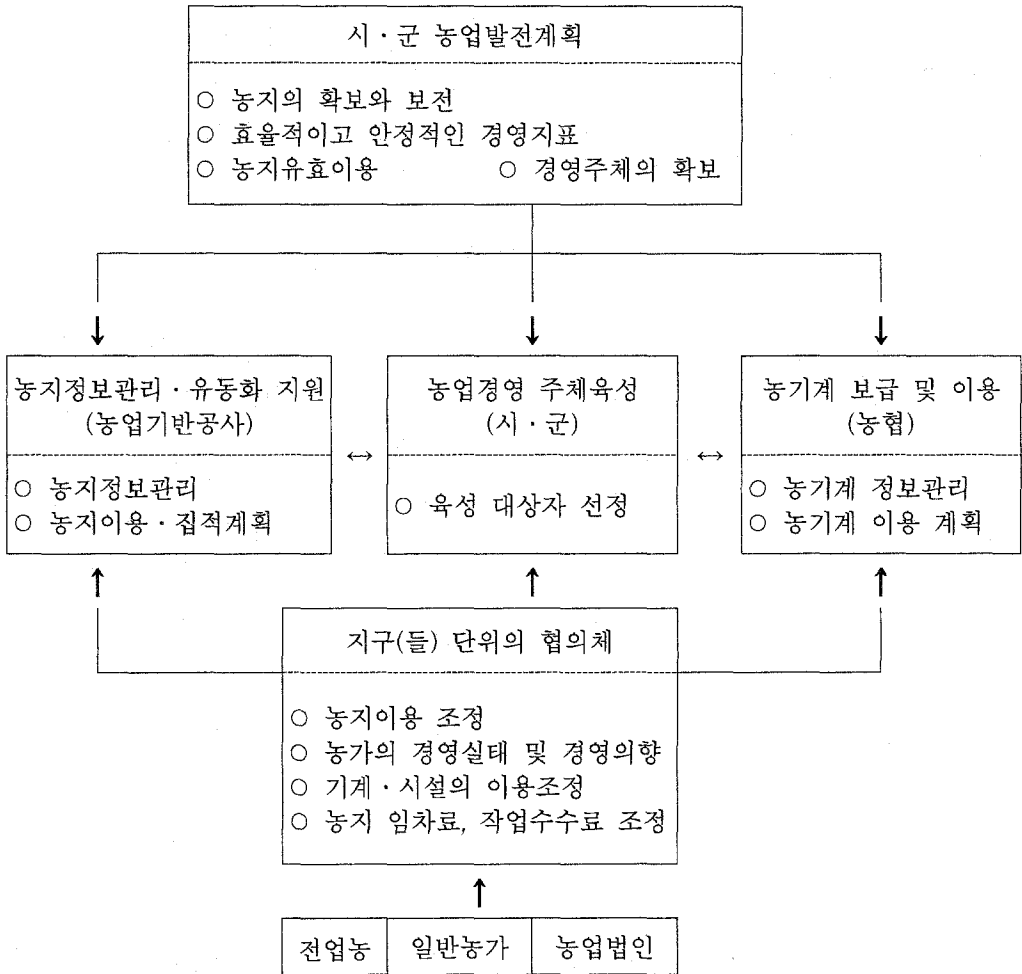
- 위의 다양한 농업경영모델을 지역의 농업특성에 따라 도입하기 위해서

는 농지의 단지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농지이용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형성이 필요함.

- 개별농가의 규모확대 과정을 살펴보면 자본의 제약, 공급물량의 희소등으로 인하여 규모확대 및 농지집단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대규모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면적의 단지적 농지집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의 대구획화와 함께, 들 또는 지역단위의 농지이용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농지의 단지화·연담화의 유형 및 그 추진방향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될 될 필요가 있다. 즉, 겸업기회가 많은 도시근교지역과 그렇지 않은 원격지로의 구별되어야 하며, 논외의 이용조정을 추진하는 타입도 지역농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다.
- 작업수위탁이나 토지기반정비에 의한 집단환지수법으로 농지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합의형성과 이용조정이 필요함. 특히 구성원 농가간의 대화와 이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 따라서 답의 단지적 이용에 대한 합의도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용조정조직이 필요하며, 지역의 지도기관, 단체는 이러한 이용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이용조정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농지의 단지화·연담화를 위한 지역내 농지의 이용조정을 실시
 - 조합원의 경영과 농지이용의 상황 및 의향의 파악

- 농지이용에 대한 계획의 수립
 - 시설, 기계의 공동이용 추진
 - 논 작업수위탁의 조정
 - 농작업요금, 지대의 조정
- 지역단위의 영농주체를 확보하고, 영농형태를 선택하는 데는 두 가지의 방향이 선택될 수 있다.
- 첫째는 마을의 농가가 참여하는 집단경영의 영농주체(영농형 주체)를 상정할 수 있다. 마을내 농가의 집단영농에의 참가 및 참가농가의 기능분담에 의하여 영농을 수행하는 것임.
 - 둘째는 지역(마을) 밖에서 영농주체(농지이용조정형 주체)를 구하는 방향임. 모든 지역에서 위와 같이 관내농가가 일체적으로 농지이용조정 및 영농에 참가하는 영농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 밖에서 영농주체를 구할 경우, 지역의 대규모경영과 농지의 이용조정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
- 추진체계로는 첫째, 대규모경영과 농지이용조정조직이 상대거래를 통하여 결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농지의 거래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확립 하므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농지유동화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둘째는 지역의 기관 및 단체가 직접적으로 농지이용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방식이다. 위의 방식이 사람중심의 농지이용조정이라 한다면 농지의 단지화를 전제로 한 농지이용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2 지역영농시스템의 체계



2.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 위의 농업경영체 발전의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먼저 수도작을 중심작목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지대별 발전모형을 모색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하여 현행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1. 농업경영체의 지대별 발전모형

2.1.1 쌀 전업농

○ 도시근교(수도권) 평야지대

- 겸업농의 증가, 농지전용의 기대등으로 인한 고지가 현상, 관외지역 거주자의 통작현상등으로 향후 규모확대 조건이 가장 열악함.
- 2004년 목표소득 3,8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ha 내외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사례지구의 경우도 전업농의 60%가 목표소득에 미달하고 있음.
- 수도작 단작(작기협소) 및 규모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확보(벼짚등)조건, 노동분산등 수도작과 호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작5ha내외 + 축산 등의 복합부문을 도입한 영농모형이 바람직 함.
- 이 지역에서의 영농규모화의 방향은 농가구성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겸업농 및 도시부채지주의 농지의 유효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농지이용조정, 기계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농기계작업 수탁의 조직화가 요구됨.

○ 순농촌 평야지대

- 복합영농, 겸업취업등 논농사 이외의 소득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다수의 농가가 이·탈농하면서 전업농은 팔목할 만한 규모확대를 이루었음.
- 사례지구의 경우 전업농 38호가 전체농가 경지면적의 74%를 확보한 상태이고, 이들의 평균영농규모는 6.6ha, 평균소득은 4,888만원으로 목표소득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 지역의 목표소득에 근접한 영농규모는 벼+보리 이모작 기준으로 영농규모 5ha 내외임.
- 영농규모화의 방향은 일정규모에 도달한 농가는 추가적인 외연적 규모

확대 지원보다 농지집단화 등 비용절감을 고려한 농지의 이용조정, 전업농 상호간의 협업을 통한 규모화 효과, 고령 전업농의 영농계승을 원활히 하는 방향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중산간 복합영농지대

- 다양한 경종작물이 도입되고 있는 지역으로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고, 노동집약적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의 영세고령농가가 영농에 잔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영농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고령농가의 영농은퇴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농지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청장년 신규 취농자의 유입은 적은 실정임.
- 사례지구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전체농가가 3ha 미만 규모의 농가였으나, 현재는 10ha이상 규모 농가도 출현하는 등 농가계층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 여기에는 199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경지정리의 효과도 큰 역할을 하였음.
- 이 지역의 쌀 전업농 14호는 모두 복합작목을 도입하고 있는 농가로서 영농규모는 호당 평균 3.8ha이며, 목표소득에 근접한 영농규모는 3.5ha 규모로서 벼+보리, 양파, 수박의 작부체계임.
- 이러한 지역의 전업농 육성은 이 지역의 수도작 중심의 대규모 경영의 형성이 어려운 만큼, 지역의 수도작 경영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작부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작목을 통하여 소득을 보완하는 영농모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수도작 영농규모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합농의 수도작 부문 대행할 수 있는 영농조직을 육성하는 방향도 바람직함. 향후 조건불리지 논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영농규모화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정비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

2.1.2 쌀 농업법인

- 농업법인제도가 등장한 것은 1990년 UR협상에 따라 시장개방이 급속히 전개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1993년 신농정에서는 가족경영체와 함께 새로운 경영주체로서 육성하게 되었다.
- 가족경영의 협업화·법인화를 통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업생산에 덧붙여 가공·유통으로의 침입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합사업체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인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경영의 참여동기는 개별경영의 상황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우며, 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형태의 법인의 경영특성에 입각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에 있는 농업법인을 개별영농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면, 개별경영 보완형, 개별경영 대체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유형별 사업내용은 대체로 개별경영 보완형은 기계공동이용형, 생산형, 개별경영 대체형은 생산+가공·판매형으로 사업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개별경영보완형은 인적결합체의 특성이 강한 조직형태로서 개별경영의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개별경영이 유리한 부문은 개별관리, 분업 또는 전문화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인적·물적자원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협업경영으로 경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유형으로서 주로 기계공동이용형 및 생산형 법인에서 볼 수 있다.
 - 개별경영대체형은 자본결합체의 특성이 강한 조직형태로 구성원 각자의 개별경영을 통합하여 법인에 일체화시킨 형태로서 농업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통하여 부가가치의 증진을 꾀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주년고용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 지대별로 유형별 설립동향은 초기에는 대부분 농작업수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영농대행조직으로서 출발하였으나 설립이후 발전과정에서 지역의 전업농의 양태, 지역농업의 조건에 따라 일정의 지역성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의 유효한 발전모형으로 판단된다.
 - 도시근교지대: 참여자의 경영의식이 높고, 비교적 판로개척과 자본형성이 용이한 도시근교지역에서는 풍부한 농작업수탁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수직계열화가 추진되고 있음.
 - 평야지대: 전업농층이 상대적으로 두텁고, 작목구성이 수도작에 치중되어 있는 평야지대에서는 경영보완형으로서 전업농의 규모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형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 중산간지대: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다양한 복합작목을 도입하고 있는 중·산간지대에서는 풍부한 농작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 농기계공동이용형, 또는 복합작목을 도입하여 복합생산형으로 각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2. 경영체 육성정책의 방향

2.2.1. 농업인 후계자 육성

□ 과제

○ 후계자 확보체계

- 지역별로 지역의 후계농업인력의 수급조건 및 작목구성, 경영형태 등 사업여건이 다르며, 신규취농자의 창설과정도 종전의 영농 직계승 형태에서 신규창업, U턴 등으로 다양하지만 정책은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일회성 자금지원에 그치고 있고 기술, 경영능력의 향상과 관련한 체계

적인 지원이 미흡함.

- 후계자 육성사업의 전업농 육성과의 연계성
 - 전업농 육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영의 계승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미흡.
 - 후계자 육성대상자의 대부분이 이미 영농에 정착한 자로서 전업농 육성과의 차별성이 부족

□ 개선방향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후계자 확보방향 모색
 - 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는 공적인 지원체계를 강화
 -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작목구성, 효율적인 육성모델 개발
- 다양한 신규취농자의 취농형태에 대응한 지원체계 구축
 - 신규취농자의 목적, 취농조건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개발
 - 영농의 계승자: 영농자산의 세분화방지를 위한 제도 및 경영개선지원
 - 신규창업자: 취업정보 제공, 취업교육, 창업지원
 - 별도의 관리기구 필요(예: 일본의 도도부현 청년농업자 육성센터)
 - 경영요소중 농지가 점하는 비중이 큰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에는 고령 부모의 영농규모를 영농계승 자녀에게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상속에 따른 농지의 세분화의 방지에 중점
 - 영농승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 가족경영협정, 연금제도등의 정책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예: 유럽의 경영계승제도)
 - U- turn농가에 대한 취농지원 강화
 - 부모의 영농은퇴 시점의 고령화로 영농 직계승이 어려워지면서 부친의 영농은퇴 시점에 맞추어 U- turn 취농이 활발해지고 정착율도 높음.

- 이 경우, 부자간 영농의사결정과정에서의 마찰 해소, 경영계승시기의 지체문제 해소, 결혼문제 해소, 도시취업과정에서 경영감각 취득 등 이점을 살릴 수 있음.
- 후계자 육성이 전업농 육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업농과 후계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예: 프랑스의 DJA사례)
 - 후계자 확보에서 전업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예비후계자단계, 후계자단계, 전업농 단계 등으로 구분, 예비후계자단계는 교육지원, 후계자단계는 영농정착, 전업농 단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각각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취농전 단계: 실천적인 교육·훈련 지원
 - 취농 단계(영농개시 후 1-3년): 농업기반 구축 지원, 경영이양 지원
 - 발전 단계(영농개시 3년 이상): 경영개선 지원(컨설팅과 연계)

2.2.2 쌀 전업농 육성

□ 과제

- 현행 쌀을 중심으로 한 전업농 육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
 - 정부의 목표는 5ha 규모목표의 쌀 전업농 6만호를 선정하였고, 후속적으로 2002년까지 3ha 규모목표의 쌀 복합전업농 4만호를 추가 선정하여 2004년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쌀 전업농 선정 추이 및 영농규모에 비추어 볼 때 쌀전업농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하더라도 향후 쌀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미가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측면에서 쌀 전업조건의 확보여부는 불확실하다.
 - 수도작에 전업(專業)적으로 종사하여 목표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가수준에서 수도작 단작의 경우 7ha내외, 수도작+보리 이모작의 경우 5ha내외의 규모 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기 확보된 쌀전업농 6만호의 평균규모가 3ha를 미달하고 있고, 선정대상이 되는 청장년층의 경영의향은 겸업 또는 수도작외의 작목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농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4만호의 추가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 전업농에 대한 농지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일반농가의 경우 전업(轉業)·영농은퇴조건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농업의 구축을 위해서는 과도한 이·탈농은 농업·농촌의 해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노동집약적인 이양농법은 이양, 비배관리등에서 다수의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규모 경영에서 이러한 작업이 조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토지생산력을 저하 시켜 식량자급 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전업농 지원사업추진의 타당성

<영농규모화사업>

- 대상농지의 최적수요자보다는 선 계약합의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농지수요자가 조기계약을 서둘게 되어 농지의 실거래 가격조건 등에서 농지의 수요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
- 현실적으로 농가의 영농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농민의 불만이 많음.
- 또, 실적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전업농으로 성공한 농가에 정책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지가 지역에 농지구입 위주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농업기반공사의 규모화사업 프로그램은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농지교환·분합사업이 있으나, 지역의 농업여건, 전업농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사업전략이 다소 미흡.

-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목표관리시스템은 수도작 단작을 전제로 한 쌀 전업농 규모 모형으로서, 지대별 작부체계를 고려한 경영모형, 지역의 농지 및 농기계이용계획의 뒷받침은 다소 미흡함.
- 임차지 공급이 부재지주에 의해서도 공급되고 있으나 부재지주의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는 있어 부재지주는 소유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연고자중심으로 농지를 임대하므로서 전업농의 규모확대에 제약요인이 되고있음.

<농업기계화 사업의 정비>

-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이 단순한 생산비 절감 차원만이 아니라 경영성과 전반을 좌우하고 있어 능률적인 오퍼레이터 및 적정 작업단위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함.
- 그러나 농가에 대한 심사가 영농실태 보다는 학력등 형식에 치우쳐 있고 부정확하여 농가불만이 많음.
- 시장, 군수가 농기계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초과공급 시 농기계의 추가 배정을 지양토록 하고 있으나 보유대수 파악 정도에 머물러 있고, 지역의 합리적인 보유·이용체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향

- 지역농업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경영모형의 개발과 영농규모화 지역 전략 수립
 - 향후 벼를 주 재배작목으로 하는 전업농의 모델은 외연적인 규모확대와 함께 지대별 농업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작부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복합영농모델을 구축하고 정책지원의 방향도 개인중심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의 영농의향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지역단위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수도단작 중심의 수도권 평야지대는 배수개선을 통하여 수도작과 호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채소 작목의 도입이나 조사료확보(벼짚, 사료용보리)조건을 고려한 수도작 +축산 등의 복합영농 모형을 개발
 - 이미 일정수준의 규모화를 달성한 이모작 평야지대의 경우 외연적 규모확대 보다는 집단화등 비용절감을 고려한 농지이용체계의 구축, 고령 전업농의 영농계승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중산간 복합영농지대의 경우는 최근 영농능력이 한계에 다른 고령농가의 영농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청장년 신규취농자는 단절되어 있어 후계자의 확보가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조건불리지 직접지불제의 도입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생산기반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전업농과 일반농가의 역할분담체계 확보
- 영세소농구조에서 대규모영농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기술을 장비한 전업농 그룹과 여기에서 배출되는 겸업·고령농가를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농업인력을 농촌내부에서 수용하면서 농지의 단지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들단위의 영농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일본의 사례)
 - 농가간 농업생산의 상호의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조단위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협업화·법인화 유도
-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구(들)의 단지별 우선 지원대상자(최적 수요자)를 지정하여, 당해 지구 내의 책임자에게 농지공급이 유도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농지유동화 및 지원대상자의 거래교섭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단지별로 농지이용 책임자를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지단위, 농가단위의 영농정보의 확보와 부락 주민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채지주의 소유권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장기임대차사업에 부채지주의 농지유동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농기계이용조정 기능의 강화
- 지역의 작부체계, 전업농수, 농지조건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농지이용계획에 의거, 지역단위의 농기계 적정보유대수 및 운영자를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농기계 이용이 단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 이러한 들 단위의 합리적인 농기계 운용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농협 등 관련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작업의 수요자와 기계 오퍼레이터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농작업 알선사업의 도입이 필요함. (예 : 독일의 머쉬넨링)
 - 농기계의 과잉공급 및 농번기의 일시적인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로서는 농협 등 농업단체가 농기계 임대차(리스, 렌탈) 제도 등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의 차별화
- 농가 중심의 정책지원은 이미 성공한 농가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임. 지역단위의 농가의 영농정보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체계구축, 합리적인 지역영농모형 설정 및 경영평가를 통하여 성장단계에 있는 농가에 정책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규모목표에 도달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지집단화등 영농효율화 우선, 소유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한 농가는 임대차 우선, 성장초기 농가에는 농지구입, 복합작목 도입희망자에 대하여는 재배적지 지원등 성장단계별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2.3. 농업법인 육성

□ 과제

○ 농업법인제도의 운용실태

- 제도와 법인경영의 실태는 크게 유리되어 있고 농업법인의 위치설정이 명확하지 않음.
- 현재 제도적으로 법인의 유형은 가족경영의 협업형으로서 영농조합법인, 기업형으로서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책지원은 가족경영의 협업형이라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왔음.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단계의 협업 중심 쌀 농업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반면, 영농조합법인은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생산형 이라기 보다는 가공·유통형으로 변질되고 있음.
- 생산형의 경우 기존의 전업농, 가공·유통형은 지역농협과 경합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업부진으로 개별영농으로 회기하거나 사실상 파산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쌀 농업법인의 정책지원은 농기계구입지원이라 할 수 있으나,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영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법인 사후관리체계의 타당성

- 농업법인의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후관리등 체계적인 사업관리체계가 미흡함.
- 과도한 정책자금이 지원되면서 법인경영의 이점보다는 정책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경영부실을 초래.

□ 개선방향

- 법인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응한 차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생산법인이 기술, 자본력등 경영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공·유통사업부문에 치중하여 경영부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을 생산법인과 비 생산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응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생산법인은 영농규모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비생산법인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생산형의 경우 생산단계의 이점에 초점을 둔 지역의 전업농 상호간의 협업경영으로 유도.
 - 생산부문을 기초로 가공·판매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민간 도정시설 또는 농협과 제휴 또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업법인은 지역의 농업·농민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역고유의 발전모형을 수립·유도하고, 전업농의 육성 차원에서 정책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협업중심의 농업생산법인은 복합영농지대는 지역의 복합농과 보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농작업대행형, 또는 복합경영형, 대규모 평야지대는 전업농간의 협업경영을 통한 생산형으로 발전을 유도.
 - 수도작 중심의 농업생산법인의 내실은 대부분 쌀 전업농 또는 쌀 전업농을 지향하는 젊은 후계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영농규모화 및 기계화 지원이 필요.

- 대규모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지원 시 우선권 부여, 대형·고성능기종 지원, 중·고 농기계 갱신을 위한 대체구입 지원 활성화, 농기계자금 적립액에 대하여는 비용으로 처리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강구.
 - 농업법인에 대한 임대차 지원 활성화, 농지구입의 경우는 법인 구성원이 농지출자를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구성원을 전업농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여 개별 지원방식으로 지원.
- 법인경영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 경영자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법인경영이 도입단계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인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경영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 록

□ 농업노동력 전망모형 : Cohort 방법

- 농업노동력의 전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구균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을 도입

$$P_t - P_0 = B_{0-t} - D_{0-t} + I_{0-t} - E_{0-t} \quad \text{-----} \quad (1)$$

P_t : t기의 인구수

P_0 : 0기의 인구수

B_{0-t} : (0, t)기간의 출산자

D_{0-t} : (0, t)기간의 사망자

I_{0-t} : (0, t)기간의 인구 유입자

E_{0-t} : (0, t)기간의 인구 유출자

- 농가인구의 증감률이 시간에 걸쳐 동일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t년도의 인구수는 기준연도의 인구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짐

$$P_t = p_0 e^{rt} \quad \text{-----} \quad (2) \quad \text{이를 (1)에 대입하면,}$$

$$P_0(e^{rt} - 1) = B_{0-t} - D_{0-t} + M_{0-t} \quad \text{-----} \quad (3) \text{과 같이 됨.}$$

- 한편,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¹³⁾

$$\frac{M_{0-t}}{P_0} = e^{rt} - \frac{B_{0-t}}{P_0} + \frac{D_{0-t}}{P_0} - 1 \quad \text{-----} \quad (4)$$

- 여기서 $M_{0-t} (= I_{0-t} - E_{0-t})$ 는 (0-t)기간 동안의 순이농자 수를 나타냄
- 그런데 농가인구의 자연증가율(=출생률-사망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인구의 출생률과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과 동일하다고 가정
- 즉, $\frac{B_{0-t}}{P_0} = \frac{B_{0-t}^T}{P_0^T}$, $\frac{D_{0-t}}{P_0} = \frac{D_{0-t}^T}{P_0^T}$ ----- (5)
- 여기서 P_0^T : 0년도의 전체 인구수, B_{0-t}^T , D_{0-t}^T : 각각 (0-t)기간 동안의 전체 인구 중에서 출산 수 및 사망자 수임

- 한편, 연령별 농가인구수를 전망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형에서 연령 계급을 5개년 씩 구분 함.
- 즉, J=5로 하고 연령구간은 0세부터 80세 이상까지를 17개구간으로 구분
 - 따라서 연령계급을 고려한 농가인구는 다음과 같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음(수식 3-1, 수식 3-2을 연령별로 구분함).

$$P_0 = (P_1^0, P_2^0, \dots, P_i^0, \dots, P_{17}^0)^T \quad \text{-----} \quad (6)$$

13) 농가인구수의 전망(Projection)을 위하여 농가의 이농률이 중요하다. 자료의 제약으로 간접적으로 농가인구수 변화율에서 자연증감률을 제한 것을 이농률로 대신하였다.

- 농가인구의 연령별 이농률 ($\frac{M_{0-t}^i}{P_0^i}$)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농가인구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연령별 출산율(ASFR : Age Specific Fertility Rate)과 연령별 생존률(Survival Rate)을 이용하여 1990년도 농가인구를 기준으로 1995년도의 이농이 없는 농가인구를 연령별로 예측함.
- 이렇게 예측된 1995년도의 농가인구와 1995년도 농가인구 실제치와의 차이를 1990~95년 동안의 연령별 농가인구의 이농자로 정의할 수 있음.
 - 1990~95년 사이의 농가인구의 이농률은 동 기간 동안 연령별 이농자를 1990년도 해당 연령별 농가인구수로 나눔으로써 연령별로 구할 수 있음.
 - 즉, (0-t)기간 동안 농가인구의 순이농 규모는 이 기간 동안 이농이 전혀 없고 다만 자연증감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t기의 농가인구를 예측한 뒤 이를 t기의 실제 농가인구와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순이농률은 t기동안 이를 0기의 농가인구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음.
- 이농이 없는 연령별 농가인구는 1995년도의 연령별 농가인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P_1 = (B_0 + S_0)P_0 \quad \text{-----} \quad (7)$$

- 여기서 B_0 는 199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대비 가임연령인구 비(=신생아 수/1990년도 가임 연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행렬로서 다음과 같음.

$$b_k = \frac{k \text{ 가임그룹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P_k^0}, \quad k=3, \dots, 11$$

$$B_0 = \begin{vmatrix} 0 & 0 & b_3 & \cdots & 0 & 0 & \cdots & 0 \\ 0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end{vmatrix}$$

S_0 는 연령별 생산률을 나타내는 벡터로서 다음과 같음.

$$S_0 = \begin{vmatrix}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S_{2,1}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0 & S_{3,2}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0 & 0 & S_{4,3} & 0 & \cdots & \cdots & \cdots & 0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cdots \\ 0 & 0 & \cdots & S_{17,16} & S_{17,17} & \cdots & \cdots & \cdots \end{vmatrix}$$

여기서 $s_i, i-1 = 1 - (\text{그룹 } i \text{의 사망자 수})/P_i$ 로서 그룹 i 의 생산율을 나타냄.

이렇게 계산된 P_1 은 1990~95년 동안 이농이 없다고 가정한 1995년도 연령별 농가인구가 됨.

이와 같이 연령별 농가 인구의 이농률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1995/2000, 2000/2005년의 생산률과 연령별 출산율을 원용하여 각각 2000년과 2005년의 연령별 농가인구를 구할 수 있음.

$$P_2 = (B_1 + S_1)P_1 + M_1, \quad P_3 = (B_2 + S_2)P_2 + M_2$$

여기서 P_2, P_3 는 각각 2000년도와 2005년도의 인구수를 나타내고, M_1, M_2 는 각각 1995~2000, 2000~2005년 사이의 농가인구의 순이농 규모를 나타냄

부표 1 독정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단위 : ha, 세, 명, 만원

농가 번호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농업 종사자 수	작물소득	농업소득	입식작목 및 농업소득원
	계	소유	임차					
1	10.8	5.6	5.2	39	2	6,053	6,053	벼
2	10.5	7	3.5	49	2	6,237	6,237	벼
3	10	4	6	55	4	5,690	5,690	벼
4	10	3	7	66	3	5,524	5,704	벼, 한우
평균	10.3	4.9	5.4	52.3	2.8	5,876	5,921	
5	9.5	1.2	8.3	49	4	4,570	4,570	벼
6	9	6	3	34	2	5,299	5,347	벼, 양돈, 농작업
7	8	3	5	60	4	4,896	4,896	벼
8	7	3.3	3.7	38	2	3,840	4,040	벼+유우
9	5.6	5.6	0	49	3	3,762	4,142	벼, 농작업
10	5.3	3.3	2	53	2	3,021	3,021	벼
11	5	5	0	51	3	3,137	3,137	벼
12	5	3	2	32	3	2,795	3,005	벼, 농작업
13	5	2	3	55	3	2,632	2,832	벼, 농작업
평균	6.6	3.6	3.0	46.8	2.9	3,769	3,888	
14	4.9	2.7	2.2	52	2	2,965	3,225	벼, 농작업
15	4.6	2.3	2.3	46	4	2,404	3,254	벼, 농작업
16	4.3	3.3	1	55	3	2,408	2,648	벼, 농작업
17	4	4	0	47	2	2,630	3,630	벼, 농작업
18	3.7	2.5	1.2	31	3	1,793	1,793	벼
19	3.3	2.3	1	56	2	1,508	1,808	벼, 농작업
20	3.2	2.2	1	55	2	1,748	2,138	벼, 한우
21	3	2.5	0.5	53	3	1,804	2,604	벼, 농작업
22	3	2	1	42	2	1,718	1,958	벼, 농작업
평균	3.8	2.6	1.1	48.6	2.6	2,372	2,562	
23	2.8	1.6	1.2	46	3	1,474	2,898	벼, 농작업
24	2	1	1	47	3	948	1,450	벼, 농작업
평균	2.4	1.3	1.1	46.5	3	1,211	2,174	
전체 평균	5.8	3.3	2.5	48.4	2.5	3,259		

부표 2 금판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단위 : ha, 세, 명, 만원

농가 번호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농업 종사자 수	작물소득	농업소득	입식작목 및 농업소득원
	계	소유	임차					
1	12	2.8	9.2	57	5	6,796	6,796	벼+보리,
2	10.8	3.2	7.6	46	3	6,861	6,861	벼+보리,
3	10.8	2	8.8	46	2	6,685	6,685	벼+보리,
4	10	2	8	57	5	6,162	7,212	벼+보리, 농작업
평균	10.9	2.5	8.4	51.5	3.8	6,626	6,889	
5	9.6	4.8	4.8	53	4	5,973	6,997	벼+보리, 농작업
6	9.4	5.4	4	49	5	6,171	6,474	벼+보리, 농작업
7	9	1	8	51	4	4,482	4,482	벼+보리
8	8.8	4	4.8	55	6	5,113	5,479	벼+보리, 시설채소
9	8.2	7.4	0.8	51	4	4,622	5,272	벼+보리, 농작업
10	8	6.2	1.8	53	4	6,020	6,505	벼+보리, 농작업
11	8	6	2	56	4	5,295	5,325	벼+보리, 농작업
12	8	4.8	3.2	46	4	5,799	5,799	벼+보리,
13	7.4	2.4	5	45	4	4,979	5,274	벼+보리, 농작업
14	7.2	2	5.2	45	4	4,564	4,564	벼+보리,
15	6.8	3.2	3.6	56	3	3,727	5,077	벼+보리, 농작업
16	6.7	4	2.7	37	3	4,619	4,850	벼+보리, 농작업
17	6.7	3.4	3.3	39	3	4,441	5,791	벼+보리, 벼섯
18	6.4	6.4	0	39	4	4,950	4,950	벼+보리
19	6.4	5.4	1	48	3	4,558	4,558	벼+보리
20	6.4	3.6	2.8	55	2	4,270	4,270	벼+보리
21	5.7	5.7	0	56	4	3,670	3,915	벼+보리, 농작업
22	5.6	1.6	4	58	4	3,214	3,414	벼+보리, 농작업
23	5.5	3.5	2	42	3	3,516	3,516	벼+보리
24	5.3	2.4	2.9	44	3	3,120	3,255	벼+보리, 농작업
25	5.2	1.6	3.6	45	2	2,880	2,880	벼+보리
26	5	3.8	1.2	42	3	3,653	3,863	벼+보리, 농작업
27	5	3.2	1.8	43	4	3,250	4,090	벼+보리, 농작업
평균	7.0	4.0	3.0	48.2	3.7	4,474		
28	4.8	3.2	1.6	49	3	3,874	4,324	벼+보리, 농작업
29	4.8	2	2.8	52	2	2,458	2,659	벼+보리, 농작업
30	4.8	0.4	4.4	43	3	2,982	4,467	벼+보리, 농작업
31	4.7	4.7	0	42	2	3,750	3,920	벼+보리, 농작업
32	4.5	4.5	0	51	2	3,620	3,740	벼+보리
33	4.4	1.2	3.2	53	3	2,309	2,434	벼+보리
34	4.2	1.4	2.8	40	2	2,528	3,828	벼+보리, 농작업
35	4	2.8	1.2	52	2	2,703	2,703	벼+보리
36	4	2.4	1.6	44	3	2,474	2,474	벼+보리
37	4	2.4	1.6	51	3	2,494	4,394	벼+보리, 시설채소
38	3.3	2.4	0.9	46	2	2,725	2,725	벼+보리
평균	4.3	2.5	1.8	47.5	2.5	2,901		
전체 평균	6.6	3.4	3.2	48.3	3.3	4,193		

부표 3 가현지구 쌀 전업농의 경영개황

단위 : ha, 세, 명, 만원

농가 번호	경영규모			경영주 연령	농업 종사자 수	작물소득	농가소득	입식작목 및 농업소득원
	계	소유	임차					
1	11.1	2.4	8.7	45	2	5,796	6,566	벼+보리, 한우,농작업
2	6.9	5.9	1	45	2	7,448	7,448	벼+보리,수박, 한우
3	6.7	4	2.7	42	3	4,435	4,638	벼+양파,보리,수박
4	6	2.4	3.6	53	2	3,970	3,970	벼+보리,수박
평균	6.5	4.1	2.4	46.7	2.3	5,284	5,352	
5	4	2	2	54	4	3,886	3,886	벼+수박
6	3.5	1.5	2	48	2	3,246	3,947	벼+보리,양파,수박,농작업
7	3.1	2.6	0.5	47	3	2,230	3,125	벼+마늘,한우,농작업
평균	3.5	2.0	1.5	49.7	3.0	3,120	3,653	
8	2.6	1.3	1.3	43	3	2,256	2,753	벼+양파,수박,한우,농작업
9	2.5	1.5	1	49	4	1,972	2,774	벼+보리,마늘,농작업
평균	2.6	1.4	1.2	46.0	3.5	2,114	2,764	
10	1.8	1.7	0.1	49	3	1,802	2,001	벼+보리,양파,마늘,농작업
11	1.5	1.5	0	47	2	1,070	1,275	벼,고추,농작업
12	1.5	1.5	0	43	2	1,580	1,580	벼+보리,양파, 한우
13	1.2	1.0	0.2	53	3	3,516	3,516	벼+보리,양파,수박,참외
14	0.8	0.8	0	56	2	1,030	1,433	벼+양파, 농작업
평균	1.4	1.3	0.1	49.6	2.4	1,800	1,961	
전체 평균	3.8	2.1	1.7	48.1	2.6	3,159		

참 고 문 헌

- 김경덕,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김정호 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김태곤, 『WTO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박문호, “일본 신농정의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농촌경제』, 제21권 3호, 1998.
- _____, 『농업회사법인의 존립조건과 정책과제』, 농업정책학회발표논문, 1995.
- 농림사업평가위원회, 『농림사업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이정환 외,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정기환 외, 『지방농정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 정명채 외, 『농업구조개선과 중소농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신농정의 구조·경영정책』 D83, 1993.
- 屈越孝良, “農業法人經營發展の條件”、『日本の農業』、農政調査委員會, 1995.
- 藤田康樹, 『青年農業者の形成と支援』, 農文協, 1997
- 朴文浩, 『韓國における農業法人經營の實態と課題』, 日本農業經濟學會, 1998
- _____, 『韓國に新しい農業擔い手の展開と政策課題』, 日本農政調査時報, 1998.4
- 酒井瀨一 外, 『農業の繼承と參入- 日本と歐美の經驗から』、農文協、1998
- 中安定子 外, 『先進國家族經營の發展戰略-佛·獨·日の進路』、農文協, 1995
- 新農政推委員會, 『新政策そこが知りたい』, 大成出版社, 1993.
- 永田惠十郎 外, 『土地利用型農業の再構築と農協』、農文協、1995.
- 熊谷 宏, 『地方自治時代の地域農業計劃論』, 大學出版社, 1997
- 日本農業法學會, “地域の自治と農業政策”, 『農業法研究』 32, 1997
- 向井三雄 外, 『現代の“コメ”問題: 新たな生産と流通』, 農林統計協會, 1991.
- 和田照男, 『大規模水田經營の成長と管理』, 東京大學出版會, 1995.
- 黑河 功, 『地域農業再編下における支援システムのあり方』, 農林統計協會, 1996
- Kim, Kyeong-Duk, "A Critical Review on the Urbanization and Spatial Development: Inter-Regional Comparis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19, Summer 1996, pp89~115

빈

면

C2000-3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연구

찍은날 2000년 5월 일 펴낸날 2000년 5월 일

발행인 강 정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02-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02-737-210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